

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순계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일 시 : 2022. 4. 26.(화) 14:00 ~ 17:00
-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2동 205호
- ▣ 출석위원 : 윤인석(위원장), 강동진, 김문수, 김이순,
 목수현, 신안준, 이연경, 이현석, 이혜은(이상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구 독립대구병원」 현상변경(2차)	(공 개)
2	사적 「안국동 윤보선가」 주변 현상변경	(공 개)
3	사적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주변 현상변경	(공 개)
4	국가등록문화재 「서천 판교 근대상가주택1」 현상변경	(공 개)
5	국가등록문화재 「서천 판교 구 삼화정미소(오방앗간)」 현상변경	(공 개)
6	국가등록문화재 「서천 판교 구 판교극장」 현상변경	(공 개)
7	사적 「구 목포 일본영사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 개)
8	「주미조선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9	「기아마스타 T600(롯데제과 제품운반용 경3륜 트럭)」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10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검토사항】

11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주정기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2	「목포 고하도 방공호 및 막사건축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3	「대한성공회 음성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4	「유네스코회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5	「해관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6	「동학농민군 편지」 국가등록문화재 명칭변경 검토	(공 개)

【보고사항】

17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 개)
----	------------------------	-------

1. 사적 「구 도립대구병원」 현상변경(2차)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구 도립대구병원」 내 소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도립대구병원」 내에 소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1년 제2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1.3.23.) : 보류
 - 사유 : 문화재 훼손 최소화를 위해 소화시설 외부 노출 및 수량 조정 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북대학교병원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구 도립대구병원」('03.1.28. 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 2가)
- (3) 세부내용
 - 신청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 2가), 구 도립대구병원 내
 - 세부내용 : 소화시설 설치

구분	지난번 (2021.3.)	이번 (2022. 4.)
1층	60개 천공(바닥 및 벽체), 소화 설비(스프링클러 / 하론가스소화설비) 및 배관설치	4개 천공(바닥 및 벽체), 소화 설비(자립형옥내소화전 2개) 및 배관설치
2층	69개 천공(바닥 및 벽체), 소화 설비(스프링클러 / 하론가스소화설비) 및 배관설치	4개 천공(바닥 및 벽체), 소화 설비(자립형옥내소화전 2개) 및 배관설치
2층	11개 창호 보강, 소화설비(하론가스소화설비) 및 배관 설치	(삭제)
옥탑1	13개 창호 보강, 소화설비(하론가스소화설비) 및 배관 설치	(삭제)
옥탑2	20개 창호 보강, 소화설비(하론가스소화설비) 및 배관 설치	(삭제)
지붕	소화설비(스프링클러) 및 배관 설치(목조트러스)	(삭제)
외부		옥외소화전(기준) 2개에 방수층 추가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내용은 2019.8.6.에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 「구 독립대구병원」내에 소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번 신청한 내용이 문화재 훼손 최소화를 위해 보류가 됨에 따라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옥내소화전 및 방수총 설치로 대폭 축소되어 보완 제출되었음
- 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점, 기존 검토보다 문화재에 직접 천공을 하는 범위가 대폭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

마. 현지조사 의견('21.2.26.) : 문화재위원 ○○○

- 지정 문화재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소방시설 설치 계획은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설치 범위와 수량, 시각적 노출이 최소화 되도록 수정, 보완이 필요함.
- 사적 「서울대학교병원의 대한의원 본관」, 사적 「강북삼성병원의 경교장」 등의 유사사례를 조사하고 참조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2. 사적 「안국동 윤보선가」 주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안국동 윤보선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국동 윤보선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재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 유니온비앤씨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안국동 윤보선가」('02.1.29.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62(안국동)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서울 종로구 재동 28번지
 - ※ 허용기준 : 3구역(평지붕 8m이하, 경사지붕 10m이하)
 - ※ 이격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8m이격
 - 신청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
 - 건축면적 / 연면적 : 149.7m² / 411.57m²
 - 층수 : 지하1층, 지상2층
 - 최고높이 : 10.16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사적 「안국동 윤보선가」 주변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 건축물의 높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마.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2.4.15.)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심의 대상 건축물의 옥탑부 최고 높이가 허용기준(최고 높이 8m 이하)을 초과하나, 주변 건축물의 높이(옥탑부 포함)가 대부분 8m를 초과하고 있음
- 문화재와 신축대상 부지 사이에도 8m를 초과하는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3. 사적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주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사적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재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무악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88.2.27.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현저동, 독립공원)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63-4번지 일대
 - ※ 허용기준 : 2구역(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함)
 - ※ 이격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5.22m이격
 - 신청내용 : 공동임대주택 신축 (기존 아파트 철거 후 재건축)
 - 대지면적 : 5,902.60㎡
 - 용도 : 공공임대주택 (305세대), 근린생활시설
 - 건축면적/연면적 : 2,900.0㎡ / 45,557.41㎡
 - 최고높이/층수 : 96.22m / 지하 5층, 지상 10~29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내용은 사적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대지면적 중 약 44%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되나 건물전체의 저층이 연결되어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제8조(허용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체 행위를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222호/2020.6.8.) 제8조(허용기준의 적용) ⑤ 허용기준의 외곽경계 내·외에 걸친 행위는 사업 범위를 조정하되, 신청 내용의 성격상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행위를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 문화재 인근 건물들의 최고높이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

마. 현지조사 의견('22.3.28.)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 주변 기존 경관과 규모를 초과하는 과도한 규모와 높이로 계획되었으므로, 규모와 높이, 입면적 등 전반적 조정이 필요함
- 지하층 굴착(지하5층 깊이)으로 인한 지하수위의 변동으로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할 것
-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주변 건물을 모두 포함한 입체면, 다이어그램 등의 자료를 보완할 것

바. 의결사항

- 부결
 - 제시된 건축물 높이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역사문화 환경 훼손 우려
- 출석 9명 / 부결 9명

4. 국가등록문화재 「서천 판교 근대상가주택1」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충남 서천군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서천 판교 근대상가주택1」에 대해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서천 판교 근대상가주택1」을 리모델링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천군청(서천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서천 판교 근대상가주택1」(’21.10.13. 등록)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종관로 887번길 22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당해문화재
 - 신청내용 : 전시장 및 야외전시 리모델링
 - 남측 증축부(창고 및 장독대 담장) 철거
 - 1층 동측 일부 및 남측 지붕처마 덧슬레이트 철거
 - 1층 서측/동측 창호 및 벽체 일부 철거 후 창호 신설
 - 목재 창호 보수, 회벽 보수
 - 지붕 보수 : 기존 슬레이트 및 철판 철거 → 골강판 신설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내용은 국가등록문화재 「서천 판교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위치한 개별 국가등록문화재 「서천 판교 근대상가주택1」을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현지조사 의견('22.4.12.)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전체적인 방향

- 근대역사공간 종합정비계획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재 현상변경이 먼저 진행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최소한의 설계와 개입, 즉 구조적 안전 및 사용상에 큰 지장이 없을 경우 현황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 가능하게 수리·보완하는 방향으로 현상변경을 진행할 필요 있음
- 향후 추진 예정인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본 공사 추진 시 종합정비계획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함이 필요함

○ 서천 판교 근대상가주택1 현상변경 관련 의견

- 전체적으로 건물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수리 및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됨. 창호 및 벽체 등의 보강 수리를 진행하되 최대한 원형을 살리고 원래의 부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참고사항> 서천 판교 근대역사공간 관련 의견

- 상설전시를 위해 기둥은 남기되 벽체는 철거하여 1층의 여러 실을 통과하는 동선을 구성하고 있는데, 상설전시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구체적이지 않아 내부 공간을 우선적으로 철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특히 상가 방으로 사용되던 공간의 경우 벽장이라든지 미서기문, 하부 구조 등이 특징적인데 반해 계획안에서는 이 공간의 특징이 다 사라지는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이 공간의 특징을 고려한 상설 전시를 운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또한 하부의 온돌 시설 등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유구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아울러 2층의 경우 기획전시로 사용되는데 현재도 5명 정도밖에 출입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함. 상설전시의 내용에 따라 공간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장미사진관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오일장이 설 때의 외부인들 출입의 문제 및 야외 전시에의 활용을 위해 외부에 담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담장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폐가 목적이려면 수목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시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5. 국가등록문화재 「서천 판교 구 삼화정미소(오방앗간)」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충남 서천군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서천 판교 구 삼화정미소(오방앗간)」에 대해 문화재생산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생산업의 일환으로 「서천 판교 구 삼화정미소(오방앗간)」을 리모델링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천군청(서천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서천 판교 구 삼화정미소(오방앗간)」(’21.10.13. 등록)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종관로 887번길 6-1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당해문화재
 - 신청내용 : 전시장 리모델링
 - 북측 증축부 철거 및 철거에 따른 벽체 신설
 - 목재 문 보수 및 벽체 마감 골강판 강화처리
 - 지붕 보수 : 마감 골강판 교체 (서까래 및 개판 교체, 산자 보수 포함)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내용은 국가등록문화재 「서천 판교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위치한 개별 국가등록문화재 「서천 판교 구 삼화정미소」를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유희공간 문화재생산을 추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현지조사 의견('22.4.12.)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전체적인 방향

- 근대역사공간 종합정비계획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재 현상변경이 먼저 진행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최소한의 설계와 개입, 즉 구조적 안전 및 사용상에 큰 지장이 없을 경우 현황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 가능하게 수리·보완하는 방향으로 현상변경을 진행할 필요 있음
- 향후 추진 예정인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본 공사 추진 시 종합정비계획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함이 필요함

○ 서천 판교 구 삼화정미소 현상변경 관련 의견

- 전체적으로 오방앗간은 정미기계 등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전시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최소한의 변형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큰 방향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내부 창고 벽체를 철거함에 있어서는 이미 벽체가 기둥과 일체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벽체의 일부도 함께 남겨서 기획전시실 내부의 전시벽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 있음
- 당초 등록에서 제외된 증축부 제거 시 이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는 외벽 마감은 이질감이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 지붕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훼손 및 탈락이 일어났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나, 전체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시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6. 국가등록문화재 「서천 판교 구 판교극장」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충남 서천군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서천 판교 구 판교극장」에 대해 문화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서천 판교 구 판교극장」을 리모델링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천군청(서천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서천 판교 구 판교극장」(’21.10.13. 등록)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종관로 896-6 (판교면)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당해문화재
 - 신청내용 : 다목적공간 및 전시장으로 리모델링
 - 창호 보수 : 기존 알루미늄 창호 철거 → 원형(목재 오르내리창 등) 정비 (2층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오르내리창 최대한 활용)
 - 기존 알루미늄도어 철거 → 스틸도어 신설
 - 벽체 보수 : 모르타르 탈락 등 파손 부위 보수
 - 지붕마감재 교체 : 강판 → 징크패널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내용은 국가등록문화재 「서천 판교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위치한 개별 국가등록문화재 「서천 판교 구 판교극장」을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유희공간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현지조사 의견('22.4.12.)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전체적인 방향

- 근대역사공간 종합정비계획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재 현상변경이 먼저 진행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최소한의 설계와 개입, 즉 구조적 안전 및 사용상에 큰 지장이 없을 경우 현황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 가능하게 수리·보완하는 방향으로 현상변경을 진행할 필요 있음
- 향후 추진 예정인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본 공사 추진 시 종합정비계획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함이 필요함

○ 서천 판교 구 판교극장 현상변경 관련 의견

- 외벽과 지붕은 누수 및 마감재 탈락 등으로 인한 손상이 다수 발생한 상태인 관계로, 외부 페인트칠 및 지붕재 변경(징크패널)은 불가피한 부분이라 판단됨. 다만 원래 재료의 색채 및 오래된 건물에 남아 있는 시간의 흔적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복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창호는 2층 창고에 쌓여있던 기존의 창호를 외부에 설치하고, 내부에는 시스템 창호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내부 지붕 천정 구조를 일부 철거하고 목재 트러스를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수 보존 요소로 지적된 천정 및 상부 몰딩이 잘 남아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시행하도록 함. 또한 노출시 필요 이상의 안전장치 설치로 인해 과도한 시각적 차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참고사항> 서천 판교 근대역사공간 관련

- 원형 복원 등은 추후 문화재청의 근대역사공간 종합정비계획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현 상황을 최대한 보존하되, 비교적 최근에 설치되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예를 들어 목 공장으로 사용될 당시 설치한 아궁이나 수도 관련 시설 등) 및 천정 등은 철거하고자 하는데, 철거하되 철거하기 이전에 기록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음.
- 2층 창고에 다양한 기계 및 가구 등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극장으로 사용 당시의 장의자를 비롯한 공장 등에서 사용하던 기계류, 각종 목부재 등이 발견되므로 폐기물 처리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시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7. 사적 「구 목포 일본영사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전남 목포시 소재 사적 「구 목포 일본영사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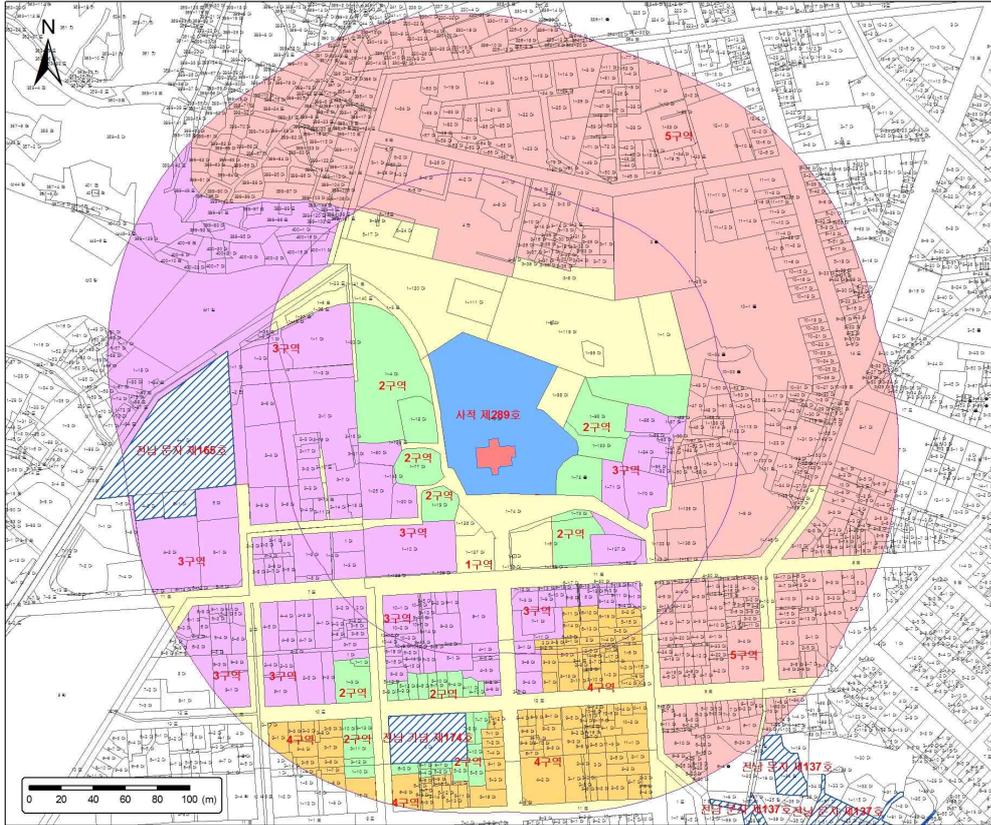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제12조 (허용기준의 변경)에 따라 사적 「구 목포 일본영사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목포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구 목포 일본영사관」 (‘81.9.25.지정)
 - 소재지 : 전남 목포시 대의동2가 1-5번지
- (3) 세부내용 : 허용기준 범례(근대역사문화공간) 추가 ※구역 및 공통사항 동일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변경	범례 (근대역사문화공간) 추가	
	1.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보존 가이드라인에 준할 것 2. 건축 행위시 목포시 도시문화재과와 협의할 것	

<당초 지형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적 제289호
구 목포일본영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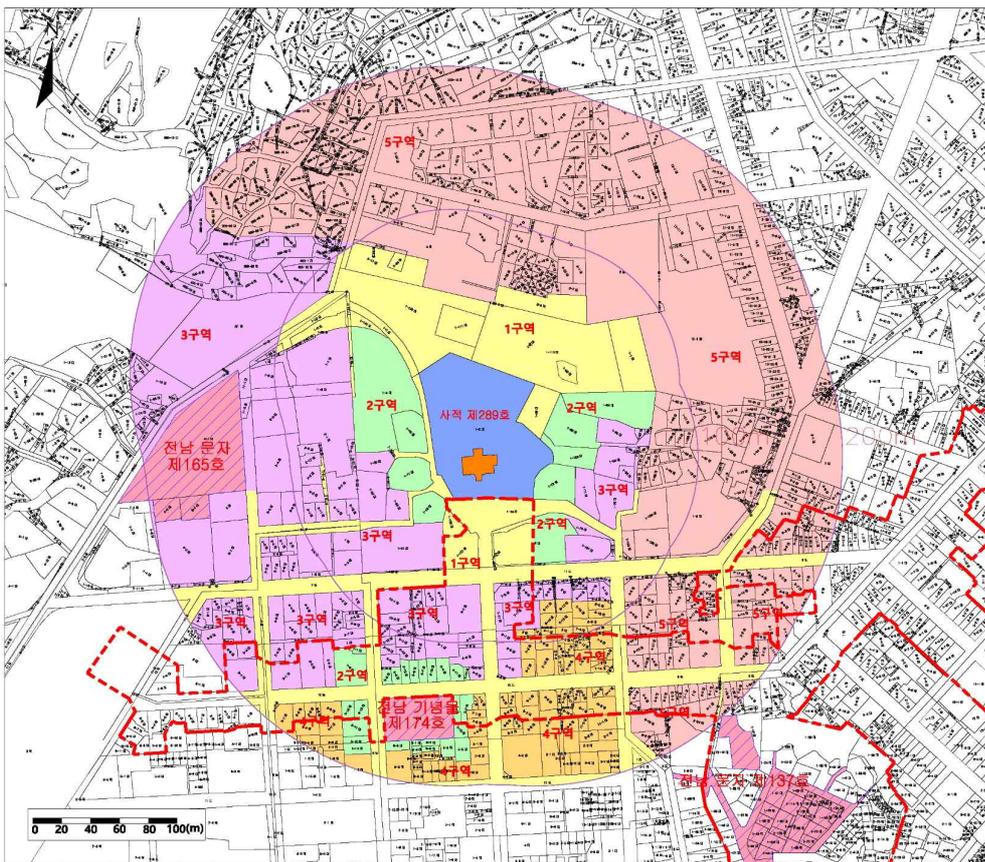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2가 1-5

범 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200(m)
- [허용기준구역]**
- 1구역
 -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축 척 1:2,000

<조정 지형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사적 제289호
구 목포일본영사관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2가 1-5

범 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시도지정 문화재
- 연속지적
- 100~200(m)

※<조각별 해당구역 구분 사항>별
구분별 허용기준을 적용함. ※조각별 구분은 본항 및
건축시, 목포시 도시계획국과 협의할 것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분	경사지분(3:10 이상)
1 구역	계절 심도	
2 구역	건물최고높이 5.0m 이하	건물최고높이 7.5m 이하
3 구역	건물최고높이 8.0m 이하	건물최고높이 12.0m 이하
4 구역	건물최고높이 11.0m 이하	건물최고높이 15.0m 이하
5 구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의함	

기존 건축물은 기존 구역 내면서 각 건축물 당첨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 필기농지는 옥탑, 평단상, 승강기탑, 방수, 방사탑
등 기타의와 유사한 구조물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돌 스킨기 처리시설,
폐물 처리시설(폐수처리, 도색용, 도기용)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함

공용
시상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건물 최상층
(각 층 건축물의 내부와의)에 계층간 층유무는
제외함
- 도로, 광장 등 인접 공터는 시설물의 신축 및 확장
은 가능 함(구역 내)
- 현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
시기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축 척 1:2,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사적 「구 목포 일본영사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근대역사문화공간을 표기하여 문화재 주변 상황에 대해 국민이 좀 더 인지하기 쉽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유산인 구 목포 일본영사관과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이 함께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목포시 주관 자문회의 의견)

○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21.6.4.)

- 구 일본 영사관은 해당 지역의 건축물 중에서 가장 높은 등위의 문화재인 만큼 기존 규정을 수정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이 지역에는 구 일본 영사관 이상의 문화재적 가치를 갖는 건축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구 일본 영사관이 갖는 기존 가치와 현행 규정에 대한 존중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구 일본 영사관과 근대역사문화공간 및 등록문화재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나 현행법상 등록문화재가 상위 문화재의 규정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통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시된 3안 중에서는 현 허용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 보존 가이드라인에 따름'이라는 내용 추가되는 2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21.6.1.)

- 2018년 8월에 국가등록문화재 제 718호로 지정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목포 개항이후 근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목포의 중심 상업지역임. 이곳은 목포역사와 생활변천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공간임과 동시에, 보존과 활용의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사적 제289호 '구 일본 영사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변경 건은 기 지정된 안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현 시점에서 새로운 변경 요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구 일본 영사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과는 향후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유지될 때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 및 활용의 극대화를 대비하여 이곳의 건축행위 규범인 '경관보존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작성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 안을 '구 일본 영사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공통사항에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축행위는 경관보존 가이드라인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겠음

○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21.6.3.)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조정안의 비교검토에서 제2안이 매우 바람직하다. 당초 허용기준 구역과 높이가 동일하고 근대 역사 공간의 경관보존 가이드라인만 추가되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선호하는 안이므로
- 단점으로 제시된 구역관리방안의 소극적인 점과 민원인과 협의하여 관리가 필요한 사항 등이 우려되나 그것은 모든 업무해결이 겪는 공통사항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 상세 가이드라인인 경관보존 가이드라인 지침은 각각 문화재의 가치성이 다르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역사적 활용, 재료, 색채, 도로부속물 등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8. 「주미조선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국립고궁박물관 소재 「주미조선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2.2.22.)를 거쳐 등록 예고한 「주미조선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주미조선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	2건 2점	(미국공사왕복수록) 25.0×17.5cm/ (미국서간) 29.0×19.8cm	1887 ~ 1889년	국립고궁 박물관	서울 종로구 효자로12

(2)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1.3.~11월) : 근현대문화유산 외교·통상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미국공사왕복수록』 A등급 / 『미국서간』 B등급 분류
- ('22.2.4.)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2.2.22.) : 제2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등록검토 ‘조건부가결’
- 명칭은 「주미조선공사관 관련 이상재 기록」으로 추진

(4) 등록예고 : '22.3.11.~4.9.(30일간) *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본 건은 주미조선공사관에서 재직했던 이상재가 기록해둔 공적 문서 및 편지로, 서양국가에 최초로 설치된 공사관의 외교업무를 생생하게 보여줌. 주미조선공사관원 자료의 희소성과 확실한 소장경위(이상재 가문 기증)를 고려할 때, 등록 예고한 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문화재위원 ○○○('22.2.4.)

- '검토건'은 가전되어 오던 이상재 관련 유품으로 집안에서 보관해 오던 것을 후손인 이상구씨가 2019년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하여 소장 경위가 분명함.
- 『미국공사왕복수록』은 초대 주미공사관 서기관 이상재가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주요 문서 및 공사관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며, 필사본의 유일본으로 초대 주미공사관의 외교 업무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 『미국서간』은 초대 주미공사관 이상재가 본국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를 정리한 필사본 책자로, 편지 내용에는 개인적인 것도 많이 있으나, 미국에서의 삶, 미국의 사회에 대한 이해, 공사관 생활의 어려움 등 외교관으로서의 이상재가 느낀 사적인 면모들이 드러나 공사관에서의 삶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유일본 자료임. 따라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 ○○○○○ ○○ ○○○('22.2.4.)

- '검토건'은 초대 주미전권공사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1차 사료로 단순히 한미관계뿐 아니라 조선의 외교관계 전체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학술·교육·전시자료임. 『미국공사왕복수록』은 당시 외국에 설치된 공사관에서 현직 외교관이 작성했던 유일무이한 비망록 혹은 편람이라는 희소성을 지님. 이들 자료는 이상재의 후손이 소장해왔던 것으로 그 경위 역시 확실하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함. '검토건'은 박정양의 자료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가능하면 두 자료를 일괄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22.2.4.)

- 현전하는 유일한 자료임. 공사관 서기관 이상재 후손 집안에 가장되어 온 자료로서 소장경위가 명확함. 일부 번짐과 접힘을 제외하면 자료의 보존상태 또한 매우 양호함. 현재 박정양 저술을 제외하면 초대 주미공사 일행의 구체적인 외교 활동과 교섭 내용을 보여주는 관련 자료가 매우 희소하므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본 조사대상은 수교 이후 초창기 한·미 간 외교관계와 개항기 조선의 재외공관 운영 실태를 상세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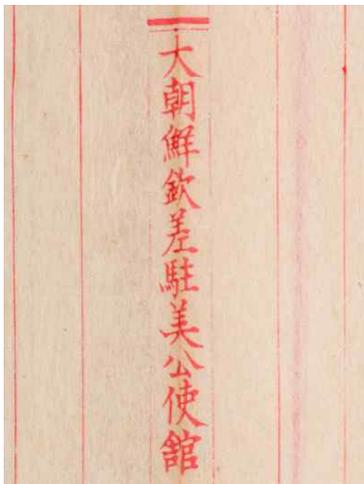
<붙임1-1> 『미국공사왕복수록』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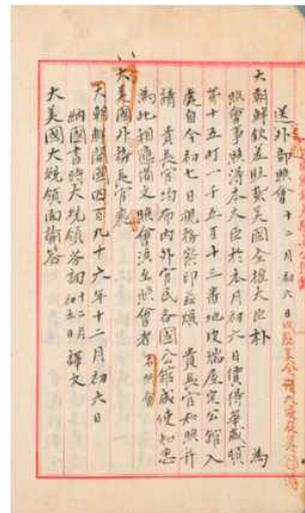
표지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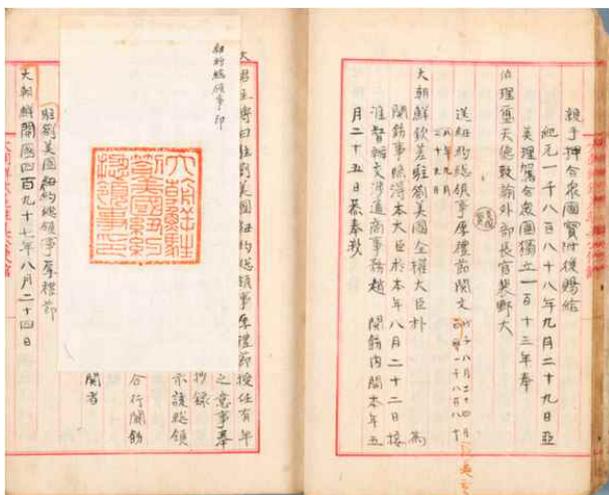
참고: 이상재 사진



용지 측면(대조선 흙차 주미 공사관)



送外部照會(송외부조회)



뉴욕(紐約) 총영사인



美國人約艸(미국인약초)

<붙임1-2> 『미국서간』 이미지



앞면 표지

轉達于 朝家以請幾許加俸而自 朝家必不燭此例事此請
 謂以俸用豈不伏閔乎惟伏幸身就無煩也朴日亦平安耳
 此書似按明年三月間可以 下燭也四萬里外事何可望
 便祈之速傳也自吾家待京中使載書以付於竹洞則似可
 無滯信到耳餘不備達 丁亥十月初旬夕子
 美國風俗以民為主權所謂君主以四年交遊人民會
 議差出故君主無權專以民議為主耳
 間有屢度上書果即次第下籤否即桂十月十七日出賓

정해 11월 초8일(양력1887.12.22.)

之政而不令人倫大幸也
 間有屢度上書以付於竹洞便矣伏未知能老中聞浮沉否
 一自來此以後漢未承一子下書伏醫了伏未審
 氣體候以時為安家內并得太平兜筆能善譯善書伏甚且
 志無任下誠林山訟重聞果何以妥當否于去月二十日始獲美
 國京城以今初五日遊呈 國書以今初六日定公館入往新樓比百
 自多事職至若日用凡物物價騰貴日食費以我國錢洽為
 百金則年俸一千圓以是太半不足樣伏未知何以推過而方也

정해 12월 8일(양력1888.01.20.)

歸期則未此姑無過十餘日則姑難的指以何間而公館則
 以每年稅錢七百八十圓或為一萬二千兩為定人住而館中
 日用什物則以一千五百餘圓買置朝夕飯則使下人第
 買米買肉而自館中做飯以喫米一斗俾以我國錢洽為
 一百兩內一斤俾以我國錢洽為十餘兩則物價騰騰
 推可知矣而白米一斗俾以我國錢洽亦過六七兩
 自昨秋至臘屢度書伏想次第 下覽而一未承 下書
 遠外伏祈若有其極休矣

무자 1월 1일(양력1888.02.12.)



참고: <죽천고>, 국립고궁박물관 기탁

Washington, U.S. A.
 June 12th, 88.
 Dear my Gen,
 I received
 letters from home and
 learned that you are very
 well. How you like steve?
 I hope you have good time
 with your company. We
 are all well here. I remain,
 Yours truly,
 C. Y. Pak.

LEGATION OF KOREA
 WASHINGTON.

利尼大人貴下頃因我國未信憑知
 貴大人穩抵我 京甚欣且慰錄務想已
 間設軍容從可增彩惟望
 貴大人用意設教期臻精銳何幸如之為
 頌
 文禮不宣
 戊子五月二日朴定陽 啟

참고: <박정양 편지>, 국외소재문화재단

<붙임2>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초대 주미조선공사관 이상재 문서
2. 소재지 : 서울 종로구 효자로12 국립고궁박물관
3. 소유자 : 국립고궁박물관
4. 조사자 의견('22.2.4.)

<문화재위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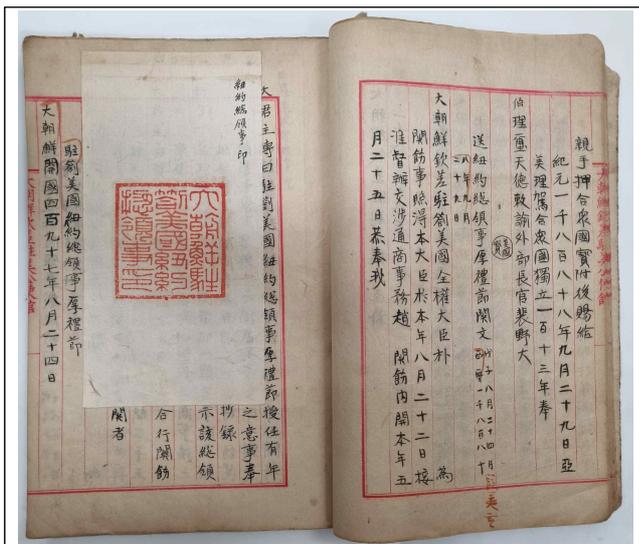
1) 개요

- 『미국공사왕복수록(美國公使往復隨錄)』은 민족운동가 이상재(李商在, 1850-1927)가 1887년 초대 미국공사 박정양의 수행원으로 워싱턴에 주재했을 때 미국과의 조약 문서 및 관련 문헌 등을 기록한 필사본 책자임. 미국 정부 및 주요 인물, 기관들과 주고 받은 문서와,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일종의 편람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서간(美國書簡)』은 역시 미국 공사관에 주재할 당시에 본국에 보낸 편지를 기록해 놓은 필사본으로 주요 내용은 문안 인사와 집안 일이나, 공적인 문서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미국 공사관에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음.
-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등 이상재 선생 관련 자료들은 고손 이상구 선생이 자택에서 보관해 오고 있었으며, 주미공사 관련 자료를 탐문하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발굴하여 이상재 사진 등 문헌자료 5점과 사진자료 3점을 2019년 2월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한 것임.
- 1887년에 박정양이 초대 주미공사로 미국 워싱턴에 부임한 것은 서양국가에는 처음으로 공사관을 개설한 것으로, 그 수행원인 이상재가 정리한 주요 외교문서인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본국에 보낸 서신인 『미국서간』은 초대 주미공사관 시기의 공적인 공무 수행 내용과 더불어 사적인 생활까지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귀중한 문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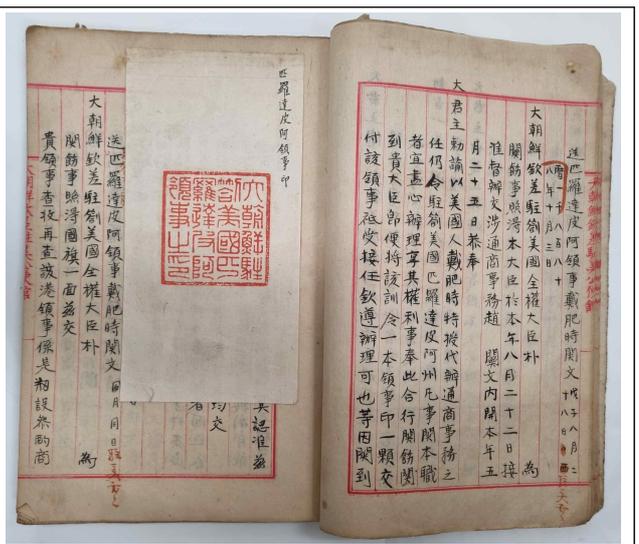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미국공사왕복수록』은 이상재가 주미공사 박정양을 수행한 시기인 1887년 11월부터 1889년 1월까지 주미 공사관에 체류하면서 미국 정부 및 주요 기관 및 개인과 주고 받은 문서를 정리한 편람임. 맨 처음 문서인 「美國答書 驛漢文」(1883년 3월 1일= 음 2월 6일)을 제외하면 주미 전권공사 박정양이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인 1888년 1월 10일(음 1887년 11월 27일)부터 귀국 후 2년이 지난 1891년 6월(음 1891년 7월)까지 총 3년여에 걸쳐 있음.
- 『미국공사왕복수록』은 본문 138쪽, 크기 25.0x17.5cm 크기로, 11줄로 구획된 용지를 5줄 선침으로 묶은 책자에 필사로 쓰여 있으며, 판심(版心)에 ‘大朝鮮欽差駐美公使館’이라고 찍혀 있어 주미공사관의 공무용 전용지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음. 이 용지는 미국으로 부임할 때 본국에서 마련해 간 것으로 보임. 겉표지에는 왼쪽에 종서로 “美國公使往復隨錄”이라고 쓰고 오른쪽에는 “附 日本館 德公館 海地館”이라 적고 있어 일본 공사관, 독일 공사관, 아이티 공사관과 주고받은 문건도 함께 실고 있음을 밝혔음.

- 『미국공사왕복수록』의 내용은 ① 미국 등 외국과 주고받은 공문서, ② 공사관을 통해 추진했던 전기 등 사업 관련 문서류(약 43건) ③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망록(인물명, 공사관이 여는 날짜 등) ④ 부록으로 독일공사관, 일본공사관, 아이티 공사관 등에 관련된 문서(6건) 등으로 나눌 수 있음. 미국 등 외국과 주고받은 영문 문서들은 한역해서 수록함. 『미국공사왕복수록』은 한철호 역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2019년에 번역본을 발간함.
- 맨 처음에 수록된 「美國答書 驛漢文」은 1883년 4월 14일 미국대통령 아더(Chester A. Arther)가 초대 주한공사 푸트(Lucius H. Foote)를 통해 고종에 전달한 문서로, 조미조약 체결후 조선이 청의 종주국임을 주장하는 속방론에 대해 조선이 내치와 외교를 자주적으로 하는 자주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제6조의 일부분만 제외하고 이 조약을 비준하여 시행할 것임을 밝힌 답변서임. 따라서 이 문서는 조선이 자주외교를 펼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임.
- 이후는 초대 공사 박정양이 국서를 봉정하는 수속을 밟는 「送美國外部照會」(1888년 1월 10일자 = 음 1887년 11월 27일자)부터, 영약삼단(另約三端·세 가지 이면 약속) 문제로 귀국하게 되면서 수행원이었던 이하영을 임시대리공사로 임명하는 「送外部照會」(1888년 11월 16일자 = 음 10월 13일자)까지 미국 정부 및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문서들임.
- 1888년 1월 18일(음 1887년 12월 6일)자로 미국 국무부 베이야드 국무장관에게 보낸 「送外部照會」에는 초대 주미 공사관을 「華城頓 第15町 1513番地(1513 O street, N.W. Washington D.C.) 皮瑞屋(Fisher House)로 정했으며, 다음날(1888.1.19.)부터 공사관 업무를 시무하게 되었다고 통보하고 있어, 초기 주미공사관의 주소와 시무 날짜 등이 기록되어 있음.



뉴욕 총영사 직인이 첨부된 면



필라델피아 영사 인이 첨부된 면

-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명예영사를 임명하는 과정에 관한 내용도 있음. 필라델피아 민선의원인 오닐(John H. O'Neill)이 박정양 공사에게 친구인 데이비스(Robert H. Davis)를 필라델피아 명예영사로 추천한 내용이 있으며, 뉴욕 명예영사인 프리저(Everette Frazer)와 필라델피아 명예영사인 데이비스에게 보낸 임명장에는 총영사와 영사의 직인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기도 함.
- 『미국공사왕복수록』에는 알렌의 편지 한글 번역본도 수록되어 있는데, 참찬관 알렌이 워싱턴을 떠나 도쿄에 머물고 있는 박정양에게 자신이 권유하여 영약삼단을 어겼음을 입증해 주는 내용임.

- ‘영약삼단’은 미국과의 외교 절차에서 ‘조선 공사는 청국 공사의 안내로 주재국에 신 임장을 제정하며, 청국 공사보다 낮은 자리에 앉고, 청국 공사와 중요 사안을 협의 하고 지시를 따른다’는 것으로 청이 강요한 것이나, 박정양과 알렌은 이를 무시하고 미국에 국서를 전달함. 이 편지는 한문 원본(「安連札」, 1889년 1월 25일자)도 있음. 이는 알렌이 영약삼단 위반을 주도했다고 밝힘으로써 박정양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와 더불어,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한철호, 「초대 주미전 권공사 朴定陽의 활동과 그 의의」, 『한국사학보』77, 2019)
- 주미공사관을 통한 추진 사업 관련 문서로는 뉴욕의 법관 ‘딸능돈’ 등이 조선기계회사를 설립해 철도와 양수기, 가스 등 3건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한 규칙과 약정서 초안 등으로, 경인선 설치에 대한 제안은 처음으로 알려진 것임.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망록의 내용으로는 1889년 음력 2월에 미국 신문의 내용을 정리한「美國新聞 謄本」과, 「미국 대통령, 각부 장관식 성명」을 한자와 한글로 적고, 「주차 미국 각국 공사」는 성명 및 부임 날짜 순으로 정리했고, 미국에서 각국으로 파견한 공사에 대한 기록도 있음. 또 말미에는 주요 관련 미국인들의 성명과 직위, 각부 장관 소견일, 각처 신문사, 화폐 단위, 미국 소재 한국인, 최초의 유학생 이계필과 공사관의 주소 등이 기록되어 있음.
- 『미국서간』은 이상재가 미국공사관 서기관으로 임명된 정해년(1887) 8월 9일부터 미국에 머물다가 박정양을 수행해 귀국하게 되면서 도쿄의 조선공사관에 머물고 있던 을축년(1889) 초4일까지 총 38통의 편지를 기록으로 남긴 것임. 부임 첫해인 1887년에는 9통, 1888년에는 28통, 마지막 해인 1889년에는 1통이 수록되어 있음. 대략 10일 간격으로 본국의 부모께 소식을 전한 서신임.
- 『미국서간』은 유지로 표지를 싸고 5침 선장으로 장황되어 있으며 표지 왼쪽 상단에 “美國書簡”, 오른쪽 상단에 “丁亥” “戊子”로 쓰여 1887~1888년 사이에 미국과 오고간 서신을 모은 책임을 밝히고 있음. 내지에는 “美國往復”, 그리고 표지와 마찬가지로 “丁亥”와 “戊子”가 쓰여 있으나 각 간지에는 괄호 안에 “一七八七”, “一七八八”이 쓰여 있어 이는 훗날 가침된 것으로 보임. 본문은 공사관용 용지가 아닌 백면 용지에 쓰여 있으며 총 92쪽으로 책자의 크기는 29.0x19.8 cm 임.
- 『미국서간』의 내용은 개인적인 서신인 만큼 부모의 안부를 묻거나 송사나 혼사 등 집안 일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상재가 미국으로 부임하는 일정, 미국에서 활동하거나 보고들은 상황, 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 등도 들어 있음. 『미국공사와복수록』이 공적인 기록이라면, 『미국서간』은 사적인 기록으로 개인의 감정과 생각이 드러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음.
- 내용 중에는 “미국 풍속은 民을 주권으로 삼는다. 소위 군주는 4년마다 교체되고, 인민이 회의해서 차출한다. 그러므로 군주는 권한이 없고, 오로지 民議를 주로 삼을 뿐이다”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알 수 있는 것도 있으며, 미국의 물가, 공관의 임대료, 언어가 통하지 않는 데에 대한 답답한 심경, 청의 방해로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 등이 있음.
- 『미국서간』은 한철호 논문 등에 일부 인용되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이 번역되어 있지는 않음. 개인의 일상에 관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미국공사관에 관련된 내용은 번역되어도 좋을 것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미국공사왕복수록』은 표지와 모서리가 조금 닳고, 표지 및 내지에 약간의 얼룩이 있는 외에는 크게 손상이나 변형 없이 보존되고 있음. 다만, 내지 일부에 붉은 색 테가 얼룩져 번진 것이 보이나, 바로 옆면은 문제없이 말끔하며 글자도 번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전체적인 손상이라기보다는 용지를 처음에 제작했을 때부터 있었던 현상으로 보임.
- 『미국서간』도 크게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은 없는 편임. 무자 정월 초 10일자 편지 일부에 수정을 위해 종이를 잘라내고 다시 붙인 면이 있으나 이는 이상재 본인이 한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증 당시의 상태로 잘 보존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미국공사왕복수록』은 서구에 처음으로 공사관을 마련한 초대 주미공사관에서 행한 외교 활동에 대해 서기관인 이상재가 비망록 형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미국과의 외교 및 자주 외교에 관한 내용 및 당시 공사관원들이 했던 행적과 노력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문헌으로 학술적인 자료로도 매우 중요함.
- 『미국서간』은 이상재 개인이 보낸 편지이나, 이상재의 미국관, 주미 공사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및 개인적인 생각 등이 수록되어 있어 1880년대 당시 주미 외교관의 생활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 2022년은 미국과의 수교 140주년을 맞는 해임. 이 자료들은 한미외교의 일선 현장에서 제작된 문화재로서, 수교 140주년 기념 전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독립기념관에는 2017년 이상재 선생의 고손 이상재씨가 기증한 이상재 관련 문건들이 있음. 그 내용은 시권, 주미공사관 재직 시절 일지 및 정부에 보내는 문서, 학교 설립 취지서 등과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을 벌이면서 쓴 글 등임. 이 문건들은 독립기념관에서 『월남 이상재 민족운동 자료집』(2021)으로 원본 이미지와 함께 번역해 발간하였음.

- 이 중 주미공사관 시기의 문건인 「주미전권공사 서기관 재직 시절 일지」는 낱장 1매에 1888년 10월 11일, 12일, 13일, 14일자 일기가 필사로 쓰여 있는 것임. 이에 견주어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공사관 재직 전 시기의 내용을 담고 있어 기록자료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초대 주미 전권 공사 박정양은 『미행일기』와 『미속습유』 등의 자료를 남겼으며 이는 국외소재문화재단에서 주관하여 한철호가 번역한 책자로 나와 있음. 박정양 관련 자료는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탁된 문집 『죽천고(竹泉稿)』와 국외소재문화재단 소장 편지와 편지봉투가 있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박정양이 미국으로 부임하는 도중인 1887년 음력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요코하마(橫濱)에 머물다가 27일 출발하여 1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때까지의 일기인 『해상일기초(海上日記草)』(1책 7장)가 있음. 『해상일기초』는 박정양의 부임을 앞둔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주미공사관에서 실제로 행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박정양과 이상재의 부임 기간을 아우르고 있으므로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이상재 집안에서 가전되어 오던 유품으로 후손인 이상구씨가 2019년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하여 그 소장 경위가 분명함.
- 『미국공사왕복수록』과 초대 주미공사관 서기관 이상재가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주요 문서 및 공사관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며, 필사본의 유일본으로 초대 주미공사관의 외교 업무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 『미국서간』은 초대 주미공사관 이상재가 본국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를 정리한 필사본 책자로, 편지 내용에는 개인적인 것도 많이 있으나, 미국에서의 삶, 미국의 사회에 대한 이해, 공사관 생활의 어려움 등 외교관으로서의 이상재가 느낀 사적인 면모들이 드러나 공적 문서인 『미국공사왕복수록』과 함께 공사관에서의 삶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유일본 자료임. 따라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주미공사관은 1887년에 개설하여 1905년까지 지속되었음. 초대에는 주미조선공사관으로 불렸으나 1897년 이후에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으로 부를 수 있어, 현재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옛 주미공사관을 재매입하여 2018년에 개관하였으며 명칭은 주미대한제국공사관으로 하고 있음. 이는 공사관의 마지막 명칭을 살린 것임
- 그러나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1887~1889년 사이의 기록으로, 이 시기는 조선왕조 시기임. 따라서 등록 명칭은 1) 주미공사관 전 시기를 아우르는 “주미공사관”으로 하되, 초대 서기관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초대 주미공사관 서기관 이상재 문서>로 하거나, 2) 조선왕조 시기임을 알 수 있도록 <초대 주미조선공사관 서기관 이상재 문서>로 시기를 명시할 수 있을 것임.

1) 개요

- 『미국공사왕복수록(美國公私往復隨錄)』은 이상재(李商在, 1850~1927)가 초대 주미조선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인 1887년 11월 27일부터 귀국 후 2년이 지난 1891년 7월까지 3년여에 걸쳐 공적·사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문서와 참고 사항을 적은 일종의 비망록(備忘錄) 혹은 편람(便覽)임. 이상재는 주미전권공사 박정양(朴定陽)이 임명된 이후 미국정부뿐 아니라 각종 관련 인물과 기관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공식 문서들을 비롯하여 개인적으로 공사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파악·수행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항을 모아 『수록』을 편찬함.
- 『미국서간(美國書簡)』은 이상재가 초대 주미조선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임명된 1887년 8월 7일 후 자신의 상황 변화를 담은 1887년 8월 9일(9/25)자 편지부터 귀국하면서 일본 도쿄의 조선공사관에서 머물던 1889년 1월 4일(2/3)자 편지까지 총 38통이 수록됨. 표지에는 ‘정해(丁亥) 무자(戊子)’라고 적혀 있는데, 1889년 기축(己丑)의 것은 마지막 편지 1통뿐이며, 그 전의 편지는 1888년 12월 15일(양력 1889/1/16)자임. 주로 이상재가 부모와 가족의 안부를 묻거나 산송(山訟)·혼사에 관련된 집안의 대소사를 논하고 있지만, 당시 이상재의 활동상과 미국관 등도 담겨져 있음. 속표지에는 ‘미국왕복(美國往復)’이라고 적혀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미국공사왕복수록』은 공관원들의 ‘업무편람’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1883년 미국 아더 대통령(Chester A. Arthur)이 초대 주한공사 푸트(Lucius H. Foote)를 조선에 파견하며 고종에게 전달한 외교문서, 박정양 공사가 미국정부 또는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각종 문서들, 주미공사관을 통해 추진했던 조선과 미국정부 간 각종 현안사업과 관련된 문서들, 미국대통령과 행정부·사법부 장관의 인적 사항을 비롯해 미국주재 각국공사 명단·각 부장관 소견일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망록, 그리고 ‘부(附)’에 해당되는 일본·독일·아이티국 공사관 관련 문서로 구성되었으며, 영문 문서들은 모두 한문으로 번역됨. 『미국공사왕복수록』은 ‘대조선흠차주미공사관(大朝鮮欽差駐美公使館)’이라고 적힌 주미공사관의 공무용 용지에 작성되었는데, ‘흠차’는 중국 황제의 명령으로 보냈던 파견임을 뜻하는 것으로 ‘대조선(大朝鮮) 대군주(大君主)’가 중국 황제와 동등한 지위를 지녔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판단됨. 초대 주미전권공사가 펼쳤던 자주외교 활동과 각종 근대적 문물의 수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특히 당시 조미 양국 간 현안사업 중 뉴욕 법관 등이 ‘조선기계회사’를 설립해 철로·양수기·가스 설치 등 3건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한 규칙과 약정서 초안이 수록되어 있음. 이들 가운데 미국인이 경인선 설치를 제안한 사실과 계약서인 ‘철도약장(鐵道約章)’ 초안은 최초로 공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철도사를 새롭게 밝혀줄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됨.
- 『미국서간』은 이상재의 집안 사정 외에 주미공사관 운영 상황, 미국에 주재하는 동안 활동하거나 견문한 사항 혹은 느낀 점 등도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당시 공사관의 실상뿐만 아니라 이상재의 활동상과 미국관 등을 두루 살펴볼 수 있음. 미국 도착 후 언어와 문자가 모두 통하지 않아서 듣거나 아는 것이 전혀 없고 미국의 인물·풍속·정치·법령이 우리나라와 일체 상반된다는 평가함. 무엇보다 박정양이 부임 후 영약삼단(另約三端)을 어겼기 때문에 주미중국공사로부터 끊임없이 추궁과 시달림을 받는 상황에서도 박정양이 순순히 굴복하지 않았으며, 미국주재 국가들 가운데 조선만 빈약하지만 부강한 다른 국가의 공사에 당당히 맞서려는 공사관원들의 비장한 각오를 담은 사실은 주목할 만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음. 『미국공사왕복수록』은 ‘대조선흙차주미공사관’이라고 적힌 공무용 용지 일부에 색번짐이 있고 노후화가 진행되었지만 본문 원문은 손상되지 않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이므로 보존환경은 좋은 편이지만, 일부 색번짐이나 색변질이 있고 130여년이 지나 지면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존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조선은 1882년 5월 서양국가들 중 최초로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문호를 개방했으며, 1887년에 조선 역시 박정양을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미국에 전권공사로 파견함으로써 대내외에 독립국임을 과시하는 자주외교를 펼쳤음. 그러나 초대 주미전권공사에 관해서 박정양의 자료 외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음. 따라서 당시 서기관으로 파견되었던 이상재의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조선의 생생한 대미외교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됨. 특히 『미국공사왕복수록』은 1905년 이전 외국에 주재한 공사관 전체를 통틀어서 현직 외교관이 작성했던 유일무이한 비망록 혹은 편람으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님. 『미국서간』 역시 단순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외교관의 미국관과 활동상을 생생하게 묘사한 자료임.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최대 주미전권공사관의 활동을 자료일 뿐 아니라 워싱턴에 개설된 대한제국공사관의 전시와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한미관계에 관련된 각종 행사와 전시에도 활용가치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초대 주미전권공사의 파견과 활동에 관해서는 박정양의 『해상일기초(海上日記草)』·『미행일기(美行日記)』·『종환일기(從宦日記)』 등의 일기류, 일종의 보고서이자 견문기인 『미속습유(美俗拾遺)』, 그리고 국왕과 정부 요직의 관리들에게 보낸 『박정양서한(朴定陽書翰)』 등이 있음. 그러나 박정양 외에 다른 공사관원들의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초대 주미전권공사의 전모를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의 실무담당자였던 서기관 이상재의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당시 초대 주미전권공사가 펼쳤던 자주외교의 면모를 새롭게 밝혀주는 활동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임.

7) 등록가치의견

- 이상재의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초대 주미전권공사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1차 사료로 단순히 한미관계뿐 아니라 조선의 외교관계 전체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학술·교육·전시자료임. 『미국공사왕복수록』은 당시 외국에 설치된 공사관에서 현직 외교관이 작성했던 유일무이한 비망록 혹은 편람이라는 희소성을 지님. 이들 자료는 이상재의 후손이 소장해왔던 것으로 그 경위 역시 확실하고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함.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박정양의 자료와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가능하면 두 자료를 일괄해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미국공사왕복수록』과 『미국서간』은 ‘초대 주미조선공사관 이상재 문서’로 명칭하면 좋을 듯함.

<○○○○○○ ○○ ○○○>

1) 개요

- 《미국공사왕복수록》 : 초대 주미전권공사 박정양(朴定陽) 사절단 일행으로서 워싱턴으로 향했던 서기관 이상재(李商在)가 공사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요 내용을 발췌하여 엮은 업무편람임.
- 《미국서간》 : 서기관 이상재(李商在)가 미국 체재 중 가족에게 보낸 편지 38통을 엮은 자료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미국공사왕복수록》 :
 - 시기상으로 보면 첫 번째 수록 자료(『미국답서한역문』, 1883년 2월 6일자 조회)를 제외하면 1887년부터 1891년까지 기록임. 1891년 문건은 명예영사 관련임. 주요 내용인 주미조선공사관 활동 관련 부분은 1887(정해)~1889(기축)년 자료에 해당함.
 - 내용상으로 보면 주미조선공사관과 미 국무부 간 왕복 외교문서, 주미조선공사관에 뉴욕·필라델피아 주재 명예영사에게 보낸 서한, 미국인 광산기사 피어스 고용계약서, 미국인 사업가와의 계약 초안(『미국인약초번역』) 등 실제 외교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함. 이와 더불어 미국 대통령 인적사항, 각 부 장관 성명, 미국주재 각국 공사 명단, 면담한 주요 미국인 명단을 비롯해 각부장관 소견일, 미국 화폐단위에 대한 소개, 미국 체류 중인 한국인과 일본 체류 한국인들의 명단 등 공사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들도 기재함. 부록으로 일본, 독일, 아이티 등 다른 나라 공사관과 주고받은 문서들로 실려 있음. 이처럼 워싱턴 현지에서 박정양 공사 일행이 수행한 교섭, 업무 내용 뿐 아니라 외교업무 수행시 유의해야 할 내용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업무편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초대 주미공사인 박정양 저술과 짝을 이룸. 박정양 저술이 사행(使行) 과정에서 일차별 일정과 미국에서 견문한 내용을 정리하였다면, 이상재 관련 문서는 외교 교섭시 주고받은 문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 있어 상보적 관계라 할 수 있음. 박정양 공사의 영약삼단 위반 문제에 관한 해명자료나, 광산기사 피어스의 광산사업개발에 대한 박정양의 검토의견을 신고 있어 외교문제나 이권사업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과 동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가운데 특히 『미국인약초번역』은 미국인 사업가들과 철도, 수도, 가스등 사업 계약의 초안을 신고 있음. 그동안 공사관 외국인 참찬관 알렌(Horace N. Allen)의 기록인 『알렌문서(Allen Papers)』를 활용한 해링턴(Fred H. Harrington) 등의 연구에서 워싱턴 체재 중 미국인 사업가들과 각종 이권 사업을 교섭했다는 사실은 소개하였으나, 계약문 원문은 전하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음. 경인철도 관련 교섭이 1880년대 후반에 이미 이뤄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임.

○ 《미국서간》 :

- 이상재가 1887(정해)~1889(기축) 3년 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조선에 있는 가족들에게 부정기적으로 보낸 개인 서한 38통을 엮은 자료임. 사적인 기록이므로 집안 안부를 묻는 등 가족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오히려 공식 외교 문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진솔한 심경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님. 워싱턴 현지의 높은 물가에 비해 주어진 경비가 부족한 상황이나 중국 공사의 외교적 압박 등 외교 수행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대표적임.
- 조선이 비록 약소국이나, 여러 나라들과 대등한 외교를 펼치고자 한다는 이상재의 언급에서 초대공사 일행의 자주의식을 확인할 수 있음. 주권국가로서 위상을 국제사회에 확립하고자 했던 조선의 외교적 노력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임.
- 미국 뿐 아니라 개항기 조선의 해외 공사관 관련 자료 자체가 희귀한 상황에서 발굴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역사적 가치를 지님.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미국공사왕복수록》 : 붉은색 테두리가 변진 쪽수가 다소 있으나 본문은 양호함.
- 《미국서간》 : 중간에 접힌 쪽이 있으나 그 외 보존상태는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전시 활용 : 원문을 전시하거나 본문 중 중요 부분을 하이라이트 처리하여 이미지 패널 혹은 동영상 자료로 소개할 수 있음.
- 공사관 관련 자료 DB 구축 : 《미국공사왕복수록》과 아울러 공사관 도록(『자주의교와 한미우호의 상징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국외소재문화재단, 2019)에 실린 관련 자료를 DB화 하는 방안. 현재 재단에서 관리하는 워싱턴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홈페이지(<http://oldkoreanlegation.org>) 내에 원문과 번역을 제공하고 이미지 공개시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활용을 도모하고 국민 일반에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 가운데 <주미전권공사 서기관 재직시절 일지(1888)> 라는 제하에 1888년 10월 12~14일 일정을 기록한 자료가 1장 있음. 여기에서 이상재는 1888년 10월 13일(양력 11월 16일) 박정양 공사 명함을 갖고 가서 미 국무부, 각국 공사에게 고별인사를 했다고 기록함. 한편 같은 날짜에 《미국공사왕복수록》에는 박정양 공사가 국무부에 보낸 귀국 사실을 통지하는 조회문 내용이 실려 있음. 일자 기록의 정확성을 보여줌.
- 서울대 규장각 소장 <해상일기초> (奎7722)는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이 1887년 10월 20일 일본 요코하마에 있다가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일기자료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죽천고』 수록 권(卷)18에 실린 『미속습유』에서는 자신의 견문, 시찰을 바탕으로 미국 문물제도를 소개하였음.
- 《미국공사왕복수록》, 《미국서간》은 <해상일기초>, 『미행일기』, 《죽천고》 수록 『미속습유』 등 박정양 저작과 더불어 초대 주미공사 일행의 구체적 외교 활동 내용과 실상을 보여줌.

7) 등록가치의견

- 현전하는 유일한 자료임. 공사관 서기관 이상재 후손 집안에 가장되어 온 자료로서 소장경위가 명확함. 일부 번짐과 접힘을 제외하면 자료의 보존상태 또한 매우 양호함. 현재 박정양 저술을 제외하면 초대 주미공사 일행의 구체적 외교 활동과 교섭 내용을 보여주는 관련 자료가 매우 희소하므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본 조사대상은 수교 이후 초창기 한미 간 외교관계와 개항기 조선의 재외 공관 운영 실태를 상세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단독 등록시 ‘초대 주미공사관 서기관 이상재 문서’ 명칭을 제안함.
- 초대 공사 박정양의 저술 또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함. 추후 상호 관련성을 갖는 자료로서 일괄적 관리 요망.

9. 「기아마스타 T600(롯데제과 제품운반용 경3륜 트럭)」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구 롯데시흥상사) 소장 「기아마스타 T600(롯데제과 제품운반용 경3륜 트럭)」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검토('22.2.22.)를 거쳐 등록예고한 「기아마스타 T600(롯데제과 제품운반용 경3륜 트럭)」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길이×폭×높이)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기아마스타 T600 (롯데제과 제품운반용 경3륜 트럭)	1대	330×132×175cm	1972년	○○○	서울시 금천구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21.6.11.) : 문화재 등록 신청(서울시→문화재청)
- ('22.1.13.)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2.1.26) : 문화재 등록 검토 추가 조사 실시(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 ('22.2.22.) : 제2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조건부 가결'
- 명칭은 「기아마스타 T600(롯데제과 제품운반용 경3륜 트럭)」으로 추진

- (5) 등록예고 : '22.3.11.~4.9.(30일간) *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본 유물은 1970년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발달 및 용달운수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지난 50년간 롯데제과 대리점 운영에 활용해 옴으로써 70년대 이후 유통·판매업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므로 등록 예고한 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문화재위원 ○○○('22.1.13, 1.26.)

- 기아산업(기아자동차 전신)은 1969년 8월부터 1974년까지 기아마스타 T600을 7,742대 생산했음. 신청 대상은 1972년 생산한 차량임.
- 1972년 롯데제과가 대량 구입해 대리점주에게 지급한 차량 가운데 하나로, 제과 도매업을 하는 ○○○ 씨(1944년생)가 현재까지 50년째 소유하고 직접 운행해 온 공식 등록 차량임.
- 현재 운행되는 등록차량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는 점, 자동차산업·용달운수·제과물류·생활사 측면에서 다양한 의미와 스토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함.

○ ○○○○○ ○○ ○○○('22.1.13.)

- 이 자동차는 1972년에 생산된 삼륜자동차 기아마스타 T600으로 우리나라 초기의 자동차 산업 및 기술을 잘 보여줌
- 좁은 골목길 운행과 적은 기름 소비 등 한국의 상황에 잘 부합하여 용달운수업의 획기적인 토대가 됨
- 현재도 운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와 운행 경험 등 그 자체의 역사성이 풍부하므로 자동차전시, 야외 퍼레이드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 비록 동일 유형의 등록문화재가 존재하나 그보다 보존성, 역사성, 활용성 등이 우수함

○ ○○○○○ ○○ ○○○('22.1.13.)

- 1973년 등록된 근거리 용달배달에 대한 대표적인 차종으로, 출고된 차종 그대로 지금까지 50년간 운영되는 유일한 차량임
- 운영하면서 소모되는 각종 부품을 현재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수의 부품을 보유하여 종합적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당함
- 같은 차종에 대한 2점이 문화재 등록되어 있으나, 본 차종은 다른 어떠한 차종보다 원래의 상태가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되며, 50년간의 운행대장 관리와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부각되는 차종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1> 사진자료



정면



후면



측면



조수석 사이드미러



운전석 사이드미러



화물칸 내부



실내



상표



지붕



차고



여분의 부품



엔진

<붙임2>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기아마스타 T600(롯데제과 제품운반용 경3륜 트럭)
 2. 소유자 : ○○○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4. 수 량 : 1대 5. 규 격 : 330×132×175cm(길이×폭×높이)
- *배기량 577cc, 최대적재량 500, 승차정원 2명, 기통수 2기통, 차대번호 SL72A062920
6. 재 질 : 금속 7. 제작년대 : 1972년
 8. 조사자 의견('22.1.13., 1.26.)

<문화재위원 ○○○>

1) 개요

- 기아산업(기아자동차 전신)은 1969년 8월부터 1974년까지 기아마스타 트럭 T-600(3륜 화물차)을 7742대 생산했음. 신청 대상은 1972년 생산한 T-600 차량임.
- 기아마스타(Kia Mastar)란 상표가 선명하게 붙어 있음. 현재 최대 시속 75Km까지 운행 가능함. 전체적으로 차량이 노후했지만 보존 상태는 양호함. 기능이나 부품 등의 측면에서 원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운행에도 전혀 지장이 없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일본의 소형 3륜트럭 전문 업체인 도요고교(東洋工業)에서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조립 생산. 배기량은 577cc, 적재량은 500Kg.
- 기아산업은 이에 앞서 1962년 도요고교와 기술제휴를 맺고 경3륜 트럭 K-360을 조립해 생산한 바 있음. T-600은 K-360의 엔진과 배기량을 강화한 것임.
- 이번 신청 대상은 1972년에 생산한 T-600 가운데 하나임. 1972년 롯데제과가 대량 구입해 대리점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제과 도매업을 하는 신청자(1944년 생)가 현재까지 50년째 소유하고 직접 운행해 온 공식 등록 차량임. 1972년 차량 등록을 했음. 신청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엔 대리점주가 운영비를 부담했다고 함.
- 이 차량은 1976년 화물칸을 달아 개조했음. 롯데제과 본사가 효율적인 제품 운반을 위해 일괄적으로 화물칸을 설치한 것임. 이 과정에서 운전석 지붕의 비상용 바퀴를 제거했음. 그 흔적(바퀴 고정장치)은 남아 있음.
- 당시 롯데제과 대리점주들은 T-600 차량을 운행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했다고 함. T-600은 1980년대 말까지 거의 사라져 이 무렵부터 희귀해졌음.
- 차량은 전체적으로 노후하지만 기능이 양호하며 최대 시속 75Km까지 운행 가능함. 이 차량은 1980년대 말부터 언론(신문 잡지 방송)에 100여 차례 소개되었음. 각종 행사에서 운행을 하거나 드라마의 소품으로 등장하기도 했음.
- T-600은 현재 10여 대가 남아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외관이 파란색(+흰색) 계통임. 그러나 신청 대상은 외부가 분홍색(+흰색) 계열인데, 이는 롯데제과가 운반 차량을 일괄적으로 분홍색 계통으로 도색했기 때문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관의 도장이 일부 탈락하고 균열이 보임, 바닥과 곳곳은 녹이 슬었고 유리창 개폐 손잡이, 운전석 문 손잡이, 의자 등 곳곳이 낡았음. 헤드라이트도 차체 안쪽으로 약간 밀려들어갔음.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운행했기 때문에 생긴 불가피한 노후 현상임.
- 전체적으로 차량이 노후했지만 보존 상태는 양호함. 아직도 ‘기아마스타(Kia Mastar)’ 상표가 선명하게 붙어 있음. 부품이 80%가 원래의 것임. 기능이나 부품 등의 측면에서 원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음. 운행에도 전혀 지장이 없음.
- 화물칸을 만들어 탑차 형식으로 바꾸었는데 이를 원형 훼손이라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이 화물칸은 당시 롯데제과 제품을 효과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개조한 것임. 따라서 원형 훼손이 아니라 당시의 용달차량 운영 방식이나 사회상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주는 이 차량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대단하며 차량 관리도 철저히 해오고 있음.
- 차량을 창고에 잘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부품의 여유분을 몇 세트씩 준비해 부품의 단종에 대비해 놓아 보존 환경은 양호한 편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이 차량은 언론과 드라마, 행사 등에 이미 100여 차례 소개되었고 그 때마다 화제를 불러일으킴. 이런 전례에서 드러나듯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음. 특히 현재 등록된 차량으로 운행중인 점에서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됨.
- 소유주는 T-600 차량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와 활용 가치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고 있음. 문화재청,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가능함.
- 소유주는 매해 의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기증 의사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적절한 시점에 공공기관이나 롯데제과 등에 기증이 이뤄질 경우, 상시적인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아마스타 트럭 T-600(3륜 화물차)은 현재 10곳에 11대(추정)가 남아 있음. 이 가운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국가등록문화재임.
- 신청 대상은 11대 가운데 유일하게 등록차량으로 운행 중임. 또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50년 동안 운행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품보다 더 가치가 높다고 평가함.

7) 등록가치의견

<자동차산업의 측면>

- 신청 대상인 기아마스타 T-600(삼륜자동차)는 우리 자동차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조립공정 시스템을 갖추고 대량 생산한 국산 자동차(조립)로, 당시 자동차 생산기술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참고로 1955년 생산한 시발은 폐기된 미군 지프의 엔진과 부품들을 이용해 제작한 차량임.
- T-600은 기아산업(기아자동차 전신)이 자동차 회사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함.

<용달운수업과 생활사의 측면>

- 1970년대 국내 용달운수업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 당시의 용달운수 문화를 잘 보여줌.
- 특히 이색적이면서도 친근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고바우’ 김성환의 풍속화에도 등장함.
- 3륜인 까닭에 적지 않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출시 3년 후인 1972년부터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됨.

<풍부한 스토리의 측면>

- 현재 등록 운행 중인 차량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음. 50년 된 차량이 멈춰있지 않고 지금도 운행 중이라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고 의미가 큼.
- 50년 동안의 운행 내력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애초의 소유자가 지금까지 직접 관리하고 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음.
- 차량과 관련해 다양한 스토리와 자료들(1973년 최초의 등록원부와 이후의 등록증, 차량점검 내용, 주요 내용 등)이 남아 있음. 2012년 중고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10억 원, 11억 원에 매물로 등록한 적도 있음.
- 50년 된 차량의 본래 기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희귀한 사례로, 근대유산(등록 문화재)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할만함.
- 따라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며 나아가 근대문화재의 존재 의미와 활용의 측면에서 전범이 될 만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명칭은 차종, 활용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아마스타 T600(롯데제과 제품 운반용 트럭)」으로 제안함

<○○○○○ ○○ ○○○>

1) 개요

- 삼륜화물차로 기아마스타 T-600
- 1969년 8월에서 1974년까지 7,742대 생산
- 근거리 화물운반용 용달차로 널리 사용
- 국내에 5대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2) 주요 내용 및 특징

- 기아산업(기아자동차 전신)이 1969년부터 조립 생산한 초기 삼륜자동차
- 삼륜자동차 K-360, T-1500에 이은 세 번째 모델로 가장 많이 보급되어 활용
- 일본의 부품/장비를 이용한 조립 생산을 통해 자동차 산업/기술의 교두보 마련
- 좁은 골목길 운행과 적은 기름 소비 등으로 용달운수업의 획기적 토대 구축
- “딸딸이”, “삼발이”로 불리며 많은 운수업자들의 환영과 국민적 관심을 받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롯데제과가 1972년 일괄 구입하여 대리점주들에게 지급한 차량으로 원형 보존이 아주 잘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운행이 가능한 상태

- 화물칸을 달아 개조했으나(탑차 형태: 자동차등록증 관련 사항) 1976년 롯데제과에서 눈비 내릴 경우 적재한 제품을 보존하기 위해 행한 조치로 이것 자체가 역사성 지님
- 유리창, 손잡이, 헤드라이트, 도색 등 몇몇 부분의 훼손과 부식이 있으나 주요 부분은 원형과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음
- 더구나 소유주는 이 자동차에 관한 각종 소모 부품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 그 주요 부분의 보존 유지가 상당 기간 가능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자동차를 보존 관리할 차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눈비와 바람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음
- 주요 부품의 고장이나 마모 등을 대체할 여분의 부품을 따로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후속적인 보존 관리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
- 다만,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여 그 운행에 따른 사고, 훼손 등에 대한 대책 규정이 새로이 갖추어져야 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그 외형이 아주 독특하여 자동차 전시회의 주요 차종으로 소개가 가능
- 자동차는 물론 관련 자료와 운행 경험도 충실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특별전시회의 소재로 활용
- 현재도 운행이 가능하여 야외 퍼레이드 형태의 특별행사도 가능
- 다른 행사들에서 주목을 끄는 희귀 아이템으로 활용 주목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국가등록문화재로 이미 지정된 것이 있으나(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주요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함
 - 첫째로 이 자동차는 아주 드물게 현재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임
 - 둘째로 자동차와 함께 그 기록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점임
- 따라서 이 자동차는 그 자체가 삶의 기록을 지니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우리나라 초기 자동차의 산업, 기술, 활용 등의 전모를 보여주는 보기 드문 사례
- 개조되어 탑재된 화물칸도 일찍 산업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가 역사성을 지님
- 비록 등록된 동일 자동차가 존재하긴 하나 운행 가능성, 역사적 기록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별성 보유
- 이 자동차는 활용의 측면에서도 야외 퍼레이드, 특별전시 등 남다른 점이 존재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차량등록증, 번호판을 비롯한 관련 주요 자료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라는 남다른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도 신설이 요구됨

9) 참고문헌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조사보고서
- 2007년 근대문화유산 교통(자동차)분야목록화 조사보고서
- 관련 신문기사들

<○○○○○ ○○ ○○○>

1) 개요

- 상기 차종은 1972년 롯데제과가 단체로 구입하여 현 차주의 부친인 대리점주에게 불하한 차종으로 1973년 6월 등록하였음
- T-600차종은 당시 근거리용 용달화물용으로 최적의 모델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모델이었음
- 약 7,700여대가 생산되어 현재 신청건 포함 11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문화재로 등록된 차종이 2대이며, 상기 차종이 문화재 등록을 신청한 상태임
- 다른 차종은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나 현 차종은 50년 동안 운행되어 지금도 운행되는 현존하는 살아있는 유일한 차종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상기 차종은 차주가 별도의 실내 창고에서 관리 중에 있는 상황이고 창고에는 해당 차종을 수리할 수 있는 각종 부품을 구비하여 추후 정비할 수 있는 영역도 확보했다는 특징이 있음
- 지속적인 정비로 운행이 가능하나 도장이 벗겨지고 각 부위가 노후화되어 부러지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영역이 넓어지는 상황임
- 상기 차종은 50년간 직접 운행할 정도로 원상태가 잘 관리되고 있고 관련 서류 보관 등 자동차 자체는 물론 관련 자료와 함께 충분한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동일 종류 중 50년간 초기부터 현재까지 운행되는 유일한 차종이고 상태 또한 원만한 상태임.
- 보관용 창고와 함께 관련 소모성 부품과 외부 램프 등 다수의 부품을 보유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품의 소실에 대한 준비가 가능한 차종으로 의미가 큼
- 심사 당일에도 정비소에 입고하여 수리를 의뢰하여 운행예정으로 준비 중이었음
- 1973년 등록 후 3년이 지난 1976년 화물칸을 개조하여 탑차 형태로 개조함. 등록 중에 개조 여부가 확인되고 있으나 문화재 등록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상황일 정도로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따름
- 최근 대여 요구조건에 따라 탑을 분리하기도 하는 형태임
- 50년간 운행되면서 관리대장, 세금 영수증 등 다양한 자동차에 얽힌 서류를 모두 보관하여 등록 시작과 함께 체계적인 관련서류를 포함하는 유일한 차종으로 의미가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73년 등록 후 3년 후 1976년 화물칸 설치를 하였음. 자동차 등록중에 기록된 합법적인 개조로 판단됨
- 전체적인 외형이나 보존 상태는 양호함. 지난 50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양호하게 관리됨 원형을 유지하는 그대로의 상태이나 부분적으로 손상된 부분은 추후 복원할 필요가 있음

- 좌우 방향지시등, 미등, 전조등 등 전체적으로 큰 훼손은 없는 상태임
- 화물칸 벽체 일부, 유리창 손잡이, 운전석 문손잡이 등 훼손
- 좌석을 비롯한 내부 인테리어 곳곳이 노후로 인하여 손상된 상태
- 도어를 포함한 여러 곳 손실된 상태임
- 엔진룸을 포함한 각 부위에 부식 진행 등 관리가 요구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상기 차종을 50년간 운행하면서 이를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실내 창고가 있는 상태
- 창고 내에는 상기 차종의 각종 소모성 부품과 반영구적 부품을 다수 마련해 놓은 상태임. 예를 들면 각종 램프류, 미등 커버 등
- 근처 단골 정비업소에서 운행 중 발생하는 오일류 교환 등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음
- 50년 운행 상태이므로 현재의 환경기준 등이 충족되지 못하여 항상 폐차의 압력을 받고 있고, 특히 과태료 처분 등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임
- 주변의 전문적인 복원 등의 진행이 되지 못하여 차량의 문제점은 더욱 커지고 있어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 소유주의 최대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재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큰 상황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상기 차량은 차량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50년간 운행된 차량이면서 현재도 운행되는 차량, 관련 부품 관리, 50년간 각종 운행관련 세금 납부영수증은 물론 정비 차계부 등 모든 자료가 현존하는 살아있는 골동품이라 할 수 있음
- 추후 전시 활용 시 차량과 함께 관련 모든 역사를 함께 전시할 수 있는 유일한 차종으로 의미가 큼
- 당시 근거리 화물운반업을 연 대표적인 모델로 의미가 큼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 국가등록문화재 와의 차별성은 초기 상태로 50년간 운행되고 있는 유일한 모델
- 관련 부품 보존과 정비 및 세금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등 T-600의 모든 것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일하게 보존가능하다는 점
- 정지 상태에서 보이는 다른 모델이 아닌 '살아있는 골동품'을 보여주는 유일한 모델임
- 초기 상태의 모든 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추후 복원 등이 아닌 최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점
- 다른 차량 근대문화재 중 아마도 유일하게 운행이 가능하고 관련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유일한 모델이라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

- 국내에 남아있는 문화재급 차량 중 상기 차량과 같이 지금은 물론이고 지난 50년간 운행되는 유일한 차종으로 등록가치는 가장 크다고 판단됨
- 초기 운행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판단됨
- 관련 정비일지와 세금영수증은 물론 각종 차량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문화재급 가치로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임
- 국내 자동차 역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임(차량의 등록은 가능하나 자료의 지정은 어려우만큼 별도 보관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8) 기 타

- 추후 문화재 등록 후 현재와 같은 길거리 운행은 어려운 만큼 조치를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추후 조치가 요구되며, 노후화로 진행된 각종 부위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복원이 필요하여 추후 관리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함
- 유물의 명칭은 「기아마스타 T600(롯데제과 운반용 경트럭)」으로 제안함

10.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보성군 소재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2.2.22.)를 거쳐 등록 예고한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보성군청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 소재지 :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산63-1, 63-4번지
 - 소유자 : 산림청
 - 면적 : 1,115㎡(채석지 763㎡ / 운반로 352㎡)
 - 건립시기 : 1940년대(추정)
 - 구조 : 채석지 및 운반로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9.16.)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전라남도 → 문화재청)
 - ('21.11.25.)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1.11.29.) : 보완자료 요청(문화재청 → 보성군, 등록신청 구역 보완, 구역 성격규명 등)
 - ('22.1.3.) : 보완자료 제출(보성군 → 문화재청)
 - ('22.1.28.) : 신청면적 조정(보성군 → 문화재청)
 - 당초 면적: 채석지 7,419㎡ / 운반로 3,798.06㎡(길이 1,579m)
 - 변경 면적: 10,882㎡(채석지 내 운반로 포함)
 - ('22.2.22.) : 제2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조건부 가결'
 - 등록구역은 A구역으로 하되, 세부범위는 현지조사 후 결정
 - ('22.3.17.) : 현지조사를 통한 문화재 최종 등록범위 확정
- (5) 등록예고 : '22.3.25. ~ 4.23. (30일간) *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는 우리나라 온돌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으로, 산업발전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유구(채석장 및 운반로 등)가 비교적 잘 남아있어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필요가 있음.
- 2022년도 제2차 근대분과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2.2.22.) 시, A구역 일부를 등록추진 하도록 조건부 가결된 사항으로서 현지조사를 통해 채석지로서의 성격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으로 범위를 확정함. 등록예고 기간('22.3.25.~4.23.)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11.25.)

- 본 유구는 한국 주거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온돌 구들장의 재료였던 편마암, 응회암 관석을 채석하여 생산하였던 광산이며 산업시설의 유산임. 역사적 사실과 산업사적 시각으로 살펴보아도 이 유구는 보존되어 후손에게 산업화시기에 전통의 건축재료 생산과 운반, 공급의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현물로써 설명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유산이라 할 것임.
- 따라서 마땅히 보존하고 산업사적으로 전달해야 할 내용을 잘 담아 활용하여야 함. 하지만 국가문화재로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문화재 등록 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본 신청유구에 대한 역사적 고증 내용이 대부분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음. 산림청 소유인 산지에서 산림청의 허가와 관리 하에 채석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간의 벌목을 비롯한 산림훼손·개발·복원의 절차와 관련된 자료와 사료가 있을 것이며 이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이러한 불확실한 점들이 해소된 후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등록에 대한 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21.11.25.)

- 전체적으로 구들 채석장으로서 특정 구역이 밝혀지고 생산시스템을 알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전통적 구들이 대체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구들장을 사용하였던 것에서부터 1930년대 이후 온돌난방방식을 사용한 주택이 대규모로 지어지면서 그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근대적 구들 채석장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이곳 채석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볼 수 있으면 바람직 할 것임.

- A구역과 B구역 및 D구역의 생산시스템의 변화를 볼 수 있다면 근대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 또한, 구들장을 직접 뜨는 과정에 대한 기록화 역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즉, 채석/운반 도구와 방식을 영상 및 기록으로 남기고, 무형의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기능인(e.g 구들 채석공)을 지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문화재위원 ○○○('21.11.25.)

- 온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닥 난방 방식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독특한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무형적인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온돌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음.
- 또한, 이번 등록 신청한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의 경우에는 인근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 내에 위치한 국가민속문화재 '보성 이정래 고택' 안채에서 수리공사 중 오봉산 구들장이 사용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제고 되는 등 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음.
- 이밖에, 채석된 구들장을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산업으로서 지역의 경제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은 인근 경전선 철도의 득량역 개통과 운송이라는 근대적 교통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
- 이에, 생활 관습상 전통 유산으로 인식하는 온돌이 시대적 특징이 반영된 근대기 산업유산으로서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과거 채석장 종사자들의 증언은 확보하였으나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등의 기록 자료가 없는 상태로 최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등록 신청 대상이 오봉산 내에 넓게 분산 배치되어 있으므로 등록 시 핵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구역을 한정하여 등록구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2. 용 도 : 폐 채석지, 일부 편백나무 조림지
3. 소재지 :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산63-1, 63-4번지
4. 소유자 : 국유(산림청)
5. 시설물 개요
 - 구조 : 구들장 채석지 및 운반로
 - 연 혁 : 1940년대(추정)
 - 수량 및 면적 : 10,882m²
6. 조사자 의견('21.11.25.)

<문화재위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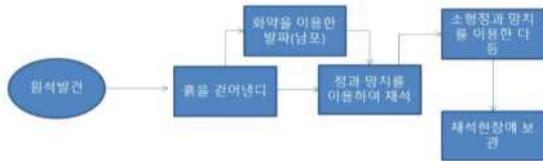
1) 개요

- 주택 온돌의 구들장에 사용할 석재를 대량으로 채석하던 대규모 채석장의 유구이다.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에 위치한 오봉산 정상에서부터 기슭까지 분포되어 있는 응회암을 채굴하여 마을로 운반, 약간의 가공을 거쳐 전국의 현장으로 공급 하였던 곳이다.
- 채석의 시작은, 과거 종사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1930년대 말부터였던 것으로 현지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 아래의 표에서 보다시피 구들장 산지들이 전국에 분포돼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폐업한 상태이다. (출처: 보성군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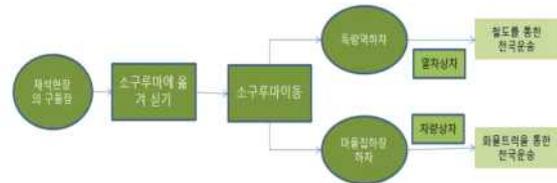
특징 구분	화산쇄설물들로 형성된 암석	엽리/편리를 보이는 변성암		결정질 조직을 보이는 화성암	화산 퇴적암	변성암	화산암
		편마암	편암				
암석	응회암	편마암	편암	석영반암	점판암	화강암	현무암
지역	나주, 보성, 완도, 여수, 장성, 장흥, 함평, 해남, 화순	광양, 곡성, 영광, 구례	무안, 강진, 순천	고흥, 담양, 완도, 목포, 영암	충청도 지역 미원, 옥천	가평 양평 포천등 전국에 분포	제주 백두산주 위 화산지역

우리나라 구들장으로 사용되는 암석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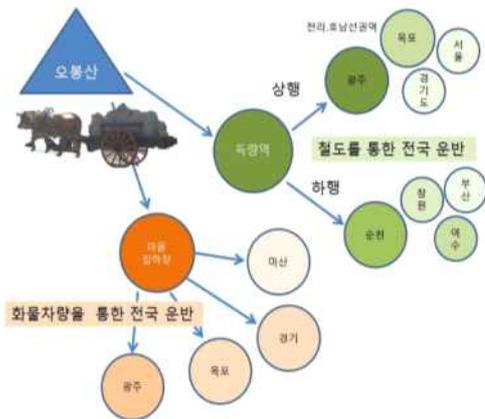
- 보성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1930년대 말에 채석작업이 시작되어 1960년대에 활황을 이루었다가 새마을 사업과 주택난방의 원료변화 등에 따라 1970년대 중반에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 생산중단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보성군에서는 아래 그림들과 같이 채석장에서 원석을 채굴하는 과정(그림 3-2)과 마을에서 집하한 후 전국의 소비지로 운송되는 과정(그림 3-3, 3-4)을 정리하고 있다. (보성군 보고서 참조)



채석과정 모식도



구들장 채석과 운반과정



구들장 운반 루트



채석지 및 운반로 위치

- 마을에서부터 오봉산의 경사면을 오르면서 아래 구역의 원석 분포지에서 채석을 시작하여 원석이 소진되면 위쪽으로 옮겨서 채석하는 과정을 밟았던 것으로 옛 종사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등록신청서에서는 남아 있는 채석지를 낮은 곳에서부터 채석지 A, B, C, D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그림5)
- 각 채석지에서 채굴된 석재는 작업자가 다룰 수 있는 규격으로 다듬은 후,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산 아래쪽 집하장으로 옮기게 되는데 급한 경사 때문에 지그재그 형태의 운반로를 만들어 급경사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한다. (그림5)
- 보성군의 남쪽 끝에 위치한 오봉산에서 구들장 채석이 활황을 맞은 것은 1930년에 철도 경전선의 득량역이 인접지역에 생기면서부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도로 운송도 이루어졌으나 대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철도를 이용하여 광주로 운반하고 그 후에 내륙 곳곳으로 보급하였던 것으로 전언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구들장 판석 생산이 활황이었을 땐 득량역 주변에 운반을 기다리는 구들장들이 벼 낫가리처럼 군데군데 쌓여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각 채석지는 원석(암반)을 커대로 채취하여 현장에서 반출한 후, 전반적인 채굴이 끝나면 이 구역에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석들의 조각을 활용하여 석단을 쌓아 일종의 사방공사로 마무리 짓고 다음 채석지로 옮겨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채석지A에는 이 과정이 완벽하게 남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며, 위쪽으로 형성돼 있는 채석지B에는 석단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채석작업 완료 후에 정비한 모습이 남아 있다. 채석지C는 소규모로 채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채석지와 운반로가 혼재된 상태로 절석과 마무리 석단작업의 흔적이 남아 있다. 채석지D는 가장 넓은 지역이며 최후까지 채석하였던 곳으로, 채석지와 운반로의 흔적이 큰 규모로 남아 있다. 정상부분의 급경사 구역이어서 운반을 위한 수레들이 마주 오는 수레를 피하여 갈 수 있는 대피로가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채석지와 석축, 석단이 현재까지 잘 남아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각 채석지는 석재 채석의 과정과 마무리 상태를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폐장 이후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석재 운반을 위해 마련한 운반로와 채석지의 일부는 폐장 후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그동안 나무들이 성장하여 길의 모습이 사라지거나 변형된 곳이 여러 곳 있다.
- 채석지 C와 D에는 채석작업 후에 조성한 석단과 사방처리가 완벽하지 못하여 낙석 현상이 계속 발생하여 접근하는 데에 위험한 곳도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주변에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등산객의 왕래 빈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채석장 유구를 살피며 접근할 수 있어 훼손이나 변형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보성군청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등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보성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용계획은 아래와 같다.

- ① 구들장 힐링파크 조성
- ② 구들장 우마차길 체험조성
- ③ 구들장 우마차길 관리 사업
- ④ 쉼터 및 휴식공간 조성
- ⑤ 아름다운 향기숲 조성

이 중에는 2021년 사업으로 시행된 것도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산업유산의 구체적 유구로서 응회암 산지를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즉,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 관광객의 관심을 모으는 정도의 내용으로 계획이 입안된 것으로 보인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본 신청 유구는 한국 고유 주거문화인 온돌바닥 구들장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판석의 원석 매장지이며 생산기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등록문화재 중에 산업·생산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공장, 창고, 수도 관련 시설 등이 있다.
- 아울러 이 유구는 자연의 매장자원에 인위적 행위를 가하여 생성된 결과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자연에 인공적 행위가 가해진 상태로 남아 있는 유구로는 제주도의 진지동굴류를 생각할 수 있다.
- 자연의 자원에서 재료를 채굴한 후에 안전조치를 해둔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는 본 유구는 지금까지 등록문화재로 다루어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대상물이라 하겠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본 유구는 한국 주거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온돌 구들장의 재료였던 편마암, 응회암 판석을 채석하여 생산하였던 광산이며 산업시설의 유산이다. 역사적 사실과 산업사적 시각으로 살펴봐도 이 유구는 보존되어 후손에게 산업화 시기에 전통의 건축재료 생산과 운반, 공급의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현물로써 설명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유산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마땅히 보존하고 산업사적으로 전달해야 할 내용을 잘 담아 활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가문화재로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문화재 등록 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우선, 본 신청유구에 대한 역사적 고증 내용이 대부분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 산림청 소유인 산지에서 산림청의 허가와 관리하에 채석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간의 벌목을 비롯한 산림훼손·개발·복원의 절차와 관련된 자료와 사료가 있을 것이며 이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이러한 불확실한 점들이 해소된 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검토하여 등록에 대한 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산림청 소유의 산지에 유구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산림법”, “산림보호법” 등의 산림보호, 자연보호와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아, 원형복원을 위한 조림 등의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물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

(2) 위의 (1)사안에서 산림청으로부터 현 상태 보존과 활용의 허가과 보장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등록의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1. 신청서에서 제안하는 범위 전체 등록:

50여 년간 이어져 온 구들장 채석의 과정이 단계별로 대부분 남아 있어, 산업현장의 유구로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구 전체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히 넓은 면적이며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등록구역 설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평소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채석지D 부근을 제외하고는) 운반로의 궤적과 형상 또한 교란된 곳이 많아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2. 채석지A만을 등록:

채석과정의 마무리까지를 완전히 보여주며 오랜 기간 동안 현재의 모습으로 고착된 채석지A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구들장 생산과 채석작업 완료 후 시행한 사방공사, 산림복원 작업의 과정을 설명하는 유구로서 문화재 등록을 한다. 이는 현재의 유구의 상태를 조사하고 측량하여 경계 설정과 관리하는 데에 편리한 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좀더 면밀한 조사와 측량을 시행하여 위의 나머지 채석지로 점차 등록확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2)-3 채석지ABCD와 D구역의 운반로 유구만을 등록:

현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만으로 최소화하여 등록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국가 행정기관에서 준행하여야 하는 토지 및 지적 관련 사항을 완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 아울러 활용방안은, 본 유구를 야외박물관으로 설정하고 한국주거문화의 재료생산 시설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유사사례를 폭넓게 조사할 필요 있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문화재위원 ○○○>

1) 개요

- 전남 보성 오봉산에 남아 있는 구들 채석장은 우리나라 국가 무형문화재 135호로 지정된 온돌문화의 핵심 자재인 구들장을 채석하던 곳으로 현재 남아있는 구들장 산지 중 규모가 가장 크고 그 유적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 2021년 3월에 실시한 구들장 채석 경험자들의 구술채록에 의하면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역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지역 주민들은 오봉산을 청방산과 오봉산으로 나누어 부르고 있는데, 득량면의 동쪽 지역인 해평리를 중심으로 한 오봉산과 득량면의 서쪽 지역인 도촌리를 중심으로 한 청방산이 주요 채석지역이라 할 수 있다.
-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이전부터 채석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1960년대 ~ 198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채석이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 온돌의 쇠퇴에 따라 채석장에서의 채석도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 이곳 오봉산 구들장은 응회암 재질로써 구들장으로서는 다른 재질에 비하여 열전도율과 작업성이 우수한 편이다. 채석한 구들은 마을 아래 집하장으로 운반되었고 득량역의 철도를 통하여 전국으로 팔려갔다고 한다.

2) 주요 특징

- 채석장은 크게 4개의 영역(보고서의 A, B, C, D)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영역은 채석시기와 채석방식에 따라 하단인 A지역로부터 산정상부인 D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오봉산 진입구 하단에 위치한 A구역의 경우 현재 17단의 석축이 구성되어 있는데, 석축의 높이는 500~700mm 너비는 800~1,500mm 정도로 완만한 산의 경사에 따라 구들장을 채석한 후 남은 부스러기 돌을 쌓아 놓았다. 석축을 구성하는 돌들이 비교적 그 크기가 고른 것으로 보아 채석과정에 폭약을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 위주의 채석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채석지 및 관련시설 위치도/등고선 지도

- 이러한 석축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암반 표면의 구들장을 채석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조성하였거나, 후대에 A구역의 채석이 중단되고 폐쇄된 이후 낙석을 방지하고 원지형의 복원을 위하여 조성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현주민의 증언으로는 운반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이라 하였지만 순로형식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
- A구역으로부터 위로 약 250m 정도 거리에 위치한 B구역은 경우 비교적 광범위한 영역(약 400m×500m)으로 A구역에 비해서는 경사가 급한 곳에 위치한다. A구역에서의 채석이 끝나고 이곳으로 채석장을 옮긴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는 폐쇄된 채석장의 낙석 방지를 위하여 편백나무를 심어 놓았다.
- C구역의 경우는 D구역으로 오르는 과정에 위치한 곳으로 경사가 급한 편이고, 채석 과정에서 발생한 돌들과 석축이 남아 있다. 이곳은 D구역과 마찬가지로 A구역과 B구역과는 달리 남아 있는 파편석들로 보아 수작업에 의한 채석이 아니라 폭약을 이용한 발파작업이 동반된 것으로 추정된다. 1960년대 이후 구들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구들장의 대규모 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채석지라 판단된다.
- 특히, D구역의 경우 급경사면에 갈지(之)자 모양의 운반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폭약에 의한 발파와 채석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 또한 산 정상까지 채석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짐에 따라 암반의 표면에 있던 구들장으로 사용가능한 석재의 채석이 완료되고 그 이후 원지형 복원과정이 없었기에 현재와 같이 채석 파편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 채석한 구들장의 운반은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했다고 한다. 현재 그 운반로가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급경사면을 구들장을 실은 우마차가 어떻게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편이다.

3) 원형보존·변형 및 상태

- 전체적으로 근대기 구들장의 채석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 다만, A~D 각 구역의 채석 시기가 다르고 채석 도구 및 운반 방식이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러한 특성이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 당시 채석장에서 일하였던 분들의 증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각 시기별 구들장 채석의 특성을 단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활용계획

- 현재의 구들 채석장이 산림청 소유고,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음
- 지자체의 보존의지가 강한 편이고, 활용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음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유사한 등록된 산업유산으로서는 ‘영양 구용화광산 선광장’ ‘태백 철암역두 선탄 시설’, ‘포항 구삼화제철소 고로’ 등이 있다.
- 본 채석장은 이들 산업문화유산이 대체로 어느 특정시기 하나의 시설인 것에 반하여 50여년 이상 구들장을 채석하는 채석장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은 편이다.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전체적으로 구들 채석장으로서 특정 구역이 밝혀지고 생산시스템을 알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다만, 전통적 구들이 대체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구들장을 사용하였던 것에서부터 1930년대 이후 온돌난방방식을 사용한 주택이 대규모로 지어지면서 그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근대적 구들 채석장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이곳 채석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볼 수 있으면 바람직 할 것이다.
- A구역과 B구역 및 D구역의 생산시스템의 변화를 볼 수 있다면 근대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또한, 구들장을 직접 뜨는 과정에 대한 기록화 역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채석/운반 도구와 방식을 영상 및 기록으로 남기고, 무형의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기능인(e.g 구들 채석공)을 지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할 경우 명칭은 ‘보성 오봉산 구들 채석장’ 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위원 ○○○>

1) 개요

- 등록 신청 대상은 온돌 설치에 필요한 구들장 돌(현지에서는 ‘방돌’로 불림)을 채석 하였던 ‘채석지’와 그 돌을 운반하기 위해 산기슭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운반로(길)’로서 오늘날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에 위치한 구봉산(해발 343.5m) 일대에 넓게 분포되어 있음.

- 채석은 주로 정이나 망치 등을 이용한 ‘돌뜨기’와 ‘남포(확약을 이용한 발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채석된 돌은 ‘소달구지(우마차)’에 실려 산기슭에 개설된 운반로를 따라 지상의 집하장으로 옮긴 후 적당한 규모와 형태로 가공되어 구들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현재 이들 흔적들과 함께 채석 및 운반, 가공 과정 등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도구들이 남아 있음.
- 오봉산에서 구들장 채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인근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194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60년대 전성기를 거쳐 19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물량을 공급하였다고 함. 또한, 이 과정에서 일종의 산업시설로서 지역의 경제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함.
- 당시 오봉산 구들장이 전국적으로 공급망을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근 경전선 철도의 득량역 개통과 함께 전문적인 운송업의 근대적 교통수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도 엿볼 수 있음.
- 관련 학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오봉산에서 채취한 구들장 돌은 다른 지역 보다 단위 무게에 비해 휨강도가 강하고 열 보존 성능이 우수하며 특히, 오래도록 불과 연기에 닿아도 터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등록 신청 구역은 오봉산 진입부에서 정상에 이르는 길목에 모두 4곳(편의상 A·B·C·D로 구분)으로 구획하였는데 면적은 모두 10,882㎡(A구역 822㎡, B구역 4,009㎡, C구역 413㎡, D구역 5,638㎡)이며, 각 영역 내에는 채석지와 함께 운반로가 포함되어 있음(당초 등록 신청 면적은 총 200,000㎡이었으나, 등록조사 후 주변 여건에 맞춰 보성군에서 조정하였음).
- 채석지는 자연암반 상태로 잔존하고 있으며 표면에는 돌을 떼어 낸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구들장 채석지로서의 모습을 쉽게 인지할 수 없음.
- 다만, A구역의 경우 채석지 바로 아래 급경사지에 일정 규모의 계단식 석축을 길게 쌓은 것이 특이한데, 관계자에 따르면 일종의 사방석축 시설로 추정되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며 축조 시기도 알 수 없어 향후 보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운반로는 채석하고 남은 돌을 이용하여 석축을 쌓듯이 하여 산기슭에 길을 냈으며, 길 폭은 소달구지가 서로 교차 운행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하였는데 현재 오봉산 정상부에서 산 아래의 집하장에 이르기까지 각 구간별로 흔적이 여럿 남아 있음.
- 특히, 오봉산 정상부에 위치한 D구역 내의 운반로는 급경사지에 조성되었던 만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지그재그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경관적 특징으로 주목 받고 있음. 또한, C구역 채석지에 인접하여서는 소위, Y자형의 교차로가 조성되어 있어 아마도 오봉산 곳곳에 채석지가 산발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채석장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달구지 1대로 옮길 수 있는 돌의 수량은 보통 1.5칸(1칸=8자×8자)의 방을 깔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며 이때, 돌의 무게는 대략 1톤 정도에 이른다고 함.
- 이밖에, 가파른 운반로를 따라 이동하는 소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에게 별도의 짚신을 신겨 소의 발을 보호하였다고 하며, 현재까지도 소짚신의 제작기술이 전해져 오고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80년대 이후 주거방식의 변화 등으로 구들장 수요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오봉산에서의 채석 사업이 중단됨과 동시에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왔으며, 최근 보성군에서 시행한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관련 조사 과정에서 그 흔적들이 확인되었음.
- 다만, 최초 채석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없어 변형 여부와 정도를 언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향후 채석지 암반의 안정화 상태 등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관할지자체인 보성군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온돌문화’의 핵심 재료로서 구들장 채석지를 적극 보존하고자 하며, 향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검토하고 있음.
- 이밖에, 이번 등록 신청한 구역과 인접한 또 다른 채석지(운반로 포함)의 경우 지난 2021년 12월에 산림청 국가산림문화자산(“전남 보성 오봉산 구들장 우마차길”)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탐방보 정비, 편의시설 등이 조성될 것이 예상되므로 급격한 훼손·멸실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보성군에서는 구들장 체험시설(테마파크) 및 우마차길 체험 코스 개발 등 다양한 활용(계획)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보성군에서 제출한 활용계획은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고 실현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기 하나,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특히, 채석지의 경우 자연암반이 외기에 노출된 상태이므로 노후화 방지 등 현상유지를 위한 적절한 보존, 관리방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과거 구들장 채석지로서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곳은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없고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온돌문화’가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온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닥 난방 방식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독특한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무형적인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온돌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음.
- 또한, 이번 등록 신청한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의 경우에는 인근 광주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 내에 위치한 국가민속문화재 ‘보성 이정래 고택’ 안채에서 수리공사 중 오봉산 구들장이 사용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제고되는 등 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음.
- 이밖에, 채석된 구들장을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산업으로서 지역의 경제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은 인근 경전선 철도의 득량역 개통과 운송이라는 근대적 교통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

- 이에, 생활 관습상 전통 유산으로 인식하는 온돌이 시대적 특징이 반영된 근대기 산업유산으로서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과거 채석장 종사자들의 증언은 확보하였으나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등의 기록 자료가 없는 상태로 최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등록 신청 대상이 오봉산 내에 넓게 분산 배치되어 있으므로 등록 시 핵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구역을 한정하여 등록구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명칭은 「보성 구)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와 운반로」가 적당할 것으로 보임.

11. 「목포 고택도 해안동굴(주정기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목포 고택도 해안동굴(주정기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9.3.)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3.26.)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목포시장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목포 고택도 해안동굴(주정기지)
- 소재지 : 목포시 고택도 일대
- 소유자 : 고택주식회사 외
- 수량 : 16개소 ※4개소 소유자 미동의
- 건립시기 : 1940년대(추정)
- 구조 및 규모 : 암반, 폭360~640cm, 너비 160~400cm, 길이830~1,300cm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18.9.3.)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목포시 → 문화재청)
- ('21.3.2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1.3.29.) : 보완자료 요청(문화재청 → 목포시, 소유자 동의서, 구체적 활용계획)
- ('21.6.8.) : 보완자료 제출(목포시 → 문화재청)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태평양 전쟁 및 강제동원 관련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이나, 이미 유사 성격의 해안동굴이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과 신청범위 해안동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완료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3.26.)

- 현재와 같이 조성 당시에 형성된 해안동굴의 자연암반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1.3.26.)

- 현재와 같이 조성 당시에 형성된 자연암반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1.3.26.)

- 이미 동굴진지라는 동일 유형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이번 신청 건인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을 포함한 대부분이 보편적 내용들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지역적 측면에서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역사적 흔적으로서 보존·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을 권고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동굴 조성 경위 및 목적에 대한 전문자료 보완

○ 출석 9명 / 보류 5명, 부결 4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목포 고태도 해안동굴(주정기지) (구) -
2. 용 도 : (현) - (원) 군사시설
3.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고태도 일대(목포시 달동 산210-1 외)
4. 소유자 : 고태주식회사 외
5. 시설물 개요
 - 구조 : 목포 고태도 해안가에 위치한 자연 암반층을 활용한 인공 동굴
 - 제작년도 : 1940년(추정)
 - 수량 및 면적 : 12기(소유자 미동의 4기 제외)
 - 층수(높이) : 폭 3.6~6.4m 내외, 높이 1.6~4.0m 내외, 길이 약 6~13m
6. 조사자 의견('21.3.26.)

<문화재위원 ○○○>

1) 개요

- 고태도는 목포항의 남서쪽 약 1.3km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태평양전쟁 시 군사요충지로 사용되었다. 고태도의 해안 동굴은 섬의 북동쪽 해안에서부터 서쪽 해안에 이르기까지 총 16기의 인공 동굴로 이중 12기에 대하여 소유자가 등록문화재 등록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
- 이 고태도 해안 동굴은 일제강점기 후반 태평양 전쟁기에 조성된 일본 해군의 군사시설이다. 일본 본토를 수호하기 위한 서해 항로의 군사요충지 거점 방어시설로서 연합군 군함에 대하여 자살을 통한 공격을 위한 매복시설이다. 이의 조성을 위해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였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고태도의 북동쪽 해안에서 서쪽 해안에 이르기까지 총 16기의 해안동굴이 확인된다. 그 중 12기의 문화재 등록에 대하여 소유자 동의가 확인되었다.
- 고태도 해안의 경사지 자연암반층을 이용하여 해안동굴을 조성하였다. 강제 징용에 의해 형성된 자연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 지형적 조건에 따라 높이 1.6~4.0m 내외, 폭 3.6~6.4m 내외, 길이 약 6~18m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동굴이 나타나고 있다.
- 일부 해안동굴은 어민들이 어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조성한 바닥과 칸막이 벽 등이 일부 남아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해안동굴을 조성했던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다.
- 일부 해안동굴에서 어민들이 어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멘트로 마감된 바닥과 시멘트 블록으로 조성된 칸막이벽이 남아있다. 내부에는 일부 어업 관련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몇몇 해안동굴은 상부가 붕괴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청소와 어느 정도 정비가 이루어지면 원형의 회복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해안동굴 주변에 방공호 2기가 있다. 이 방공호가 해안동굴과 연계되면 태평양 전쟁 관련 시설로서 그 의미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이 충무공이 고하도에 머물 때 설치했던 고하도 진성이 있는 자리에 이충무공 유적지와 모충각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방공호에서 약 300 m 떨어진 거리에는 고하도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냈던 장소인 탕건 바위가 남아 있다.
- 서쪽에는 최근에 개장한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북서쪽으로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승강장이 있다. 목포가 KTX, SRT 등으로 인해 편리해짐으로서 고하도를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인 강제 징용과 태평양 전쟁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해안동굴의 원형을 잘 보존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사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일본의 강제 징용과 태평양전쟁과 관련된 시설물로서 20세기 전반기 한국 근대사의 역사적 현장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 해안동굴 내부 조명 및 안내, 안전시설확보, 동선 계획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방공호 등 인근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이 필요하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목포시가 진행하는 고하도 역사공원에 해안동굴을 포함하여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제주도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시설물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함.
- 소유자 동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6기 해안동굴 전체를 등록되는 것이 효과적임.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현재와 같이 조성 당시에 형성된 해안동굴의 자연암반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고하도는 개항기에 조성되기 시작한 목포항의 남서쪽 약 1.3km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은 섬의 북동쪽 해안과 서쪽 해안에 조성된 총 16기의 인공 석굴이다. 이중 12기에 대한 소유자 동의가 확인되었다.
- 일제강점기 후반 태평양 전쟁기에 조성된 일본 해군의 진지와 군사시설로서 서해항로의 군사요충지 거점 방어와 연합군 군함에 대한 자살 특공정 매복을 목적으로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여 조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고하도의 북동쪽 해안과 서쪽 해안으로 총 16기의 해안동굴이 확인되며 그 중 소유자 동의가 확인된 12기로서 해안에 산재해 있음.
- 고하도 해안을 형성하고 있는 경사지 자연암반층을 그대로 이용하여 해안동굴을 조성하였음. 해안동굴 안쪽 공간의 측면이나 천장 모두 해안동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연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 해안동굴은 그 규모가 지형적 조건에 따라 높이 1.6~4.0m 내외, 폭 3.6~6.4m 내외, 길이 약 6~18m 등으로 다양함.
- 일부 해안동굴은 어민들이 어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면서 조성한 바닥과 칸막이 벽 등이 남아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해안동굴에서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내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감의 흔적이나 인공적인 구조물 조성의 흔적이 거의 없음.
- 조성 당시에 형성된 자연암반이 별 다른 변형 없이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부 해안동굴에서 시멘트로 마감된 바닥과 시멘트 블록으로 조성된 칸막이벽이 남아있음. 내부에 어업 관련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몇몇 해안동굴은 상부가 붕괴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고하도 남쪽으로는 고하도 이충무공유적지가 조성되어 있고 서쪽으로 최근에 개장한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북서쪽으로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음.
- 고하도를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개발 압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해안동굴의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역사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접 시설과 연계하여 방문객의 관람이 가능하도록 보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태평양전쟁과 관련된 시설물로서 20세기 전반기 한국 근대사의 역사적 현장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보다 구체적인 활용을 위한 인접 시설과의 연계, 해안동굴 내부 조명 및 안내, 동선 계획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목포시가 고하도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활용계획은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제주도에 조성된 일본군 동굴진지가 등록되어 있음. 제주도의 일본군 동굴진지는 고하도의 해안동굴에 비해 절대적인 숫자가 월등히 많고 개별적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례가 많아 직접적인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음.
- 제주도 이외의 사례로서 태평양에 가까운 한반도 남해안의 전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이며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으로서 등록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유자 동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6기 해안동굴 전체를 등록되는 것이 바람직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현재와 같이 조성 당시에 형성된 자연암반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동 시설은 일제가 1940년대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 해안가에 만든 인공 동굴로서 태평양전쟁 막바지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시설(주정기지)로 추정하나, 정확한 축조시기와 구체적인 용도·기능은 확인되지 않음.(다만, 군사학적으로는 자살 특공정을 매복시켰던 장소로 보고 있음).
- 현재 고하도 주변에는 모두 16개소의 동굴시설이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 소유자 동의를 거쳐 총 11개소가 등록 신청되었으며 대부분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해안가에 집중 배치되어 있음.
-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동 시설의 조성 공사에는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되었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가 패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즉, 강제 동원된 생존 인물의 증언 중에는 고하도에서 굴을 파다가 해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동 시설은 일제가 태평양전쟁 당시 자살공격용 소형선박을 정박하기 위한 주정기지로서 동굴 형태로 구축한 군사시설로 추정되고 있음.
- 동굴은 자연암반층을 뚫어 구축하였고 형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규모는 폭 5m, 높이 3m 정도이나 길이는 조금씩 다른데 가장 긴 곳이 18m 이고 짧은 곳은 6.8m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동굴 기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또는 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내부 공간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남아 있지 않음. 이는 실제로 준공되기 이전 일본의 패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동 시설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가 패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모습을 원형으로 간주하는데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동굴 내부에는 바닷물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퇴적되어 있고 동굴 암벽이 침식되는 등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며, 일부 동굴은 입구를 시멘트로 막은 후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기도 하였음. 또한, 동굴 상부가 붕괴되어 무너져 내려 진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관할지자체인 목포시에서는 고하도 주변 일대를 해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해상관광코스를 개발 중에 있고 현재 해안 일부 구간에 관광용 데크를 설치하여 활용 중에 있어 이와 연계한 역사,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목포시에서는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동원된 역사,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고하도 섬 자체는 ‘북항대교’를 통해 육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굴 시설은 해안가에 분포하고 있어 선박으로만 이동할 수밖에 없어 활용과정에서의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일제가 태평양전쟁 당시 해안가에 조성한 동굴 형태의 군사시설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제주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15개소)’ 등의 사례가 있고, 또한 우리나라 동남연해의 여러 지역에 해안선을 따라 다수의 시설이 밀집 분포되어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동일 유형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또한 이번 등록 신청한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을 포함한 대부분이 보편적인 내용들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지역적 측면에서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의 역사적 흔적으로서 보존, 관리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을 권고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목포 고하도 해안 일제 동굴진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12. 「목포 고하도 방공호 및 막사건축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목포 고하도 방공호 및 막사건축물」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9.3.)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3.26.)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목포시장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목포 고하도 방공호 및 막사건축물
 - 소재지 : 목포시 고하도 일대(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산214-5 외)
 - 소유자 : 고하주식회사 외
 - 수량 : 3개소 ※2개소 소유자 미동의
 - 건립시기 : 1940년대(추정)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8.9.3.)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목포시 → 문화재청)
 - ('21.3.2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1.3.29.) : 보완자료 요청(문화재청 → 목포시 / 소유자 동의서, 구체적 활용계획)
 - ('21.6.8.) : 보완자료 제출(목포시 → 문화재청)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함께 등록 신청된 고하도 해안동굴과 마찬가지로 태평양 전쟁 및 강제동원 관련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이나, 일제강점기 해안 군사시설 문화재가 이미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과 소유자들의 동의가 완료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3.26.)

- 조성 당시에 형성된 현재 상태의 자연암반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1.3.26.)

- 현재와 같이 조성 당시에 형성된 자연암반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1.3.26.)

- 이미 동굴진지라는 동일 유형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이번 신청 건인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을 포함한 대부분이 보편적 내용들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지역적 측면에서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역사적 흔적으로서 보존·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을 권고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동굴 조성 경위 및 목적에 대한 전문자료 보완

○ 출석 9명 / 보류 9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목포 고하도 방공호 및 막사건축물 (구) -
2. 용 도 : (현) - (원) 군사시설
3.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 일대(목포시 달동 산214-5 외)
4. 소유자 : 고하도주식회사 외
5. 시설물 개요
 - 구조 : 자연암반 인공동굴
 - 제작년도 : 1940년대(추정)
 - 수량 및 규모 : 1개소 / 약 3.4×2×17m(높이×폭×높이)
6. 조사자 의견('21.3.26.)

<문화재위원 ○○○>

1) 개요

- 고하도는 목포항의 남서쪽 약 1.3km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태평양전쟁시 군사요충지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고하도에 방공호가 설치되었다. 섬 중심의 구릉지 동쪽 사면의 자연 암반층에 조성된 방공호는 높이 3.4m 내외, 폭 2.2m 내외, 길이 약 17m 규모의 동굴이다.
- 이 방공호는 일제강점기 후반 태평양 전쟁기에 군수물자의 보관과 공중 폭격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서 한국인을 강제 징용하여 조성한 것이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시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유적이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고하도 섬의 중심에서 구릉지 동쪽 사면을 따라 설치된 2개의 방공호가 확인된다. 고하도의 해안동굴과 더불어 일제 강점기 목포를 중심으로 하여 전남 서남해안을 군사요충지로 활용한 사례를 잘 보여준다. 이 두 개의 방공호는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다. 두 개의 방공호 중 남쪽에 위치한 것으로 그리스도교 교회 기도원 건물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는 자연암반층을 이용하여 방공호를 조성하였다. 출입구는 1m 정도 크기로 사람이 머리를 숙여야 출입이 가능하다. 동굴의 위치를 은폐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방공호 조성과정에서 형성된 자연암반이 그대로 노출된 동굴 내부의 측면이나 천장을 통해 강제 징용에 따른 노역의 상황을 그대로 알 수 있다.

- 1m 크기의 입구를 지나 10m 정도 들어가면 우측으로 급회전해서 들어가게 된다. 이것 역시 내부가 한꺼번에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방공호의 안쪽은 높이 3.4m 내외, 폭 2.2m 내외로 전체 길이는 17m 정도이다. 입구에 비해 넓어지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크지 않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내부 공간은 원래의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인공적인 구조물 조성의 흔적이 거의 없다. 다만 입구 바닥에 시멘트를 바른 흔적이 남아 있는 정도가 확인된다.
-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조성된 인공 동굴이 초기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방공호 2기는 목포권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방공호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역사적으로도 이 충무공이 고하도에 머물 때 설치했던 고하도 진성이 있는 자리에 이충무공유적지와 모충각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방공호에서 약 300 m 떨어진 거리에는 고하도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냈던 장소인 탕건 바위가 남아 있다.
- 서쪽에는 최근에 개장한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북서쪽으로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승강장이 있다. 목포가 KTX, SRT 등으로 편리해짐으로서 고하도를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인 강제 징용과 태평양 전쟁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방공호의 원형을 잘 보존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사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일본의 강제 징용과 태평양전쟁과 관련된 시설물로서 20세기 전반기 한국 근대사의 역사적 현장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 방공호 내부 조명 및 안내, 안전시설확보, 동선 계획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인근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이 필요하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목포시가 진행하는 고하도 역사공원에 방공호를 포함하여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제주도의 일본군 동굴진지는 고하도의 방공호에 비해 절대적인 숫자가 월등히 많고 개별적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례가 많이 있지만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방공호 중에서는 비교적 그 크기와 규모에 있어서 비중이 있다.
- 제주도 이외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시설물들을 묶어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함.
- 인접한 달동 770-1번지의 방공호와 함께 등록되는 것이 바람직함. (소유주의 설득이 필요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조성 당시에 형성된 현재 상태의 자연암반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은 ‘목포 고하도 방공호’가 적합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고하도는 개항기에 조성되기 시작한 목포항의 남서쪽 약 1.3km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목포 고하도 방공호는 섬 중심의 구릉지 동쪽 사면에 조성된 높이 3.4m 내외, 폭 2.2m 내외, 길이 약 17m 규모의 인공 석굴이다.
- 일제강점기 후반 태평양 전쟁기에 군수물자의 보관과 공중 폭격에 대비한 방공호로서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여 조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고하도 섬 중심의 구릉지 동쪽 사면으로 2개의 방공호가 확인되며 그 중 남쪽에 있는 방공호로서 과거 기도원으로 사용되었던 건축물의 배면 방향에 인접하여 있음.
-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는 자연암반층을 그대로 이용하여 방공호를 조성하였음. 방공호 안쪽 공간의 측면이나 천장 모두 방공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자연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 방공호의 입구는 1m 이내의 높이로 내부에 비해 입구가 좁게 형성되어 있음. 방공호의 안쪽은 높이 3.4m 내외, 폭 2.2m 내외로 입구에 비해 넓어지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크지 않음.
- 방공호 전체 길이는 17m 정도이고 중간 부분에서 우측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입구 바닥에 시멘트를 바른 흔적이 남아있는 정도가 확인되나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내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감의 흔적이거나 인공적인 구조물 조성의 흔적이 거의 없음.
- 조성 당시에 형성된 자연암반이 별 다른 변형 없이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방공호의 남쪽으로는 고하도 이충무공유적지가 조성되어 있고 서쪽으로 최근에 개장한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북서쪽으로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음.
- 고하도를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개발 압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방공호의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역사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접 시설과 연계하여 방문객의 관람이 가능하도록 보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태평양전쟁과 관련된 시설물로서 20세기 전반기 한국 근대사의 역사적 현장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보다 구체적인 활용을 위한 인접 시설과의 연계, 방공호 내부 조명 및 안내, 동선 계획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목포시가 고하도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활용계획은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제주도에 조성된 일본군 동굴진지가 등록되어 있음. 제주도의 일본군 동굴진지는 고하도의 방공호에 비해 절대적인 숫자가 월등히 많고 개별적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례가 많아 직접적인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음.
- 제주도 이외의 사례로서 태평양에 가까운 한반도 남해안의 전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이며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으로서 등록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인접한 달동 770-1번지 방공호와 함께 등록되는 것이 바람직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현재와 같이 조성 당시에 형성된 자연암반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목포 고하도 방공호'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동 시설은 일제가 1940년대 고하도 내에 만든 인공 동굴로서 당시 공습에 대피하기 위하여 만든 방공호 시설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방공호 조성 공사에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동 시설에서 약 200m 이격된 곳에 또 다른 방공호 1곳과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1동이 남아 있으나, 이들 시설은 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해 이 번 등록 신청에서는 제외된 상태임. 다만,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동 건축물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서 건립되거나,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방공호는 고하도 뒷도랑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수물자를 보관 하거나, 전시에 지휘본부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그 앞으로는 기능이 폐쇄된 기도원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관계로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없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음.
- 규모는 높이 340cm, 넓이 220cm, 길이 17m 정도이며, 입구에서 10m 정도 진입한 후 우측으로 급하게 꺾여 들어가 있어 전체적으로는 ㄱ자형의 평면을 구성하였으며 입구는 높이가 비교적 낮아(1m 내외) 진입하는데 다소 불편한 상태임.
- 전체적으로 자연암반층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바닥에는 시멘트를 바른 흔적이 남아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방공호의 조성시기 및 용도, 기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또한 최초 준공 당시의 모습 역시 파악할 수 없어 현 시점에서 원형보존 및 변형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가 있음.
- 또한, 구조자체가 자연암반동굴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으므로 현 시점에서의 구조적 안정 및 암반의 노후화 상태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관할지자체인 목포시에서는 고하도 주변 일대를 해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해상관광코스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활용할 것으로 보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일제강점기 침탈의 현장을 보여주는 역사,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최근 목포시에서 추진 중인 고하도 해안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역사, 교육체험의 장소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일제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성한 동굴 형태의 군사 시설은 제주지역을 비롯해 우리나라 동남 및 서남해안 지역에 다수의 사례가 남아 있으며, 일부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보존, 관리 되고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이번 등록 신청한 ‘목포 고하도 방공호’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구조물의 형태와 기능, 목적 등에서도 보편적인 내용들을 보이고 있음.
- 다만, 기 등록된 사례들에서와 같이 지역사적 측면에서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의 역사적 흔적으로서 기억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지역 차원에서 보존,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명칭은 ‘목포 고하도 일제 동굴진지’가 적당할 것으로 보임.

13. 「대한성공회 음성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대한성공회 음성성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09.11.17.) 및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1.18.)와 추가조사('22.1.13.)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10년 제1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0.2.4.) : **보류**
 - 신청자측의 보존의지에 따라 조치(변형된 현관 증축부의 철거 및 복원, 신축 교회건물의 설계변경 이행 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대한성공회 음성성당
 -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15번길 2
 - 소유자 :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 수량 : 1동
 - 건립시기 : 1923년
 - 구조 및 규모 : 한식 목구조, 1층, 면적 102㎡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09.11.17.)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음성군 → 문화재청)
 - ('10.1.18.)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10.2.4.) : '10년 제1차 근대문화재 분과위원회 '보류'(신청자측의 보존의지에 따라 조치)
 - ('21.5.5.) : 서류 보완 및 명칭변경 재신청
 - * 명칭변경 : (당초) 대한성공회 음성교회 → (변경) 대한성공회 음성성당
 - *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7.17.) : 조건부 가결(학술조사보고서 및 원형복원확약 제출)
 - ('22.1.13.) : 문화재 등록 검토 추가 현장조사 실시(2차)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당초 문화재위원회 심의 당시의 보류 사유인 보존 이행을 위한 자료, 변형 부분에 대한 고증 자료 등이 충족되지 못한 점을 고려한 등록 검토가 필요함

마. 재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22.1.13.)

- 새 건물 건축 이후, 10여 년 동안 역사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 활용계획 수립과 이행을 권유하고 기대하며 기다렸으나 제출된 계획서와 현지의 보존 현황은 전혀 문화재 보존을 담보할 상황이 아님을 확인함.
- 동일유형의 국가유산들과 비교하여도 기존의 (지정 또는 등록) 국가문화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시·도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충청북도 등록문화재로 보존, 활용하여 지역의 유산으로 잘 지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 ○○○('22.1.13.)

- 대한성공회 음성성당은 국내 선교 초기 성공회의 지역 토착화 정신에 따라 한옥형식으로 건축되었던 성공회 한옥성당들 중 한 사례이며, 상량문에서 1923년에 건축되었음이 확인됨.
- 현재 한옥성당 다수가 문화재로 지정, 등록되어 있으며, 대한성공회 음성성당은 기존 국가등록문화재 사례들에 비해 두드러진 건축적 특성, 대표성, 희소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성공회의 충청도 지역 성공회 선교 역사의 주요 흔적으로 유신덕 신부 당시 대한성공회 음성성당과 함께 건축되었던 대한성공회 진천성당(국가등록문화재), 청주 성공회 성당(충북 유형문화재)이 이미 문화재로 보존관리되고 있는 상황임.
- 근대문화유산 종교건축물 일제조사보고서(문화재청, 2009년 6월)에서도 대한성공회 음성성당은 적지 않은 성공회 한옥성당이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크지 않으며 등록문화재 추진이나 검토보다는 교단 자체 보존 대상으로 평가·판단함.
- 2010년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등록 검토 당시 보류 사유로 제시되었던 정면 현관부의 증축 및 변형 관련 고증, 철거, 복원계획 수립 및 이행 관련자료 제출이 현재까지 미흡한 상태로 판단됨.
-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대한성공회 음성성당은 지역적 역사성, 대표성, 상징성, 장소성을 바탕으로 국가등록문화재보다는 시도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 문화재전문위원 ○○○('22.1.13.)

- 대한성공회 음성교회 성당은 성공회 최초 한인 사제인 김희준 마가신부가 사목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1923년 10월에 축성된 성당 건물은 한옥 형태로 정면 3칸 측면 5칸 규모의 삼량식 한식목구조로 건립되었음.
- 지난 2010년 문화재 등록을 위한 현지조사 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에서 검토 안건으로 논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당시 “변형된 현관 증축부의 철거 및 복원”, 그리고 인접하여 건립 예정이었던 “신축 교회건물의 설계변경” 이행 등을 사유로 보류되었음.
- 이에, 2021년 5월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는 동 건물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재신청하였으나, 당초 보류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임. 즉, ① “변형된 현관 증축부의 철거 및 복원”에 대해서는 향후 원형 복원을 이행한다는 ‘이행확약서’로 대체하였으며, ② “신축 예정 교회건물의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없이 이미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다만, 당초 설계(안)에 비해 이격거리를 두고 건립)
- 최초 문화재위원회 심의 당시의 보류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없이 현 상태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을 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바.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10.1.18.)

- 성공회 한옥성당의 한 유형으로, 토착화 단계의 한 형식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주출입구 증축과 지붕기와 변경, 외벽 하부(화방벽) 도장을 제외하면 전체 내외부 구조와 형태는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있다. 다만, 같은 청주 전도구(傳道區, Parish)에 같은 시기(1923년)에 지어진 유사한 유형의 진천성당이 이미 등록되어 있고, 지정(등록)된 다른 성공회 한옥성당(4건)과 비교하여 상대적 가치가 다소 미흡하나, 남아있는 비지정 한옥성당 대부분이 소멸되거나 용도변경으로 원형훼손이 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증축된 현관부 철거·정리, 전례기능과 내부 공간형태를 보존할 수 있는 구체적 활용계획 수립, 착공한 신축건물의 설계변경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문화재전문위원 ○○○('10.1.18.)

- 성공회 음성교회는 한옥교회 중에서도 내부공간에서 제단(祭壇, Apse)을 서양 바실리카식 교회(Basilican Church)처럼 공간적 집중성을 높게 형성하고, 내부의 3랑식 공간구성에서 중앙 신랑(身廊, Nave)의 너비가 넓게 형성한 특징이 있으며, 또한 시멘트 기와지붕, 현관부 증축, 외벽 페인트 도색 등의 개보수로 변형이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 한옥성당 특유의 목조 가구식 구조체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므로 건축물 원형 복원이 가능하여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대한성공회 진천교회(등록문화재 제8호) 등의 성공회 한옥교회가 이미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어 있으며, 한옥교회 중에서의 독창성, 타 종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등록가치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등록시에는 전면 현관부 원형복원 및 예배실 용도 사용원칙, 신축 교회건물의 설계변경 등 필요함.

○ 문화재전문위원 ○○○('10.1.18.)

- 한옥형 성당으로서 성공회성당의 토착화단계의 양식으로 장방형 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제대를 위하여 약간 올려 설치한 마루바닥이나 마루의 형식 등은 전통적인 한옥의 모습은 아님. 부재의 상황이나 먹을 먹인 흔적 등으로 후대에 수리보수가 이루어졌고, 구체적 수리기록은 없지만, 내부구조 및 「사진으로 본 대한성공회 백년」 자료로 미루어 보아 상당부분 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부지 내에 새로운 현대식 교회가 건축 중에 있어 신청 건축물의 보존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유사한 개량형 교회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

사. 의결사항

○ 부결

- 등록 가치 미흡

○ 출석 9명 / 부결 9명

<붙임>

대한성공회 음성교회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대한성공회 음성교회 (구) 대한성공회 음성교회
2. 용 도 : (현) 종교시설 (원) 종교시설
3. 소재지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40-3
4. 소유자 : (현)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음성교회 (원)
 - 현소유자 주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40-2
5. 건축물 개요
 - 설계자 : 미상
 - 건축구조 : 목조, 기와지붕
 - 대지면적 : 2,090㎡
 - 연면적 : 102㎡
 - 시공자 : 미상
 - 준공일 : 1923년
 - 건축면적 : 102㎡
 - 층수, 높이 : 1층(m)
6. 조사자 의견('10.1.18.)

<○○○ 문화재위원>

가. 건축양식 및 주요특징

- 건축양식/한식목조(3칸×5칸)
 - 전통한옥의 정면과 측면의 축을 바꾸어 삼랑식 공간을 구성한 한옥형 성당건축으로 성공회 전례기능을 수용하고 있다.
 - 정면 횡칸이 3칸, 측면 종칸이 5칸인 장방형 한옥의 정면에 벽돌조 현관부가 덧붙어 있으며, 마지막 칸의 중앙이 감실제단, 좌우측 측랑이 제의실과 제구실로 쓰이고 있다.
- 주요특징
 - 성공회 음성교회는 진천성공회 전도구에 속하는 성당으로서 일제강점기의 일반적인 성당과 같은 한옥형 성당으로, 초기형식인 기존 건축의 개량형으로서 도착화 단계의 한 형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부재는 건립 당시 인근의 현씨 집안에서 철거한 목재를 가져와 사용하였다.
 - 지붕은 성단이 있는 부분이 팔작지붕이고, 출입구 부분이 맞배지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장차 증축을 고려한 미완성 건물이기 때문이다.(실제 준공 후에도 아직 축성을 하지 않았다고 함) 기와는 1980년대 시멘트 기와로 교체함.
 - 주 출입구는 현재 벽돌로 반칸 정도 증축(1990년경)하여 나르텍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연혁 및 수리기록

○ 연 혁

- 1910년 충북지방에서 두 번째로 전도시작. 초가집 교회에서 미사드림
- 1923년 인근 한옥의 철거부재를 봉헌받아 건축.
- 1923년 10월 7일 상량
- 1974년 유치원과 화장실 신축
- 2010년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새 성당(사제관, 교육관)을 착공하였음

○ 수리기록

- 1980년대 기와교체(시멘트기와로)
- 1990년경 성당 주출입구 증축

다. 문화재 보존여건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체 내외부 구조와 형태는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다만 주출입구 증축과 지붕기와 변경, 외벽 하부(화방벽)의 도장이 아쉽다.
- 창호의 노후화가 심해 보수가 필요하다.

○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본 건물과의 형태나 배치상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동일대지 내에 새 성당을 건축 중에 있다.
- 새 성당이 완공되면 전례기능이 아닌 다른 용도(강당)로 사용될 것이며, 내부공간의 변경 등 원형훼손의 가능성이 있다.

○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동의

라. 등록(지정) 등 가치의견

○ 근거 또는 사유(구체적으로 제시)

- 성공회 한옥성당의 한 유형으로 주출입구 증축과 기와교체, 외벽 하부(화방벽)의 도장을 제외하면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연대가 확실하다.
- 성공회 한옥성당의 초기형식에 속하는 건물로 토착화 단계의 한 형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존가치가 있다. 다만 같은 전도구에 같은 시기에 지어진 유사한 유형의 진천성당(1923년, 등록 제8호)이 이미 등록되어 있고, 지정(등록)된 성공회 한옥성당(4건)과의 비교, 「근대문화유산 종교건축물 일제조사보고서」의 평가 등 상대적 가치는 다소 미흡하다.
- 그러나 남아있는 비지정(등록) 한옥성당이 대부분 소멸되거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원형이 훼손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보존의지가 확고한 본 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등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타당함.

1) 증축된 현관부(벽돌조)를 철거·정리하고 전례기능과 내부 공간형태를 보존할 수 있는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함

2) 착공한 신축건물의 배치, 형태 등이 본 건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보완

○ 보존가치 또는 보존 필요성이 있는 부분(특정부분)

-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내부 공간구성

○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대한성공회 음성성당

마. 첨부 : 인용자료 사본, 사진 기타 참고자료

- 충청북도,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2004.10.
-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종교건축물 일제조사보고서」, 2009.6.

<○○○ 문화재전문위원>

가. 건축양식 및 주요특징

- 건축양식
 - 정면 3칸, 측면 5칸 규모의 목조 한옥형 교회
 - 내부는 신랑(身廊, Nave)을 중심으로 양측의 측랑(側廊, Aisle)에 의해 3랑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한옥형 교회에 비해 신랑의 너비, 즉 기둥 간격(span)을 넓게 형성하였다.
 - 지붕은 제단 쪽은 합각면을 지닌 팔작지붕이나 주출입구 쪽은 박공면을 지닌 맞배지붕으로 두 지붕형식이 복합된 형식이다.
 - 주출입구 부분은 후에 벽돌조에 의해 반 칸 규모로 증축되었다.
- 주요특징
 - 진천 성공회 전도구(傳道區, Parish)에 속하는 교회로 한옥형 교회이다.
 - 내부공간에서 제단(祭壇, Apse)을 서양 바실리카식 교회(Basilican Church)처럼 안쪽으로 파서 공간적 집중성을 높게 형성하였다.
 - 내부의 3랑식 공간구성에서 중앙 신랑의 너비, 즉 기둥간격(span)을 다른 한옥형 교회에 비해 넓게 형성하였다.

나. 연혁 및 수리기록

- 연 혁
 - 1910년 초가집에서 교회 창립
 - 1923년 10월 7일 상량
 - 1974년 유치원과 화장실 신축
- 수리기록
 - 1990년경 성당 주출입구 증축

다. 문화재 보존여건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관은 전면 현관부가 증축되고, 지붕이 전통기와에서 시멘트기와로 교체되고, 외벽이 페인트로 도색되는 등 변형이 발생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이다.
 - 내부는 전체적으로 한옥교회 특유의 공간적 특성과 분위기를 유지한 채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 현재까지 교회로 지속적으로 활용, 관리되며 개보수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노후화 상태가 진행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
-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교회 건물과 약 10m 정도 떨어져 새로운 교회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신부님에 따르면 새로운 교회 신축 후 구 교회는 기념관이나 유치원 등의 용도로 활용 예정이다.

- 그 동안 신도들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였지만 신부님이 일단 문화재청의 등록가치 평가를 받은 후에 결정하자고 설득하여 현재까지 보존되었다.
-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그 동안 신자들이 등록을 반대하였으나, 신부가 신도들을 설득 동의를 얻어 등록 문화재 등록을 신청함

라. 등록(지정) 등 가치의견

- 근거 또는 사유(구체적으로 제시)
 - 성공회 음성교회는 지붕, 현관부 등의 개보수로 인해 변형이 발생되었지만, 전체적으로 한옥성당 특유의 목조가구식 구조체는 보존상태가 양호하므로 건축원형의 복원이 가능하다.
 - 성공회 음성교회는 한옥교회 중에서도 내부공간에서 제단(祭壇, Apse)을 서양 바실리카식 교회(Basilican Church)처럼 안쪽으로 파서 공간적 집중성을 높게 형성하고 내부의 3랑식 공간 구성에서 중앙 신랑(身, Nave)의 너비, 즉 기둥간격(span)을 다른 한옥형 교회에 비해서 넓게 형성한 점이 특징이다.
 - 한옥교회는 한국 근대건축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건축형식이고 현존 사례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이다.
 - 이상의 측면을 고려할 때 성공회 음성교회는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 단, 성공회 강화교회(사적 제42호), 강화 온수리 성공회교회(인천 유형문화재 제52호), 청주 성공회교회(충북 유형문화재 제149호), 대한성공회 진천교회(등록문화재 제8호) 등의 성공회 한옥교회가 이미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어 있으므로, 한옥교회 중에서의 독창성, 타 종교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등록가치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존가치 또는 보존 필요성이 있는 부분(특정부분)
 - 한옥교회의 독특한 목조가구식 구조체 및 내부공간 구성
 - 성공회 음성교회 특유의 바실리카식 제단 공간구성
 - 상량문이 기록된 종도리 부분
-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에는 후에 증축된 전면 현관부를 철거하는 등 건축원형의 회복이 필요함
 - 또한 등록시에는 가능한 소규모 예배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념관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교회 측 계획대로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나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현재 건축 중인 새로운 교회건물은 구 교회건물의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규모와 양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변경이 필요함

<○○○ 문화재위원>

가. 건축양식 및 주요특징

- 건축양식
 - 한옥형 성당으로서 성공회성당의 토착화 단계의 양식으로 보여짐
 - 5 × 3간의 장방형 평면을 가지고 있음
 - 마구리 1칸은 제대 및 교구실 등 사제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됨

- 제대를 위하여 마루바닥을 약간 올려 설치한 것이나, 마루의 형식 등이 전통적인 한옥의 모습은 아님
- 주요특징
 - 상량문에는 “主隆生一千九百二十三年十月七日 上樑”으로 기록되어 있음
 - 기록상 1923년 장미리암 교우가 성당건축에 필요한 재목을 봉헌하여 현재의 15칸의 성당을 1923년에 건립하였다고 되어 있음. 부재의 여러 곳에서 사용한 부재를 재활용한 듯한 흔적이 있음
 - 다만, 현 부재의 상황이나 먹을 먹인 흔적 등으로 보아 후대에 수리보수의 가능성이 있음

나. 연혁 및 수리기록

- 연 혁
 - 1923년 10월 7일 상량
 - 1974년 유치원과 화장실 신축
 - 1990년경 성당 주출입구 증축
- 수리기록
 - 구체적 수리기록은 없지만 내부구조 및 「사진으로 본 대한성공회 백년」에 게재된 등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부분 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제단측에 창호가 없으나 현재는 있음
 -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 성당 서측 주출입구는 원래 있었던 부분을 붉은벽돌조로 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음

다. 문화재 보존여건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대한성공회 음성교회 성마틴성당의 주진입은 부지 남동측의 도로 각각부를 통해 진입하며, 신청 건축물 진입은 서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전체적인 배치는 남향으로서 멸실된 ㄱ자형이 약간 남측에 있었고, 一자형의 현 신청 건축물이 뒷면에 있었음.
 - 특히 멸실된 ㄱ자형 건축물 주변으로는 구획된 담장과 일곽대문이 있었던 것으로 현 관계자들이 증언하고 있음
-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입지는 음성군 도심부 중심부에 위치하며, 음성군청과 50m 정도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부지내 기존 한옥을 철거하여 새로운 교회를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는 종탑 및 가건물이 위치하고 있음.
-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동의

라. 등록(지정) 등 가치의견

- 근거 또는 사유(구체적으로 제시)
 - 유사한 개량형 교회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
 - 부지 일곽내에 새로운 현대식 교회가 건축중에 있으며, 이 건축물이 이번에 신청 건축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설계시공되고 있는 것은 신청 건축물의 보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사료됨

- 신청 건축물의 보존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보수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존가치 또는 보존 필요성이 있는 부분(특정부분)
 - 교회건축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부재를 활용하여 건축하였다는 면은 교회 확장과정에서 의미있는 건축적 모습으로 사료됨.

14. 「유네스코회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유네스코회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4.2.)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11.16.)를 실시 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09년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09.12.3.) : **부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불부합(50년 미경과)
- '22년 제2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2.2.22.) : **보류**
 - 근·현대 건축·시설(건축가 작품) 재평가 결과 등 유사 사례 비교 검토 후 재논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유네스코회관
 - 소재지 : 서울 중구 명동길 26
 - 소유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수량 : 1동
 - 건립시기 : 1967년 * 건축물 대장상 준공년도 및 사용승인일 기준
 - 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3층, 지하 1층, 연면적 13,367㎡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08.7.25.)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 → 문화재청)
 - ('09.11.3.)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09.12.3.)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부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불부합(50년 미경과)
 - ('21.4.2.)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 → 문화재청)

- ('21.11.16.)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2.2.22.) 제2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보류**
 - 근·현대 건축·시설(건축가 작품) 재평가 결과 등 유사 사례 비교 검토 후 재논의
- ('22.4.18.) 근현대 건축 시설물(건축가 작품) 가치 재평가 회의 개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유네스코회관은 대한민국의 교육, 과학, 문화활동의 산실로 각종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 근대기 한국사회의 국제 활동의 거점으로서 역사적 가치와 이와 유사한 고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 등록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문화재위원 ○○○('21.11.16.)

- (상징적 가치) 유네스코회관은 독립신생국가였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전개를 위한 매개체이자 기회를 제공한 곳으로, 유네스코 정신의 발현 장이자 국제사회에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알리는 통로로 사용된(중인) 건축물임
- (건축기술적 가치) 유네스코회관은 1950년~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된 현대건축기법을 적용한 초기 건축물이며, 당시 설계안과 도면들이 확보되어 있음
 - 당시로는 매우 희소했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온통기초 포함)를 선택하여 내부공간의 유연성, 즉 업무, 상업, 문화의 기능이 포괄하는 복합건축물로 탄생됨. 또한 미학적인 디테일이 뛰어난 노출콘크리트 면 처리, 알루미늄 커튼월 공법 등은 당시엔 보기 드문 건축기술로 평가됨
- (미래유산적 가치) 유네스코회관은 한국의 경제발전 시기에 탄생된 복합 문화시설로서, 지금까지와 같이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유네스코 정신을 실현하는 구심체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유네스코회관은 인근의 명동성당 가톨릭회관과 함께 1960년대의 건축기법과 건축재료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유네스코회관은 서울 도심문화의 산실인 명동 경관 및 기억의 구심체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유네스코회관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함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 ○○○('21.11.16.)

- 근대기 한국건축은 1960년대 경제성장기에 이르러 다양한 용도를 지닌 대규모 건축물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외국 건축기술의 유입과 함께 기술적 발전을 이룩하는 건축공법이 시도되었다. 따라서 유네스코 회관에는 이와 같은 근대기 한국 업무시설이 갖는 특성들이 현존하고 있음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근·현대기 조성된 대형 건축물의 경우 문화재지정 혹은 등록과정에 있어 기존과 동일한 가치평가 방법과 범위 지정보다는 보다 세분화하여 이를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시기 비교대상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지정 및 등록범위, 보호구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전문위원회 ○○○('21.11.16.)

- 유네스코 회관이 가지는 건축적 특성, 장소로서의 가치, 문화적 맥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유네스코 회관은 고층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 기존 등록문화재와 비교하였을 때 규모나 구법의 측면에서 그 성격이 상이하고, 그 물리적 가치를 판별하는 데 있어 근거가 될 만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인 복원, 보존,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한 적을 것으로 추정됨
- 유네스코 회관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다면, 고층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는 첫 사례가 될 것이고, 이는 추후 고층건축물 또는 현대건축물을 문화재로 지정함에 있어 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등록문화재 지정에 앞서 비슷한 시기, 비슷한 구법이 사용된 다른 건물들에 대한 기초연구(전수조사 및 목록화, 유형분류, 구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등)를 수행하여, 유사 사례들이 가지는 가치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 회관은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거대규모의 건축물로 외관의 복원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건축물의 어떤 부분에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선택적인 유지보수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1>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유네스코회관
2. 용 도 : (현) 사무실, 관람집회시설, 점포, 근생시설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6
4. 소유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5. 시설물 수량 및 면적 : 1동, 연면적 13,367.1㎡
6. 조사자 의견('21.11.16.)

<문화재위원 ○○○>

1) 개요

- 대한민국이 1950년 6월 14일 제5차 유네스코총회(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제5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승인된 것은 독립 신생국가로서 매우 대단한 일이었음.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엔의 주요 전문기구의 회원국이 되어 국제무대에서 활동이 가능해졌음. 연이어 발생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유네스코의 다양한 지원 가운데 대한민국의 재건이 가능할 수 있었음
- 1954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창립총회에서 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논의됨
- 위원회는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1959년 6월 구조사건축기술연구소의 배기형의 커튼월 공법을 도입한 계획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결정함(구조사 사내 경쟁을 통해 윤도근의 안을 바탕으로 출품)
- 1966년 12월 20일에 공사를 완공한 유네스코회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6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이며, 금융, 상업, 업무,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가진 대형건축물로서 대한민국 근대건축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음
- 또한 유네스코회관은 1960년대부터 명동성당과 명동성당 가톨릭회관(전 명동성모병원) 등과 함께 명동의 근대적인 가로경관 형성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음



유네스코회관 현상설계 당선작(투시도)
©목천김정식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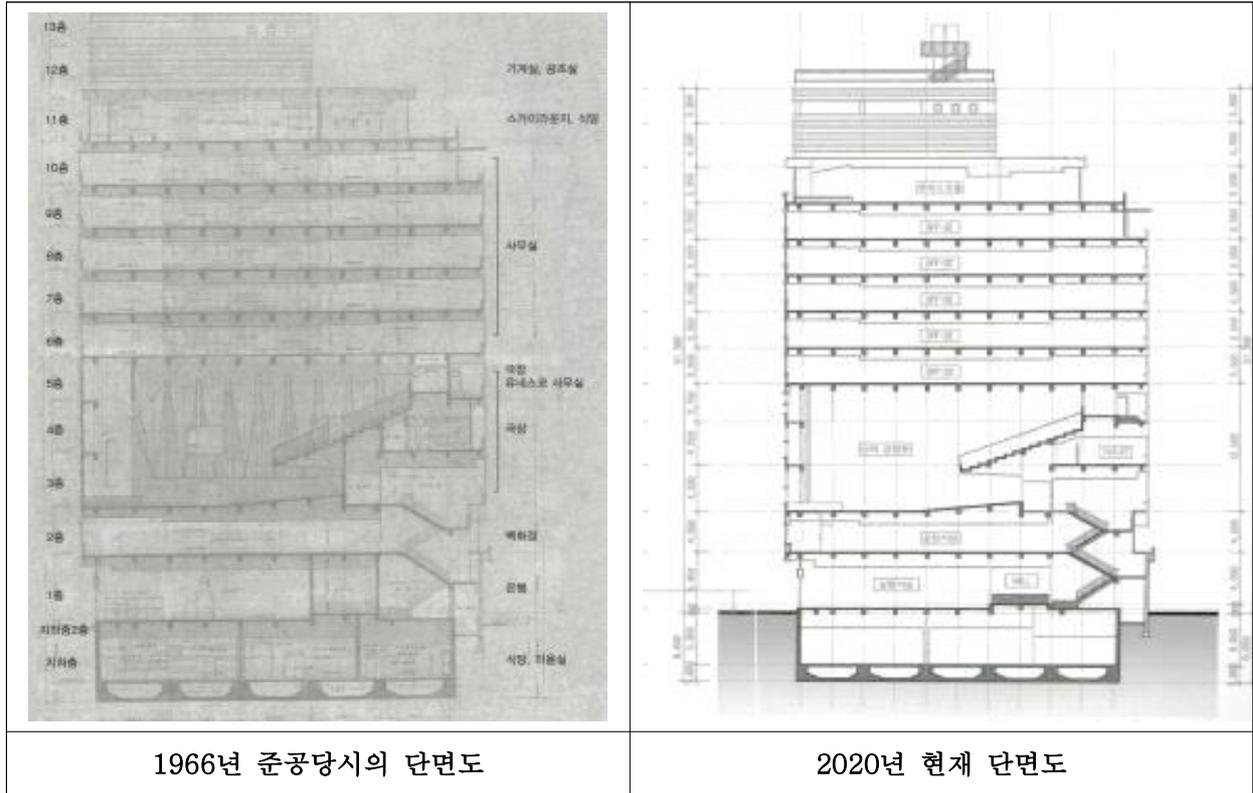


현재의 유네스코회관
©yd-donga

2) 건축 등 양식 및 주요 특징 (각종 기존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 유네스코회관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지하 1층, 지상 10층(11층은 스카이라운지 및 식당) / 연면적 약 9,240㎡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이며, 온통기초 위에 독립기둥을 5,800mmx7,200mm(기본 모듈) 간격으로 배치
 - 중심부에 코어(계단실, 엘리베이터 2대, 화장실)를 설치하여 기본골격 구성
- 외장 : 커튼월 공법



○ 특이점 : 평면 구성

- 1959년 당선작과 1966년 준공당시 상황, 그리고 현재 상황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1층 평면 및 기능 구성의 변화임. 원래 좁은 골목길에 면한 서측 진입을 주출입구로 하고, 옥외공지를 두어 보다 여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1966년 준공과 함께 1층에는 (한일)은행의 외국부와 영업실이 배치되었고, 이에 서측 출입구는 은행 출입구로 사용됨. 따라서 명동길에 접한 북측 출입구가 주출입구로 변경되었고, 서측부의 옥외공지계획 또한 취소됨
- 1966년 준공 당시, 지상 3층부터 5층를 통합한 (국제)회의실이 배치되었고, 현재에도 (난타)공연장으로 사용 중에 있음
- 1959년 현상설계 당선작에 옥상정원이 기획되었던 바, 2000년대 들어 옥상정원을 실현하여 현재에 이룸

<p>1층</p>	<p>2층</p>	<p>3층</p>
<p>4층</p>	<p>5층</p>	<p>6층</p>
<p>10층</p>	<p>11층</p>	<p>지하층</p>

		
<p>1층</p>	<p>2층</p>	<p>3층</p>
		
<p>4층</p>	<p>5층</p>	<p>6층</p>
		
<p>10층</p>	<p>11층</p>	<p>지하층</p>

○ 특이점 : 입면 구성

- 명동의 중심가로에 위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다소 육중한 랜드마크적인 건물 규모와 입면 구성이 채택된 것으로 사료됨
- 외벽에 다양한 재료(화강석, 유리, 알루미늄, 철, 콘크리트 등) 도입을 기본으로, 재료 분리와 요철 등을 통한 수직 분절 기법을 도입하는 등 주변 환경에 비해 특이한 가로 분위기를 형성함
- 특히, 1960년대 당시 매우 생소했던 알루미늄 커튼월 공법을 북측 전면에 적용하고, 남대문로에서 명동길로 연결되는 조망성을 고려하여 북측에서 서측으로 만곡되는 입면 구성을 도입함. 서측에는 노출콘크리트와 유리블록을 적용시켜 투명성과 불투명성의 대조미와 점, 선, 면 패턴의 조화미가 뛰어난 입면 구성을 취함



북.서측 입면의 구성



입면 구성 및 실내에 도입된 건축 요소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77년 유네스코 11층 회의실 장치공사((주)공간연구소)를 시작으로 1983년 4층~11층 방재시설 개수공사(㈜구조사 건축기술연구소), 1992년 3층~5층 회의실 용도변경(종합건축사사무소 다에건축), 1990년대 회관 외장마감 변경 대수선공사 (㈜구조사 건축기술연구소), 1999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명동 이전공사(㈜풍진아이디), 2000년 2층 청소년문화교류센터(MIZY 센터) 조성(㈜건축사사무소 堂建築), 2001년 11층 재건축 신축공사(종합건축사사무소 築), 2001년 유네스코회관 정밀 안전진단, 2008년 유네스코회관 대수선 공사(종합건축사사무소 都圖) 외에 두 차례의 보일러 교체 및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부분 수리공사가 시행됨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이전과 (국제)회의장의 기능 변화 등에 따라 몇 차례 층별 및 용도 변경(부분) 등으로 인한 변화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1966년 준공 당시의 체계가 보존되어 온 것으로 평가됨. 다만 1994년에 서측면 외부마감이 수성페인트에서 스톤 코트로 변경된 이력이 있으며, 북측면에 표현되었던 ‘ㄷ’자 캔틸레버 프레임(cast stone)의 일부가 2010년대에 훼손된 것이 원형과의 차이로 파악됨
- 2000년대 들어 시행된 옥상생태공원 조성은 유네스코회관의 원래 설계 개념을 구현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2002년 옥상부의 재축 공사가 시행됨. 현재 옥상부의 방수와 관련된 누수 현상이 부분적으로 확인됨



옥상생태공원 전경 .서측 입면의 구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과 주변 환경

- 1966년 준공 당시의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보존되어 있고, 수리 이력에 대한 기록도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있어 추후 보존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파악됨



1966년 준공 당시 서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네스코회관은 현재 명동의 보행환경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명동길을 중심으로 명동예술극장과 대각선으로 마주하고 있으며, 명동성당과 가톨릭회관(구 명동성모병원) 등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집결지에 자리하고 있음

- 또한 1990년대 이전에 조성된 미래유산적인 가치를 가진 건축물들이 20여 곳에 현존하고 있어, 지구차원에서의 보존 환경의 여건이 비교적 양호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문화재적 관점에서의 유네스코회관의 활용은 현재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파악됨
 - 1) 유네스코관련 문화 활동의 중심체로서의 활용
 - 현재 유네스코회관 내의 국제적인 문화관련 기관(시설)은 다음과 같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주한헝가리문화원, 한예중명동캠퍼스, 난타공연장 등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67년 2월에 입주하여 1974년부터 건물을 관리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5층, 6층, 8층, 9층, 11층의 일부와 10, 11층의 전체 공간을 사용 중에 있음
 - 7층과 8층에는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유네스코협회연맹, 주한헝가리문화원, 한예중 명동캠퍼스 등이 입주하여 있으며, 위원회는 국제문화활동의 주체들의 입주를 보다 늘려갈 계획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문화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측됨
 - 2) 다양한 시민참여의 공간 활용
 - 유네스코회관에서 시민들은 옥상정원과 11층 각종 부대시설(유네스코홀, 유네스코라운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외 추후 근현대 지역사와 관련된 명동의 핵심체로서의 활용적 잠재력도 큰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1960년대 준공된 커튼월 공법이 적용된 건물로는 명동성당 가톨릭회관(1961년),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별관(1962년) 등이 있으며, 1970년대에는 삼일빌딩이 있음
- 이러한 건축물들과 함께, 유네스코회관은 1960년대 명동의 경관 및 우리나라 현대 건축의 새로운 길을 연 건축물로 판단됨

7) 등록 가치에 대한 의견

- 상징적 가치
 - 유네스코회관은 독립신생국가였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전개를 위한 매개체이자 기회를 제공한 곳으로, 유네스코 정신의 발현 장이자 국제사회에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알리는 통로로 사용된(중인) 건축물임
- 건축기술적 가치
 - 유네스코회관은 1950년~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된 현대건축기법을 적용한 초기 건축물이며, 당시 설계안과 도면들이 확보되어 있음
 - 당시로는 매우 희소했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온통기초 포함)를 선택하여 내부공간의 유연성, 즉 업무, 상업, 문화의 기능이 포괄하는 복합건축물로 탄생됨. 또한 미학적인 디테일이 뛰어난 노출콘크리트 면 처리, 알루미늄 커튼월 공법 등은 당시엔 보기 드문 건축기술로 평가됨
- 미래유산적 가치
 - 유네스코회관은 한국의 경제발전 시기에 탄생된 복합문화시설로서, 지금까지와 같이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유네스코 정신을 실현하는 구심체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유네스코회관은 인근의 명동성당 가톨릭회관과 함께 1960년대의 건축기법과 건축재료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유네스코회관은 서울 도심문화의 산실인 명동 경관 및 기억의 구심체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유네스코회관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함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 ○○○>

1) 개요

- 1959년 6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현상설계공모를 통하여 배기형(1917-1979)의 계획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함.
- 1959년 4월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약 9,240㎡ 규모로 공사에 착공하여 1962년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1964년까지 중단됨.
- 1965년 부동산관리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용자받아(한일은행 건물관리 겸 운영권) 설계변경을 거쳐 1966년 4월 공사를 재개하여 12월 20일 준공함.
- 준공 당시 지하1층 지상 13층 규모로 지하에는 식당과 기계실, 지상 1층과 2층은 은행과 점포, 3층과 4층은 극장과 사무실, 5층은 사무실, 6층은 사무실과 호텔, 7층부터 10층까지 호텔, 11층은 연회장, 12층은 기계실, 13층은 물 탱크실을 수용함.

2)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현황

구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1345.8 m ²	
건축규모	지하 1층/지상 1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1,152.23m ²	
연면적	13,367.1m ²	

3) 건축물 연혁표

연도	내용
1959. 4. 11.	유네스코회관 기공식 개최
1959. 6. 3.7.	유네스코회관 설계도 현상모집(최종 당선작: 구조사/배기형)
1962. 7. 24.	상량식 개최
1967. 2. 17.	준공기념식 개최
1967. 7. 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회관 소유권 취득(등기)
1974. 1.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회관 관리 시작
1978. 12. 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회관 토지 매입 및 소유권 취득
1997. 12. 27.	유네스코회관 11층 화재 및 전소
2008. 5.	중구청에 유네스코회관 대수선(지하1층~지상1층 주계단 위치 변경) 공사 신고
2008. 7. 23.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유네스코회관의 등록문화재 등록심의 -심의결과: 일부 개축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외부 모두 건축 당시의 원형이 잘 남아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 있음.
2008. 7. 25.	서울특별시, 문화재청에 유네스코회관의 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요청
2009. 12. 3.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심의결과: 50년 미경과로 문화재 등록부결
2014. 12. 31.	서울특별시, 유네스코회관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
2012. 3. 25.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 등록 심의

4)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내용 참고)

① 계획 및 설계자

- 본 건물의 설계는 1959년 6월 실시된 현상설계공모에서 건축기술연구소 배기형 (1917-1979) 계획안이 당선되었으며. 이후 기본설계에 건축가 윤도근이 참여하였으며, 실시설계에는 장종률, 김현석, 김창서, 구조설계를 함성권이 진행하는 등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에 관여한 기술인의 확인이 가능함.

② 구조 및 내부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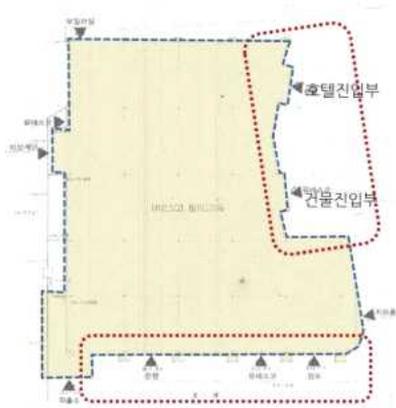
- 근대기 전형적인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 구조**: 온통기초 위에 독립기둥 형식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의 근대기 업무시설 건축물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음. (기본 모듈-5,800mmx7,200mm 1,000mm~1,700mm, 캔틸레버 구조를 통한 공간 확보 등.: 자유로운 입면구성)
- **실별 기능에 따른 외부 진입동선 분리**: 지하식당 외부계단을 통해 외부연결, 중앙의 주출입구, 극장 및 백화점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은행으로 진입되는 출입구로 분리.
- **대회의실의 공간 구성**: 지상 3, 4, 5층을 대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 극장식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3층과 중 2층에 객석을 배치하였으며, 주변으로 회의실과 관련된 부대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효율적인 임대 사무공간과 휴게공간의 구성**: 지상 6층-9층 임대 사무공간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7층을 사용하였으며, 10층 사무실과 라운지, 11층 스카이라운지, 연회실, 식당이 위치하여 옥상 외부공간과 연결함.

③ 내·외부 마감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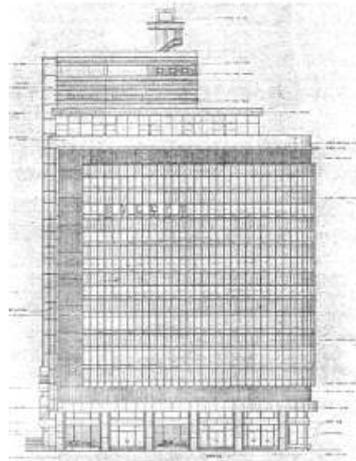
- 각 실별 바닥의 아스타일, 화강석 및 현장 테라조(인조석 물갈기) 마감, 실 기능에 따른 음향판, 대리석, 무늬 코트, 천정은 텍스마감재와 무늬코트 내부마감 등 근대기 다양한 건축마감 재료의 시공 및 사용상태 확인이 가능함.
- 외부 벽체는 플라스터 위 페인트이며, 북측면 알루미늄 커튼월의 멀리언(mulion) 부재 및 이중유리(Pair Glass)의 원형 확인이 가능함.

④ 형태 및 외부입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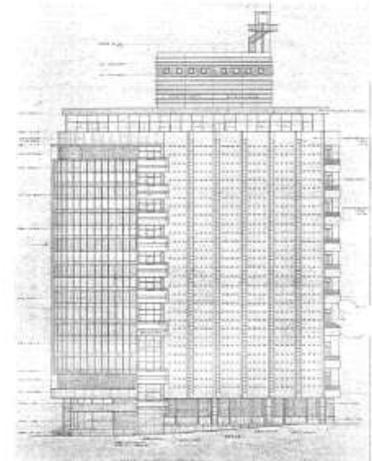
- 유네스코 회관의 육중한 볼륨을 화강석, 유리, 알루미늄, 철, 콘크리트 등 다양한 외벽 재료사용과 재료분리 및 요철을 통해 수직적 형태를 구성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근대기 디자인 수법을 확인 할 수 있음. 또한 북측 전면에 사용한 알루미늄 커튼월 공법에는 굵은 멀리언을 사용하는 등 첨단 제작기법이 적용되어 근대기 건축기술을 확인할 수 있음.



(1) 1962~1968년 설계 초안 배치도
1962년 설계초기 진출입 계획



1966년 준공당시 북측입면



1966년 준공당시 서측입면

5)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붙임자료 3. 대상 문화재의 변형 및 수리 이력 참고)

- (유네스코 회관의 형태 및 외부입면) 건축물의 형태는 1966년 준공 당시와 같이 보존되고 있으나, 서측면 외부마감은 1994년 스톤 코트로 변경되었으며, 2010년대에는 일부 캔틸레버 프레임(cast stone)이 훼손되었음.
- (유네스코 회관의 내부와 공간) 60여년의 사용기간 동안 내부공간에는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1967년 2월에 입주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한 1974년부터는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음.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5층, 6층, 8층, 9층, 11층의 일부와 10, 11층의 전체 공간을 사용하고 있음.
- 주요 수리공사 이력
 - 1977년 11층 회의실 공사
 - 1983년 4층~11층 방재시설 개수공사
 - 1994년 유네스코회관 서측 외장마감 변경 대수선 공사
 - 1999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8층, 10층 이전 공사
 - 2000년 2층 청소년문화교류센터(MIZY센터) 신축공사
 - 2001년 11층 재건축 공사
 - 2001년 회관 정밀 안전진단
 - 2008년 지하1층~지상1층 계단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
 - 2012~2013년 보일러 교체공사
 - 2017년 9, 10층 사무공간 재구획, 후문 진입로 보수공사
 - 2017년 유네스코회관 자산관리실사
 - 2018년 냉동기 교체공사, 회관 전기설비 보수공사, 난방배관 교체공사, 내부 공용공간 도장 등 정비공사, 간판 교체공사

6)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① 문화재 활용계획

○ 공간 관리와 활용계획

- (유네스코회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회복) 상업공간으로 임대하는 공간을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비율로 조정하고 유네스코 활동과 연관되는 단체나 활동을 담는 공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현재 유네스코협회연맹, 2019년 주한헝가리문화원,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입주)
- (건물 구조 안전 및 환경 성능 개선) 구조 안전 진단 후 구조 성능을 향상하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여 전체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중임.
- (건물 외부공간 및 외관 정비) 명동파출소와 인접한 회관 동쪽 공간을 조정 예정으로 향후 벽면 및 실외기 등을 정비하고, 벽면을 활용하여 유네스코의 활동을 홍보하고 공공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비예정임.

○ 명동 장소 만들기 계획

- 명동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명동 지역 여러 관리 주체들 간의 포럼(가칭 명동포럼)을 운영하는 등 논의의 장 마련 예정임.

② 유지 관리 및 활용계획의 실현가능성

- 임시로 보수하였던 훼손된 벽면을 원 벽면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면적 보수가 필요하며, 구조정밀진단 시 비구조물 진단 병행하여 커튼월의 부재를 점검하고 필요시 건립 당시의 시스템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보수·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음.

-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전기실 및 기관실 개선, 건물 외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중 창호 설치,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기 사용하던 설비기기(원형)를 보존하며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준공 당시의 회관 청사진 도면 및 시방서 등을 기록물로 등록하는 건축관련 서류를 영구 보존하고 연구 및 전시에 활용하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건물 보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7)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문화재보존 여건) 1967년 2월에 입주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1974년부터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하여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문화재주변 환경) 명동성당(1898), 명동예술극장(1936), 메트로호텔(1960), 카톨릭회관(1962), 쌍용빌딩(1962) 등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근대기 도심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변 환경은 양호함.

8)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①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 (등록문화재 934건 중 업무시설 등록문화재 81건)

- 기 등록된 등록문화재 중 업무시설은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을 비롯하여 등록문화재 934건 중 81건이며, 이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건립된 문화재임. 해방이후 건립된 업무시설로는 경기도청사 구관, 구) 수원시청사를 비롯한 16건으로 추정되나 은행, 공공기관의 업무시설을 제외하고 해방이후 민간에 의해 건립된 업무시설로 등록된 사례는 없음.

②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구)수원시청사: 한국전쟁 이후 건립된 관공서 업무시설로 서양의 기능주의 건축에 영향을 받아 정면을 강조한 입면구성과 장식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음.(2층, 연면적 662㎡규모)
- 경기도청사 구관: 1963년 경기도청 수원이전 결정으로 설계 및 시공을 거쳐 1967년 6월에 준공됨. 동 시기 전국적으로 관공서 청사건축 붐이 있었으며 경기도청사 구관은 그 전형(典型)적인 예로 설계자는 김희춘, 나상진임.
 - (1960년대 모더니즘 디자인 특성) 옥상의 외벽 및 파라펫 처리 등 브루탈리즘 건축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수평을 강조한 전형적인 업무시설의 입면구성을 갖고 있음.
 - ‘ㄱ’자형 건물 배치로 인한 중정, 2층 각 사무실의 베란다 겸 외부복도 설치기법은 근대기 업무시설 디자인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노출 콘크리트와 테라코타로 외벽을 장식한 디테일은 당시 건축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대표적인 외부재료임.

9)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유산의 완전성(Integrity, 유산의 가치 입증 여부) 확보

- (근대기 한국사회의 국제적 활동과 역사적 가치) 유네스코 정신 구현의 증거로 유네스코회관은 건립 이후 대한민국 국제 활동의 발원지로 유관단체 및 활동을 적극 지원 수용해 왔으며, 근대기 한국의 교육 및 과학 문화 활동의 산실로 각종 국제회의 및 관련 세미나 등 학술활동 및 문화공연 등 문화적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음.

- (물리적 재질이 갖는 특징의 상태): 콘크리트 구조체의 안전성과 외부 Curtain wall, 건물형태 및 조형 요소는 본 유산이 갖는 물질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음.
- (문화경관, 근대도시의 관계성과 기능) 명동성당(1898), 명동예술극장(1936), 메트로호텔(1960), 카톨릭회관(1962), 쌍용빌딩(1962) 등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근대적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주변 개발 또는 방치로 인한 영향)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문화적 명동지역 살리기를 통해 명동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하기 위한 관리 주체들 간의 포럼(가칭 명동포럼) 운영계획을 갖고 있음.
- (유산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을 증명하는 적정 규모) 본 건물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관련 도면 및 시방서와 공사과정에 대한 각종 기록 등이 온전히 남아있어 본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유산임.

○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및 기법 등 가치보유 여부) 유지

- (형태와 디자인(Form and Design)) 유네스코 회관에는 20세기 중반 한국 근대건축의 성장기 나타나는 기술적, 조형적 특성이 잘 남아 있으며, 외부형태 디자인 기법과 회관 전면면에 적용된 외부 Curtain wall 등의 조형적 기술적 가치가 높음.
- (재료와 물질(Materials and Substance)) 1960년대 철근콘크리트 구조(라멘조)기술을 사용한 고층 업무시설로 당시 한국건축의 시공기술과 다양하게 사용된 건축재료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음.
- (용도와 기능(Use and Function)) 주 출입구 및 로비 공간, 3-5층 문화시설의 공간과 구조 및 나선계단, 준공시 설치되었던 기계실의 보일러 등은 동 시기 건축의 기술적 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용도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증거임.



강당구조



강당 돌음계단



옥상정원



강당내부



기계실 보일러

※ 종합의견

- ① 근대기 한국건축은 1960년대 경제성장기에 이르러 다양한 용도를 지닌 대규모 건축물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외국 건축기술의 유입과 함께 기술적 발전을 이룩하는 건축공법이 시도되었다. 따라서 유네스코 회관에는 이와 같은 근대기 한국 업무시설이 갖는 특성들이 현존하고 있음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② 근, 현대기 조성된 대형 건축물의 경우 문화재지정 혹은 등록과정에 있어 기존과 동일한 가치평가 방법과 범위 지정보다는 보다 세분화하여 이를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 시기 비교대상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지정 및 등록범위, 보호구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준공당시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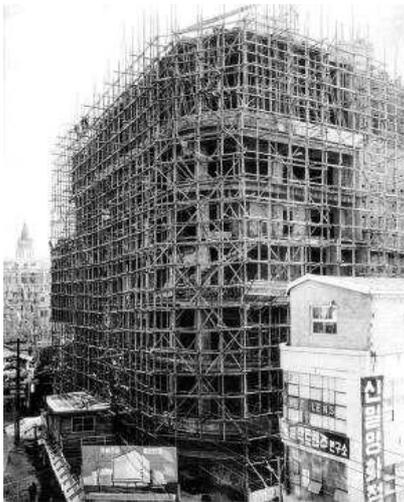
건축전경



커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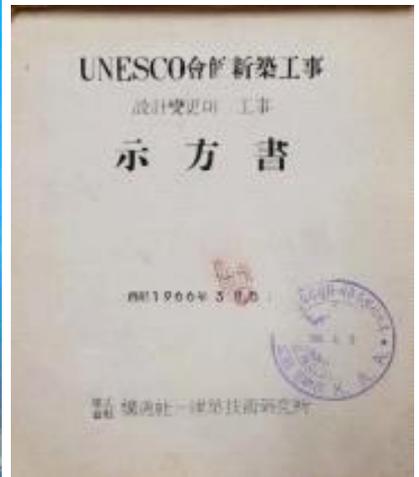
건축구조



공사중 기록



건축허가서



건축시방서

※ 보존가치와 부분에 대한 의견

- ① 해방이후 한국 근대건축의 기술적 혁신을 바탕으로 1959년 설계되고 1966년 준공된 건축물로 업무, 상업, 문화 등 복합기능이 담긴 유네스코 회관의 내부공간 구성은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술을 통한 내부공간의 유연성을 확보한 결과로 물질적 기술적 특성을 보여주는 공간과 장소임. (이를 탁월하게 입증하고 있는 공간, 장소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존부분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 ② 유네스코 회관에 사용된 노출콘크리트의 면처리, 알루미늄 커튼월 공법 등은 당시 보기 드물게 적용되었던 근대기 건축기술로 근대기 한국건축 기술과 업무시설이 갖는 조형적 특성을 갖는 외부 입면부.
- ③ 유네스코 회관은 가톨릭회관의 설계자인 김정수와 함께 196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의 작품인 동시에, 근대기 한국건축의 설계기법 및 구법, 재료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인 관련도면 및 시방서, 공사 관련자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① 등록대상과 범위 문제

- 유네스코 회관은 지하 1층 지상 13층, 건축면적 1,152.23㎡/ 연면적 13,367.1㎡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근대기 업무시설로 기 등록된 등록문화재와 비교할 때 평균적 규모를 초월하는 대형유산이다. 또한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을 증명하고 향후 문화재로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범위와 적정 규모를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 최근 근현대 건축·시설(건축가 작품) 재평가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이들 유산 중에는 유네스코 회관과 유사한 대형 업무시설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향후 이들 근대기 대형 업무시설 유산의 등록 및 문화재로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임.
- 그러므로 유네스코회관의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특성을 참고하고 이를 입증하고 있는 공간, 장소에 대한 조사 후 해당 범위를 설정하고 유산 내 별도의 보존구역(장소, 공간, 구조, 디자인 등)을 지정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유네스코 회관은 1959년 현상모집 당선작으로 설계되어 1966년 완공된 건축물로 당시의 실험적 시도와 조형성을 간직하고 있음. 건립 이후 국제회의 및 세미나, 교육, 대중문화 활동을 수용하는 장소로 기능하였음
- 2010년 유네스코 회관 앞 도로의 명칭이 ‘유네스코길’로 변경되었으며, 2014년에는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것에서 본 건물의 랜드마크로서의 지위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사회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음
- 1991년 유엔에 가입하기 전까지 유네스코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대표적인 국제기구의 위상을 가짐. 유네스코가 다루고 있는 과학, 교육, 문화 분야의 사업은 대중적인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한국전쟁 후 재건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원조를 받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유네스코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호의적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10층 이상으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고층 건축물이었음. 준공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알루미늄 커튼월’ 건물로 평가받았음. 국내 건축가가 설계하고, 국내 자본으로 지어진 고층 건축물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 철근 콘크리트조에 커튼월이라는 현대건축물의 가장 전형적인 구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으며, 업무시설 뿐 아니라, 대형 회의장, 로비 등을 갖추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회관의 출입구와 로비가 있었던 1층 공간이 은행과 상업공간으로 임대되면서 변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유네스코 회관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복합상업시설의 인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 사무실, 상업시설, 공연장 임대로 인한 내부 공간 변형 뿐 아니라 증개축 등 노후화에 따라 몇 차례 대수선이 이루어졌음.

- 1997년 12월 11층 화재로 기둥과 지붕이 손상되기도 함.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마감재 및 세부 구조 변형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 내부공간의 변형에 비해 건물 외부는 잘 유지되고 있어 유네스코 회관의 랜드마크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 등글러진 형태와 알루미늄 커튼월, 서측면의 분할된 콘크리트 매스 등 원래의 조형과 마감재의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업무, 교육, 공연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의해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건축물의 설계도면, 청사진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점은 향후 건축물의 보존관리 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며, 자료 자체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현대건축물로서 다양한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리노베이션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변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임대시설 중 상업시설의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입주를 늘리는 것과 주변의 역사 자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운영을 두 가지 활용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할 있음. 저층부 상업시설 입주 시에도 전체 건축물의 계획도와 상충되지 않는 입면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원 계획안을 참고하여 입구나 로비 부분의 계획의도를 되살리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시민학교’ 등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동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함. 국립극장, 명동성당 등 인근의 근대 건축물 및 명동 거리의 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활용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아직까지 이 시기 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없으나, 서울미래자산으로 선정된 사례들이 있음. 해방이후 건립된 ‘1세대’ 고층 건축물들과 함께 검토되어야 함. 1960년대 중반이후 업무시설, 은행, 호텔 등이 고층으로 건설되기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H형빔(wide flange)을 사용한 철골구조가 도입되기 이전의 건축물로, 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사용되었음
- 유네스코 회관이 위치한 명동 일대는 서울의 중심가로서 60년대 중반 고층의 은행본점 사옥이 집중적으로 들어섰던 장소임. 개관 당시 1층은 국제은행으로 계획되었으며, 대규모 회의장, 숙박시설(호텔)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복합시설’로 보아야하고, 주로 업무시설로 사용되었던 비슷한 시기 다른 고층건물과 차별성을 가짐
- 1960년대 은행본점 빌딩으로는 상업은행 본점(1965 준공, 지하 2층, 지상 12층), 조흥은행 본점(1966 준공, 지하 1층, 지상 15층)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공법이나 재료 면에서는 등록문화재인 한국전력 본관(구 경성전기주식회사, 1928) 뒤편의 별관(1962~1964, 정인국 설계, 9층)이 알루미늄 새시 커튼월과 유리블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회관과 비교할만한 사례임.
- 동일시기 철근 콘크리트 조, 커튼월 공법 등이 처음 도입되었고, 당시 공법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가치 검토가 필요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유네스코 회관이 가지는 건축적 특성, 장소로서의 가치, 문화적 맥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유네스코 회관은 고층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 기존 등록문화재와 비교하였을 때 규모나 구법의 측면에서 그 성격이 상이하고, 그 물리적 가치를 판별하는데 있어 근거가 될 만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구체적인 복원, 보존,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한 적을 것으로 추정됨
- 유네스코 회관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다면, 고층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는 첫 사례가 될 것이고, 이는 추후 고층건축물 또는 현대건축물을 문화재로 지정함에 있어 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등록문화재 지정에 앞서 비슷한 시기, 비슷한 구법이 사용된 다른 건물들에 대한 기초연구(전수조사 및 목록화, 유형분류, 구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등)를 수행하여, 유사 사례들이 가지는 가치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 회관은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거대규모의 건축물로 외관의 복원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건축물의 어떤 부분에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선택적인 유지보수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 커튼월 공법,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사용된 건축물의 보존원칙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자료로 미국 내무성(The Secretary of the Interior)에서 배포하고 있는 기준(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historic properties)이 있음. 이 문서는 역사적 건축물을 다루는 네 가지 태도(preservation, restoration, rehabilitation, reconstruction)를 제시하고, 각각의 태도에 상응하는 유지보수기준을 요소별(조적조, 목조, 금속, 지붕, 창문, 현관, 커튼월, 구조시스템, 설비시스템, 실내마감, 대지)로 제시하고 있음. 추천하는 방식(recommended)과 추천하지 않는 방식(not recommended)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만함. 이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본 의견서에 첨부하였음
- 유네스코 회관은 현대 건축물의 ‘빌딩시스템’이 도입되는 시기에 준공된 건축물로, 기계설비의 측면에서도 시대성을 간직하고 있음. 특히 기계실에는 준공당시 설치된 비상발전기가 남아 있는데, 해당 기계, 설비가 노후화 되었을 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방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붙임2>

유네스코 회관 조사보고서('09.11.3)

1. 명 칭 : 유네스코 회관

2. 용 도 : 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 등

3.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50-14

4. 소유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현소유자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50-14

5. 건축물 개요

- 설계자 : 배기형
- 시공자 : 풍전산업(豊田産業)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 준공일 : 1967년(1959착공)
- 대지면적 : 1,345.8㎡
- 건축면적 : 1,152.23㎡
- 연면적 : 13,367.1㎡
- 층수, 높이 : 지하1층, 지상13층(물탱크실 포함/높이 51.38m)

6. 조사자 의견

가. 건축양식 및 주요특징

- 건축양식 : 1960년대에 건립한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물로서 메트로 호텔, 구 명동성모병원 등과 함께 커튼월공법으로 지은 중요한 건축물임
- 주요특징
 - 중앙코어 형식, 중앙 공급 냉난방설비 등은 당초 호텔로 계획하였다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업무시설로 바뀐 흔적 등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변화가 잘 남아 있음
 - 옥상의 물탱크실, 기계실 등 부속시설도 건립당시 원형에 가깝게 잘 간직하고 있음

나. 연혁 및 수리기록

- 연혁
 - 1959.4 : 유네스코회관 기공식
 - 1962.7 : 유네스코 회관 상량식 거행
 - 1967.2 : 유네스코 회관 준공
 - 1974년 : 한일은행으로부터 유네스코 회관 관리권 인수
 - 2003년 : 회관 옥상에 생태공원 조성 “작은누리”
- 수리기록
 - 10여년 전 외벽에 샌드스톤 뿔칠
 - 1997.12월 화재로 인해 11층 전소되어 복구
 - 내부는 입주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리

7.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오래된 창호로 인한 열손실 때문에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함.

8. 조사자 의견

<문화재위원 ○○○>

가. 문화재 보존여건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벽의 콘크리트 마감부분에 일부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정도의 노화 현상은 보이고 있으나 구조적 및 마감상태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보임
-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현 상태대로 보존하면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임
- 보존가치 또는 보존 필요성이 있는 부분(특정부분)
 - 전체 외관형태 유지와 외벽(알루미늄 커튼월 부분 및 측면 콘크리트조 벽면)
 -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설비와 창호

나. 등록(지정) 등 가치 의견

- 구 명동성모병원 이후 본격적으로 알루미늄 커튼월로 시공된 최초의 건물로 기술사적인 의미가 높으며, 명동지역을 상징하는 몇 안 되는 근현대 역사적 건축물로서 상징성과 근대주의(모더니즘)건축으로서의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 다만 준공 후 43년밖에 지나지 않아 등록기준 연한인 50년에 미달하고 당장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없으므로 등록시기에 대한 형평성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문화재전문위원 ○○○>

가. 문화재 보존여건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벽의 콘크리트 마감부분에 일부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정도의 노화 현상은 보이고 있으나 구조적 및 마감상태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보임
-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현 상태대로 보존하면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임

나. 등록(지정) 등 가치 의견

- 시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커튼월의 기술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함.
- 커튼월이 지니는 기술사적 의의, 건축주의 외장 리모델링 계획 등을 고려하면 문화재 등록을 통하여 보존함이 타당하지만, 상기 건축물이 지니는 의의에 못지 않게 유사한 시기에 건축된 의미 있는 건축물을 문화재로 등록하여야 하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선의 대안은 건축주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사회적 소명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국의 Lever House(New York, 별첨자료 참고)처럼 커튼월의 의장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디테일에 대한 개선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보존가치 또는 보존 필요성이 있는 부분
 - 외부 의장적 특성(커튼 월, 서향차폐 디자인, 옥상부 디자인 등)을 유지 보존할 것
 - 건축주가 추진 중인 리모델링 과정에서, 커튼월, 서향 입면, 옥상부 외부 디자인 등 의장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의 기술적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커튼월 전경

옥상부 근대적 디자인과 노후된 외관

○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미국의 Lever House(New York)는 유네스코 회관과 같이 미국 최초의 커튼월 (1948, Pietro Belluschi's Equitable Building in Portland, Oregon) 건축물은 아니지만, New York이라는 지역이 지니는 장소성이나 상징성 그리고 고층건물 계획사에서 공개공지 제공 등의 의미를 매우 높게 평가하여 1983년 New York City의 Landmark Preservation Commission(LPC)에 의해 뉴욕시 랜드마크로 지정되고 이후 수복적 재생과정에서 커튼월의 원형적 모습을 보전하면서 단열 성능을 개선한 사례임.

<문화재전문위원 ○○○>

가. 문화재 보존여건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벽의 콘크리트 마감부분에 일부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정도의 노화 현상은 보이고 있으나 구조적 및 마감상태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보임

○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현 상태대로 보존하면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임

나. 등록(지정) 등 가치 의견

- 유네스코 회관은 건축가 배기형에 의한 우리나라 초기의 커튼월 공법으로 지어진 한국현대건축사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커튼월로 이루어진 건물은 김정수의 명동 성모병원이지만 이는 수공업으로 알미늄을 접어서 시공한 것이고 유네스코회관에서 비로서 제품이 생산되어 커튼월 공법이 본격화 되었다고 하겠다.

- 이와 함께 지어진 지 4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더라도 명동에서 유네스코 활동의 본부로서 수려한 외관으로 간직하고 있다. 즉 커튼월 공법으로 지어진 초기 건축으로서 뿐만 아니라 창호 및 커튼 월의 세부 디자인이 훌륭해 주변의 다른 건물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준공한지 43년이 되어 등록문화재의 등록요건이 50년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시급하게 등록시키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 보존가치 또는 보존 필요성이 있는 부분

- 11월 3일 조사시 유네스코 회관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특별히 창호 커튼월을 수리하거나 바꿀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등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 다만 지붕의 파라펫 부분의 일부 탈락 현상이 있어 이에 대한 보호 및 보수가 필요하다.

15. 「해관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해관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1년도 「근현대문화유산 외교·통상 분야 목록화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관지」의 국가등록문화재 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2.3.8. /3.21.)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 명칭(안)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해관지	1건 22점	인천해관 14점	33.5×21.8cm 등	1884~1898년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부산해관 4점	33.1×21.5cm 등	1893~1897년		
		원산해관 4점	33.2×20.9cm 등	1887~1893년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1.3.~11월.) : 근현대문화유산 외교·통상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해관지』 A등급 분류
- * 근현대문화유산 위생·보건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온역장정을 통한 콜레라 유입차단에 대한 검역내용이 수록된 제22권을 “A”등급으로 분류
- ('22.3.8/3.21.)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본 건은 1880년대~1890년대 조선 각 개항장의 관세 업무 기관인 인천·부산·원산해관에서 중앙의 총해관에 보고된 문서로, 관세, 해관 행정, 항만 축조, 조계지 측량, 검역 체계, 통상·건축·토목·의료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탁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료로 판단됨.

- 다만, 작성기관별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제2조제2항제2호 가항에 의거 “해관 보고문서(인천, 부산, 원산)”로 명칭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문화재위원 ○○○('22.3.8.)

- 검토 건은 중앙의 총해관과 각 개항장 세무사 간의 왕복 문서군으로서 19세기 말 조선의 관세행정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며 거의 유일한 자료임.
- 당시 해관 행정 및 통상 관련 상황을 비롯하여 개항장 현황, 항구 건설 및 조계지 측량 및 필지 분할, 해관청사 및 해관 관련 직원 주택 등 건축 현황, 개항장 내 외국인 인구 분포 및 구체적인 인원에 대한 정보, 수출입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리스트, 검역 및 콜레라 등 감염병에 대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어 통상·경제 뿐 아니라 도시·토목·건축 분야와 사회·생활·의료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어, 등록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 ○○ ○○○('22.3.21.)

- 검토 건은 19세기 말 조선의 관세행정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개항장의 외국인 세무사와 중앙 총해관 간의 왕복문서군으로 현재 전래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라는 의미를 지니며, 첨부문서의 형태로 세무사와 감리 간의 왕복문서까지 수록되어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높음. 거기에 내용도 관세행정 관련 사항이 대중을 이루는 가운데 콜레라 등 검역 문제나 건축 등과 같은 다방면의 정보 또한 풍성하게 담고 있어서 이 시기 해관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역사상을 생생히 보여주는 자료임.
- 본 건은 문화재 등록의 가치인 자료의 희소성, 대표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자료의 보존 상황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시급하게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문화재전문위원 ○○○('22.3.8.)

- 검토 건은 1894년 갑오개혁 이전 한국에서 근대적 제도가 수용되고 정착되는 과정의 여러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 사료임. 한국에 근대 문명이 개항장을 통해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본 건은 그 수용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 사료임.

- 해외에서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있을 때 해관이 검역을 담당함에 따라 본 건을 통해 한국에서 검역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콜레라 방역을 위한 온역장정의 내용이 포함되는 등 의료사의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사료로, 등록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함.

○ 문화재전문위원 ○○○('22.3.8.)

- 검토 건은 개항 이후에 설립된 대표적인 근대 기관의 하나인 해관(海關)의 구체적인 업무, 외교·통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공문서임.
- 본 건이 지닌 근대 자료의 중요성에 비하여 자료의 보존 및 관리는 미급한 상황임. 해당 자료는 제작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문서 작성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 문서 작성과 수신에 상황이 명확하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문화재 등록의 가치인 자료의 희소성, 대표성, 소장 경위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시급하게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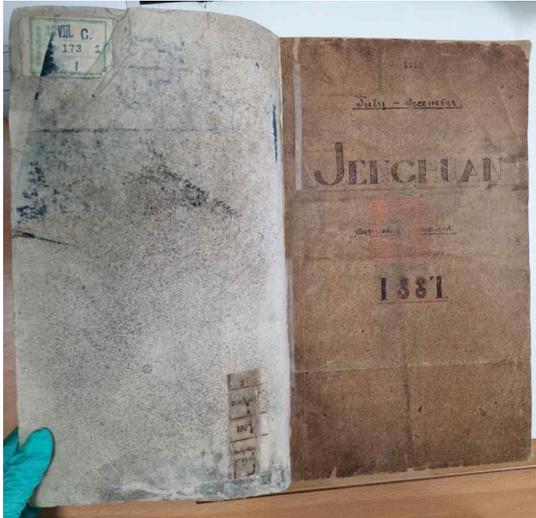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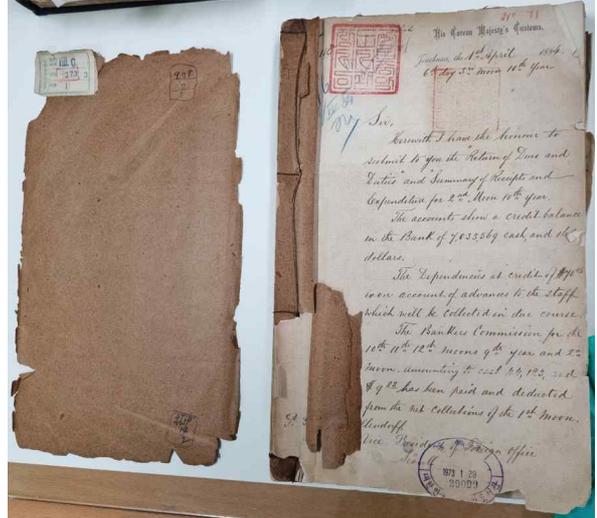
- 명칭은 「해관 보고문서(인천, 부산, 원산)」로 추진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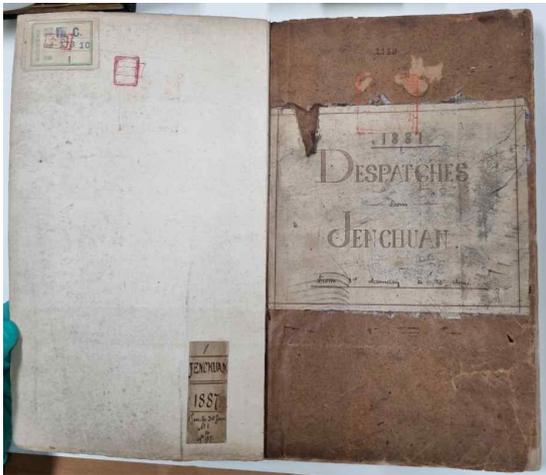
<붙임1-1> 『해관지』 인천해관 부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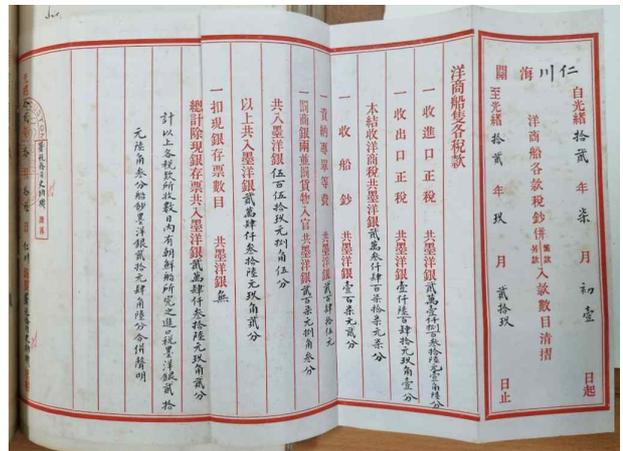
<제1권> 본래 표지



<제2권> 내지 첫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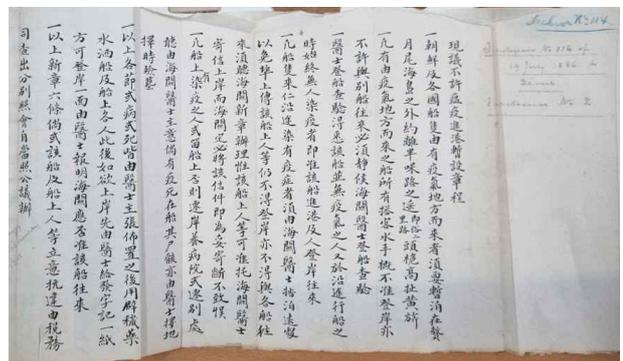
<제3권> 본래 표지



<제22권> 인천해관 결산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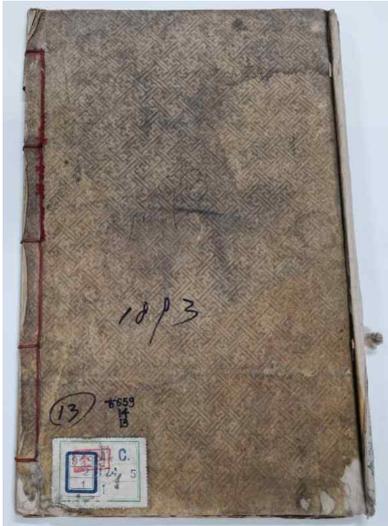


<제22권> 인천해관 청사 평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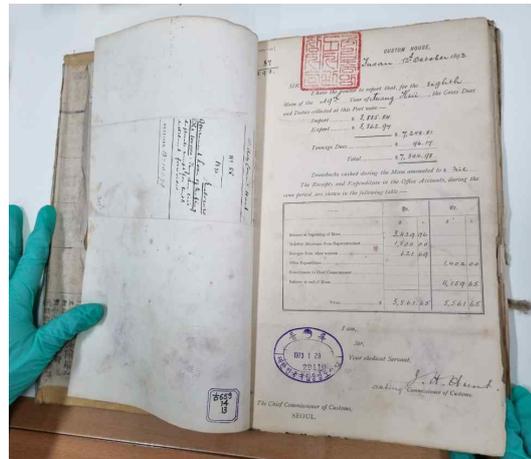


<제22권> 현의불허은역진항잠설장정

<붙임1-2> 『해관지』 부산해관 부분 이미지



<제13권>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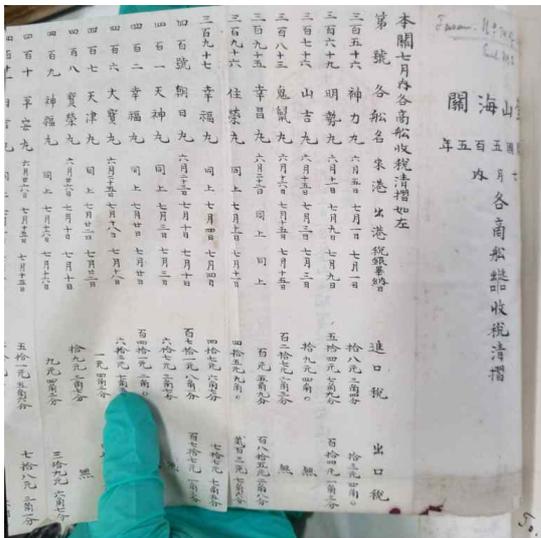
<제13권> 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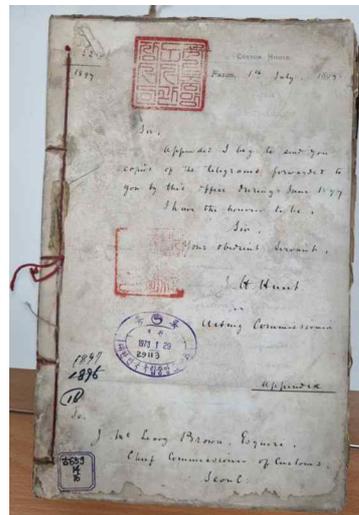
<제14권> 표지



<제15권> 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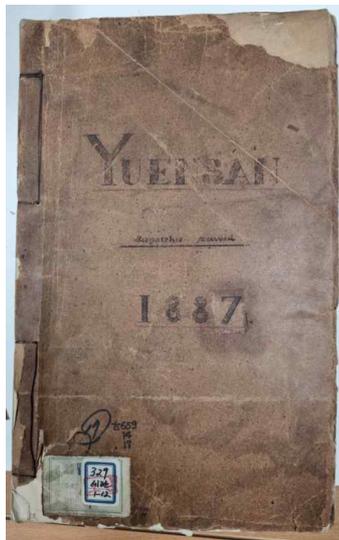


<제15권> 각 상선 수세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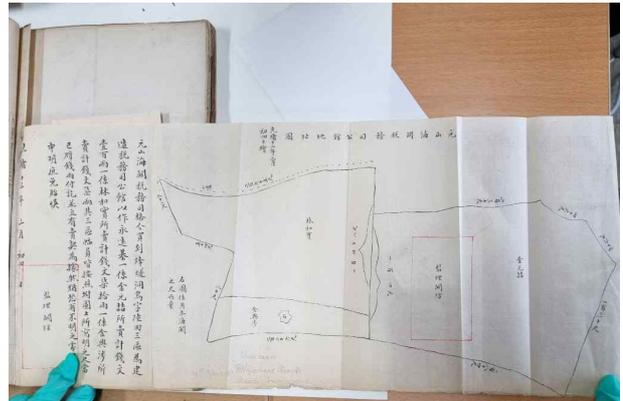


<제16권>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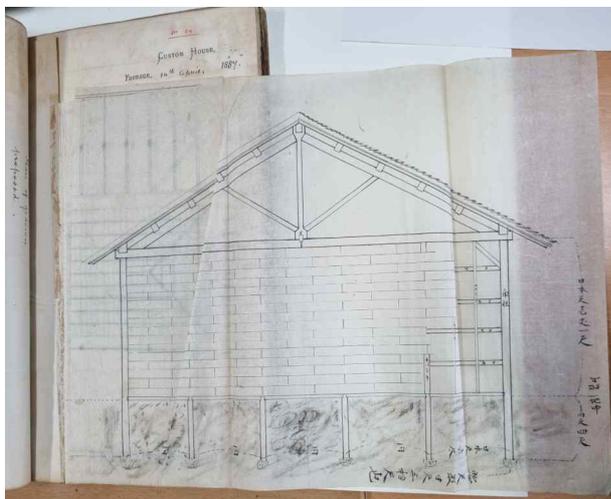
<붙임1-3> 『해관지』 원산해관 부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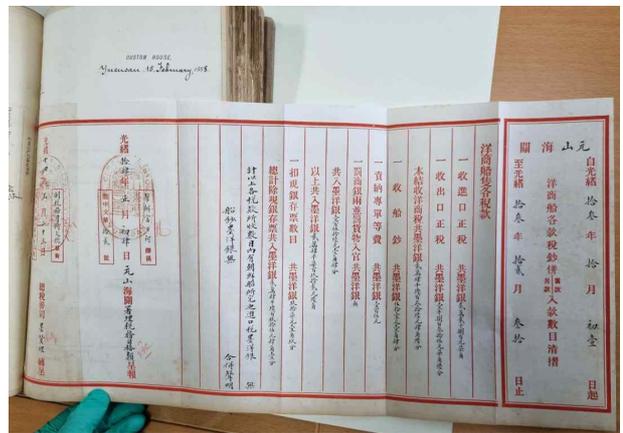
<제17권>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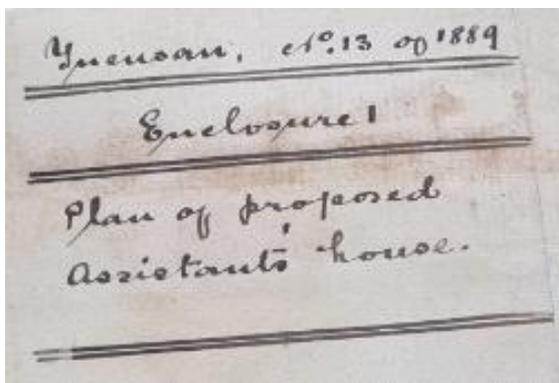
<제17권> 원산해관 세무사 공관 지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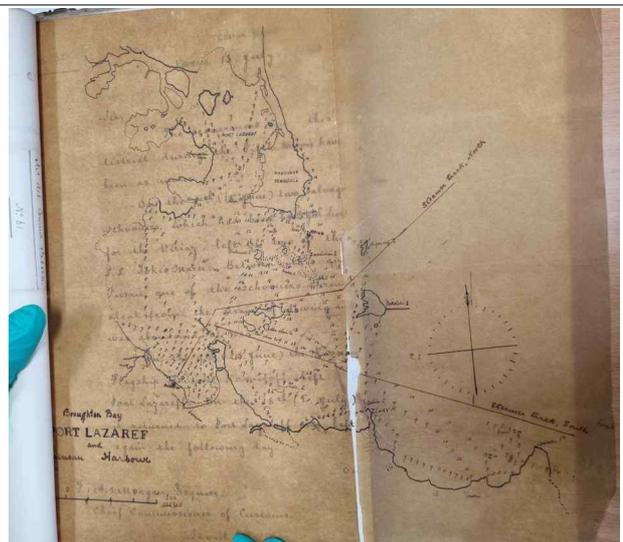
<제17권> 원산해관 청사 단면도



<제18권> 원산해관 결산보고서



<제19권> 각 문서 1건 마다 연월일과 문건 제목이 적혀 있음



<제20권> 원산항(RAZAREF) 지도

<붙임2>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해관지(海關誌)>(古貴659-14)
2. 소 유 자 : 국립중앙도서관
3.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4. 수 량 : 1권 22점(인천해관 14권, 부산해관 4권, 원산해관 4권)
5. 규 격 : 21 × 33.5cm 내외
6. 제작연대 : 1884~1898년
7. 재 질 : 양지(洋紙), 양장본(洋裝本)
8. 조사자 의견('22.3.8./3.21.)

<문화재위원 ○○○>

1) 개요

- 해관(海關; the Maritime Customs)은 세관(稅關; the Customs)의 중국식 표현으로 1883년 6월 16일 인천 해관, 6월 17일 원산 해관, 7월 3일 부산해관 순으로 창설되었으며, 1907년 「세관관제(稅關官制)」가 공포되면서 ‘세관’으로 개칭되었음.
- 해관을 창설하고 관세 사무를 총괄한 조선해관의 총세무사는 필렌도르프(P. G. von Möllendorff)였으며, 각 개항장의 해관 총책임은 외국인 세무사가 담당하였는데, 초대세무사로는 각각 영국인 스트리플링(A. B. Stripling), 원산은 영국인 라이트(T.W.Wright), 부산은 영국인 라바트(W.N.Lovatt)을 임명하였으며, 그 관리·감독을 위해 조선정부에서는 조선인 감리(監理)를 임명해 파견하였음.
- 각 해관의 외국인 세무사는 중앙의 총해관과 총해관의 대표자인 총세무사의 지휘를 받았으며, 감리의 경우 조선 정부의 외교기구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대한제국기 이후로는 외부(外部)의 통제를 받았음.
- <해관지(海關誌)>는 주로 중앙의 총해관과 각 개항장 외국인 세무사 간의 왕복 문서 중 특히 각 개항장 세무사들의 업무 보고 공문들을 합철한 문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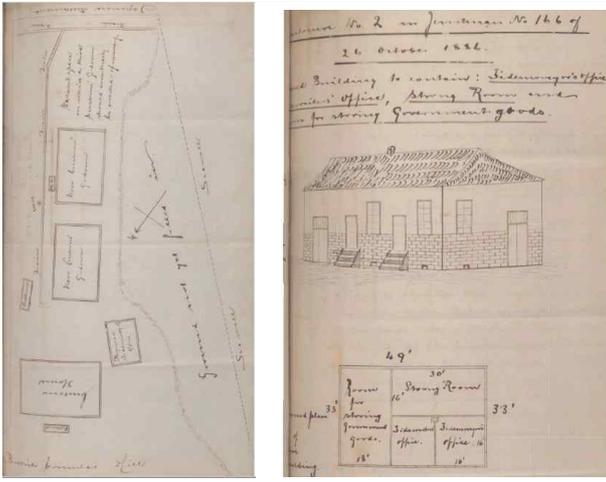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인천해관 보고문서

- 1883년 6월 16일 창설된 인천해관의 업무 보고 공문서들로, 1884년 4월 1일부터 1898년 3월 31일까지의 문서모음임. 1884년 4월 이전 및 1885년 1월 1일~ 1886년 6월 30일, 1894년 9월 25일 ~ 1895년 1월 1일, 1896년 5월 30일~1897년 3월 31일, 1897년 7월 1일 ~ 1898년 1월 3일 사이의 문서들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중 1883년과 1884년의 문서 일부, 1885년 1월~9월의 문서는 서울본부세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천해관문서, 1885 Despatches from Chemulpo>에 수록되어 있음.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해관지는 시간순서로 관리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으로, 시간 순으로 정리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음.

연번	권차(전체 22권 중)	서명	수록연대
1	2권	JENCHUAN	1884. 4. 1 ~ 1884. 7. 30
2	21권	CHEMULPO	1884. 8. 2 ~ 1884. 12. 31
3	22권	CHEMULPO	1886. 7. 1 ~ 1886. 12. 31
4	3권	JENCHUAN	1887. 1. 7 ~ 1887. 6. 26
5	1권	JENCHUAN	1887. 7. 5 ~ 1888. 1. 12
6	4권	JENCHUAN	1889. 1. 3 ~ 1889. 6. 28
7	5권	JENCHUAN	1890. 7. 1 ~ 1890. 12. 31
8	6권	JENCHUAN	1892. 1. 2 ~ 1892. 3. 30
9	7권	JENCHUAN	1892. 4. 1 ~ 1892. 6. 24
10	8권	JENCHUAN	1893. 7. 6 ~ 1893. 9. 25
11	9권	JENCHUAN	1895. 1. 2 ~ 1895. 3. 30
12	10권	JENCHUAN	1896. 4. 1 ~ 1896. 5. 29
13	11권	JENCHUAN	1897. 4. 1 ~ 1897. 6. 30
14	12권	JENCHUAN	1898. 1. 4 ~ 1898. 3. 31

 <p style="text-align: center;"><22권> 1886년</p>	<p>1885년 화재 이후 건설한 두 번째 해관 청사의 도면으로, 첫 번째 해관 청사보다 남측 해안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음. 해관 청사 앞 해안 매립 공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부지 내 우물과 배수로 등이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음. 새 해관청사 2동과 조수 관측관 사무실, 세관원 숙소 및 화장실 등 부속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음.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두 번째 해관청사에 대해 처음으로 정확한 정보가 알려진 자료임.</p>
 <p style="text-align: center;"><제1권> : 1887</p>	<p>항로표시(Navigation Marks): 조수 표지(Tidal Beacon)과 관측섬((Observation Island)를 제안하는 문서와 그에 첨부된 스케치로, 독일인 기술자 J.F.Hilmacher가 작성한 내용임</p>

- 인천해관 보고문서는 인천의 중국식 한자 발음인 JENCHUAN 혹은 CHEMULPO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며,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었음. 그 내용은 대부분 세무사가 상관인 총세무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나 총세무사의 지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중간에 한문으로 된 문서들, 주로 감리가 보낸 문서가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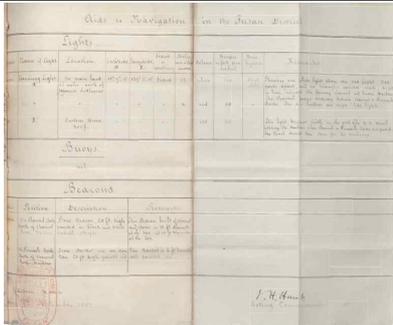
- 인천해관 설치 1년 후인 초창기부터 약 15년 후까지의 문서들로 해관의 분기별 수·출입이나 출입 선박, 그리고 관세 및 벌금 등의 징수 내용 보고를 비롯하여 해관청사를 비롯한 인천항 부두 축조, 항로 표지 뿐 아니라 인천항 조계(租界) 관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1885년 화재로 소실된 첫 번째 해관청사를 대신하여 신축된 두 번째 해관청사의 배치도 및 평입면도, 그리고 1884년 ~ 1889년 사이의 방조제 건설 계획, 항로표지와 관측섬, 정박섬 등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등 개항 초기 인천항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도면 및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인천항 조계(租界) 내 외국인 인구 분포 및 조계별 태풍 피해, 중국 조계, 각국 조계를 비롯한 제물포 조계 측량 지도가 첨부되어 있으며, 해관 소속의 토목 기술자인 러시아인 V.S.베코프스키와 독일인 J.F.Hilmacher 등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항구 축조 및 조계 측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외국인 기술자들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음.
- 선포 및 결산보고서 등의 원본 양식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인천항정박선박 규칙, 콜레라 확산 방지를 위한 운역장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부산해관 보고문서:

- 1883년 7월 3일 창설된 부산해관의 업무 보고 공문들로, 창설 10년 후인 1893년 10월 12일부터 1897년 12월 31일까지의 문서 모음으로 1894년 문서는 누락되었음, 인천·원산해관 보고문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세무사가 상관인 총세무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번	권차(전체 22권 중)	서명	수록연대
1	13권	FUSAN	1893. 10. 12 ~ 1893. 12. 27
2	14권	FUSAN	1895. 1. 2 ~ 1895. 6. 27
3	15권	FUSAN	1896. 7. 1 ~ 1896. 12. 10
4	16권	FUSAN	1897. 7. 1 ~ 1897. 12. 31

- 인천·원산해관보고문서와는 달리 창설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된 보고 문서들이므로 항구나 세관, 조계 등 토목·건축 관련 내용은 없으며, 정례화된 보고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함. 대부분 부산해관의 분기별 수·출입 현황을 위시하여 선박 출입 상황, 그리고 관세 및 벌금 등의 징수 내용 보고를 비롯하여 직원의 근태 및 급여 관련 건 등에 관한 건들이며 특이사항으로는 등대 및 항로표지(Beacon)의 상세사항이 기록된 리스트 및 절영도의 일본석탄창고 관련 내용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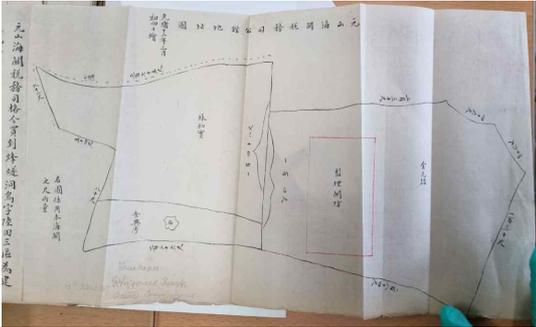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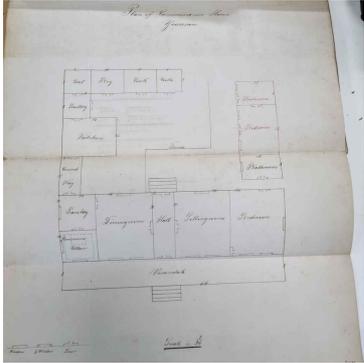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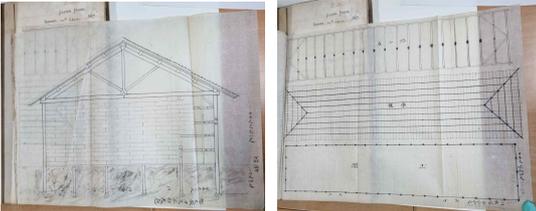
 <p style="text-align: center;"><제14권> 1897년</p>	<p>초량등대 A,B와 부W산항 해협 북쪽 및 남쪽에 위치한 항로표지(Beacon)의 상세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등대는 설치 위치 및 위도, 경도, 고정/회전 여부, 청명일 가지거리, 색상, 해발고도, 등대점화연도 등이 나와 있으며, 항로표지는 위치 및 명세, 재료와 형태, 크기 등에 대해 나와 있음.</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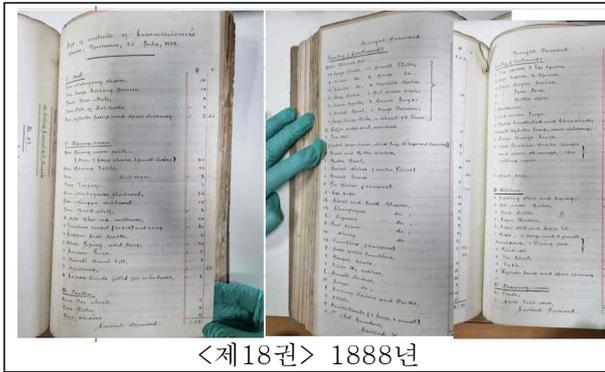
다) 원산해관 보고문서:

- 1883년 6월 17일 창설된 원산해관의 업무 보고 공문들로, 1887년 2월 1일부터 1889년 12월 28일까지와 1893년 7월 6일부터 1893년 12월 31일까지의 문서 모음임, 원산은 중국식 발음표기로 추정되는 YUENSAN으로 표기되고 있으나, 일부 지도에서는 러시아식 표기인 RAZAREF로 표기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인천해관 보고문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세무사가 상관인 총세무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번	권차(전체 22권 중)	서명	수록연대
1	17권	YUENSAN	1887. 1. 1 - 1887. 12. 19
2	18권	YUENSAN	1888. 1. 6 - 1888. 12. 4
3	19권	YUENSAN	1889. 1. 2 - 1889. 12. 28
4	20권	YUENSAN	1893. 7. 6 - 1893. 12. 31

- 인천해관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개항 초에 해당하는 보고문서로 원산항 부두 및 해관청사, 원산해관 세무사 사택 및 조수 주택 등의 도면 등이 다수 첨부되어 있음. 서양인 기술자들에 의해 작성된 인천해관 도면들에 비교해 보았을 때, 원산해관 도면들은 척(尺)을 단위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자로 작성된 경우가 많아 중국인 혹은 일본인이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p><제17권> 1887년</p>	<p>1887년 3월 4일에 제작한 원산해관 세무사 공관지 부지 배치도로, 조선인 소유 세 개의 필지를 매입하여 공관을 설치할 예정임을 알 수 있음. 각 필지의 측량값은 척(尺)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모든 내용은 한자로 작성되어 이 도면을 작성한 이는 일본인이거나 중국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됨.</p>
 <p><제17권> 1887년</p>	<p>1884년 작성된 원산 해관장 사택 평면도로 평면도에서는 실별 배치 및 크기, 창호 위치 등을 알 수 있음. 해관장 사택은 ㄷ자형의 주택과 일자형 부속채로 나누어짐.</p>
 <p><제17권> 1887년</p>	<p>1884년 작성된 해관청사 단면도와 평면도로 단면도에서는 기초와 벽체, 지붕 구조 및 벽체 재료 등을 알 수 있음. 평면은 장방형의 단순한 구조로, 1층과 지붕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음. 한자로 작성되어 있으며, 단위는 척을 사용하였음</p>



세관장 사택의 물품 리스트로, 실별 가구 등 품목별 리스트와 가격이 표시되어 있음.

<제18권> 1888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제1권, 제2권, 제3권은 금속 재질의 묶음에서 직물 소재의 실로 다시 장정되었으며, 1890-1900년대 조선 내의 외국 영사관(領事館)에서 사용되었던 전용 용지를 사용하여 용지의 질은 나쁘지 않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며 바스러지거나 하며 노후화가 진행 중임. 또한 페이지의 일부가 탈색이 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있으며 표지의 경우도 훼손된 경우가 다수 있어 보존 처리가 시급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므로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은 비교적 양호하나, 현재 해관지의 보존처리상태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해관지는 개항 이후 통상 관련 뿐 아니라 항구와 조계지 건설, 외국인 기술자에 의한 건축 및 외국인 현황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임. 특히 1880년대~1890년대의 통상 관련 및 개항장 건설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적인 통계와 도면 자료 등을 통해 볼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해관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PDF로 제공 중이라 접근은 어렵지 않으나, 제본 부분이 제대로 스캔되지 않은 점, 중간에 접혀 있는 이미지 등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며, 필기체로 흘려 쓰여 있어 판독이 어려운 상황이라 장기적으로는 탈초작업 및 디지털화하여 연구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해관지 중 부산해관 보고문서는 현재 관세청에서 DESPACHES FROM FUSAN CUSTOMS 1893-1897이라는 제목으로 탈초 후 번역하여 원본 이미지와 함께 책으로 발간하였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인천해관문서(서울세관 관세박물관)’는 1885년 문서가 대부분이며, 1883년과 1884년 문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본 해관지 중 인천해관보고문서에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 당시 관세 행정은 ① 중앙의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 총해관 간 왕복 문서군 / ② 중앙의 통서와 각 개항장 감리 간의 왕복 문서군 / ③ 중앙의 총해관과 각 개항장 세무사 간의 왕복 문서군 / ④ 각 개항장의 감리 ↔ 세무사 간 왕복 문서군의 4가지 문서를 통해 그 전모를 파악가능함. 본 해관지가 ③ 중앙의 총해관과 각 개항장 세무사 간의 왕복 문서군이라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해안(海案)』(奎17730·17731)·『총관내신(總關來申)』(奎17829)·『총관거함

(總關去函)』(奎17832)·『총관공문(總關公文)』(奎17830)·『총해관왕복안(總海關往復案)』(奎17831) 등은 ① 중앙의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 총해관 간 왕복 문서군에 속하며, 『팔도사도삼항구일기(八道四都三港口日記)』(奎18083)·『삼항구관초(三港口關草)』(奎18082)·『부산항관초(釜山港關草)』(奎17256·18077)·『인천항관초(仁川港關草)』(奎18075)·『원산항관초(元山港關草)』(奎18076)은 ② 중앙의 통서와 각 개항장 감리 간의 왕복 문서군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부산항에 대한 기록인 『해관왕복조회존안(海關往復照會存案)』(奎18114)·『해감(海械)』(奎18113) 및 인천항의 『세사문고(稅司文攷)』(奎古883)은 ④ 각 개항장의 감리 ↔ 세무사 간 왕복 문서군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①, ②의 경우 문서의 종류와 그 분량이 방대한 데 반해 ③의 경우 본 해관지와 ‘인천해관문서(서울세관 관세박물관)’만이 전해 지고 있으며, ④의 경우에도 대상 시기가 극히 제한적인 문서임. 따라서 ‘해관안 문서군(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본 해관지와 상호보완적인 문서라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해관지는 중앙의 총해관과 각 개항장 세무사 간의 왕복 문서군으로서 19세기 말 조선의 관세행정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며 거의 유일한 자료임.
- 당시 해관 행정 및 통상 관련 상황을 비롯하여 개항장 현황, 항구 건설 및 조계지 측량 및 필지 분할, 해관청사 및 해관 관련 직원 주택 등 건축 현황, 개항장 내 외국인 인구 분포 및 구체적인 인원에 대한 정보, 수출입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리스트, 검역 및 콜레라 등 감염병에 대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어 통상·경제 뿐 아니라 도시·토목·건축 분야와 사회·생활·의료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
- 전체 문서는 등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복한 문서 원본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문서를 접은 부분이나 수신, 발신을 써둔 부분 등이 비교적 일정하게 남아 있음. 첩부된 문서 역시 등사본이 아닌 원본인 경우가 많으며, 선포나 결산보고서 등의 원본 서식 역시 있어 사료적 가치 역시 높음
- 이에 해관지의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해관지(海關誌)』는 중앙의 총해관과 각 개항장 세무사 간의 왕복 문서군 중 주로 각 개항장의 세무사가 총해관에 보고문서가 대부분이므로 『해관 보고 문서』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본적으로는 같은 성격의 문서이기 때문에 『해관 보고 문서: 인천, 부산, 원산』라는 하나의 문화재 명칭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인천, 부산, 원산의 각 항구 상황과 문서의 시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지역 명칭을 붙여 『인천해관 보고 문서』, 『부산해관 보고 문서』, 『원산해관 보고 문서』로 개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 개요

- 해관(海關; the Maritime Customs)은 현대에 관세 징수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기구인 세관(稅關; the Customs)의 중국식 표현으로, 그 어원은 중국 청대(清代)로 소급되며, 19세기 중국의 근대 해관은 실제적인 관세 징수 실무를 서양인 세무사(稅務司; the Commissioner)에게 맡기고, 그의 관리·감독을 위해 중국인 해관 감독(監督; the Superintendent)을 둔 것이 특징임.
- 개항기 조선에 해관이 설치된 것은 1883년의 일로, 부산·인천·원산의 3개 항구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당시는 청에 의해 조선이 내정간섭을 받는 시기였으며, 따라서 이를 주도한 것은 청에서 내정간섭의 지휘를 위해 조선에 파견한 뮐렌도르프(P.G.Möllendorf; 穆隣德)였음. 그 결과 시스템 또한 상기와 같은 청국의 제도를 본뜨게 되어, 3개 항구 해관의 총책임자인 세무사로 서양인들이 임명되었으며, 그 관리·감독을 위해 조선인 감리(監理)를 임명해 파견하였는데, 감리의 근무 관서는 감리서(監理署; the Superintendent Office)로 호칭됨.
- 3개 항구의 외국인 세무사는 중앙의 총해관과 그 대표자인 총세무사(總稅務司; Inspector General)의 지휘를 받았는데, 본 자료는 총해관에 대한 3개 항구 소재 해관(인천해관, 부산해관, 원산해관)의 책임자인 외국인 세무사들의 업무 보고 공문을 합철한 문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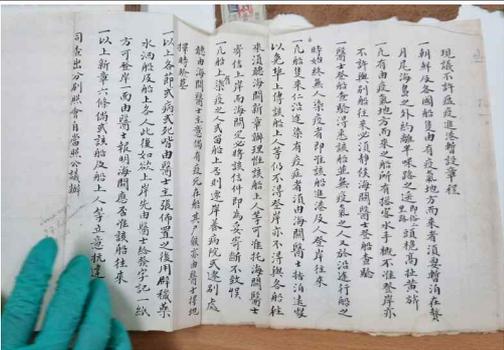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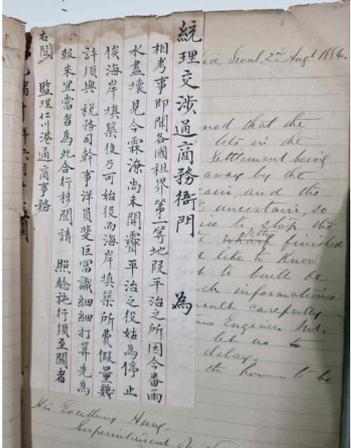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인천해관 보고문서: 1884년(고종 21)~1898년(광무 2)간의 시기가 대상이며, 본 자료군의 전체 분량인 22권 중 가장 많은 비중인 14권을 차지하고 있음. 대상 시기 전체가 망라된 것은 아니며, 관리번호 또한 시간 순서로 부여된 것이 아님. 보다 상세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음.

연번	권차(전체 22권 중)	서명	수록연대
1	2권	JENCHUAN	1884. 4. 1 ~ 1884. 7. 30
2	21권	CHEMULPO	1884. 8. 2 ~ 1884. 12. 31
3	22권	CHEMULPO	1886. 7. 1 ~ 1886. 12. 31
4	3권	JENCHUAN	1887. 1. 7 ~ 1887. 6. 26
5	1권	JENCHUAN	1887. 7. 5 ~ 1888. 1. 12
6	4권	JENCHUAN	1889. 1. 3 ~ 1889. 6. 28
7	5권	JENCHUAN	1890. 7. 1 ~ 1890. 12. 31
8	6권	JENCHUAN	1892. 1. 2 ~ 1892. 3. 30
9	7권	JENCHUAN	1892. 4. 1 ~ 1892. 6. 24
10	8권	JENCHUAN	1893. 7. 6 ~ 1893. 9. 25
11	9권	JENCHUAN	1895. 1. 2 ~ 1895. 3. 30
12	10권	JENCHUAN	1896. 4. 1 ~ 1896. 5. 29
13	11권	JENCHUAN	1897. 4. 1 ~ 1897. 6. 30
14	12권	JENCHUAN	1898. 1. 4 ~ 1898. 3. 31

- 서명이 'JENCHUAN'과 'CHEMULPO'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대부분은 'JENCHUAN'으로 기재되어 있음. 'JENCHUAN'은 '인천(仁川)'의 당시 중국어 한자음 발음으로서(현대 발음으로는 réncuān), 이는 당시 청국에 의한 내정간섭의 상황 하에서 조선 해관을 청국 해관의 하위 기구로 종속시키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됨.

- 즉 초대 총세무사 필렌도르프(P.G.Möllendorf; 穆隣德)의 후임으로 1885년에 조선의 총세무사로 부임한 메릴(H.F.Merrill; 墨賢理)은 청국 해관의 총세무사인 영국인 하트(Sir R.Hart; 赫德)의 지시에 따라 조선해관을 청국해관에 예속시키려 하였으며, 실제로 당시 조선 3개 개항장의 무역 통계수치를 기재하여 매년 발표된 『조선통상삼관무역책(朝鮮通商三關貿易冊)』은 중국 해관 통계 보고서의 부록으로 발간되었음.
- 문서 대부분은 영어로 표기하여 작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세무사가 상관인 총세무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며, 반대로 총세무사에 의한 지시 내용 또한 간간이 포함되어 있음. 표기 양식은 필사와 전용(專用) 용지의 두가지 방식이 혼용됨.
- 그 내용은 해관의 분기별 수·출입이나 출입 선박, 그리고 관세 및 벌금 등의 징수 내용 보고를 비롯하여 직원의 근태 및 급여 관련 건이나 해관 자체 및 여타 시설들의 건립 계획서 및 그 도안, 그리고 외국인 거주구역인 조계(租界)와 관련하여 그 상세한 지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기재됨.
- 종종 한문으로 된 문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①해당 해관의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한 감리가 보낸 문서로서, 총세무사에게 보고서 참고자료로 첨부한 것이 대부분으로, 아니면 간혹 ②조선 중앙정부에서 외교 업무를 관할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감리에게 내려보낸 지시사항이 첨부되어 있기도 함. 또한 ③콜레라 예방 검역 지침인 <현의불허온역진항잠설장정(現議不許溫疫進港暫設章程)>을 비롯한 관세행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규정들이 역시 참고자료로 수록된 경우도 있으며, 드물게는 ④해관의 부지 등과 관련된 토지소유 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제출한 명문(明文) 등의 청원서가 첨부되어 있기도 함. 또한 인천 주재 일본 영사관에서 보낸 일본어 문서 역시 간간이 참고자료로 부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출진: 22권〉</p>	<p style="text-align: center;">〈現議不許溫疫進港暫設章程 (현의불허온역진항잠설장정)〉: 콜레라 예방 검역 지침</p>
 <p style="text-align: center;">〈출진: 21권〉</p>	<p style="text-align: center;">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인천감리에게 하달한 문서</p>

나) 부산해관 보고문서: 1893년(고종 30)~1897년(광무 1)간의 시기가 대상이며, 본 자료군의 전체 분량인 22권 중 4권(13~16권)을 차지하고 있음. 대상 시기 중 일부 빠진 시간이 있으며, 관리번호는 시간 순서로 부여되었음. 보다 상세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음.

연번	권차(전체 22권 중)	서명	수록연대
1	13권	FUSAN	1893. 10. 12 ~ 1893. 12. 27
2	14권	FUSAN	1895. 1. 2 ~ 1895. 6. 27
3	15권	FUSAN	1896. 7. 1 ~ 1896. 12. 10
4	16권	FUSAN	1897. 7. 1 ~ 1897. 12. 31

- 서명이 'FUSAN'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서 언급한 인천의 경우처럼 중국어 발음 표기를 채택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음. 현대 중국어의 '부산(釜山)' 발음은 'fǔshān'으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당시와 현대의 중국어 발음이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을뿐더러, 대체로 우리말로 발음할 때 'Busan' 혹은 'Pusan'으로 표기된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각종 조계 지도나 협정 등에도 'Fusan'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들의 명명 또한 당시 조선해관의 외국인 세무사·총세무사들이 했을 것이므로 과연 당대 실제로 조선인의 발음대로 표기한 것인지는 의문임.
- 문서 대부분이 영어로 표기하여 작성되어 있는 점, 표기 양식이 필사와 전용 용지의 두가지 방식이 혼용되고 있는 점은 인천해관과 마찬가지로, 기타 한문본 문서의 경우 역시 상술한 인천해관의 경우와 대동소이함. 내용 또한 대체로 인천해관과 유사하게 부산해관의 분기별 수·출입 현황을 위시하여 선박 출입 상황, 그리고 관세 및 벌금 등의 징수 내용 보고를 비롯하여 직원의 근태 및 급여 관련 건 등에 관한 건들이 기록되어 있음. 그런데 본 부산해관 관련 문서는 부두 축조 및 조계지 건설이 완료된 이후의 시점인 1893~1897년에 해당하는 기록이므로, 나머지 두 해관과 비교해볼 때 건축이나 조계 관련 도면은 별로 없으나, 다만 등대 시설의 건립 계획서 및 도안 내용이 확인됨.

다) 원산해관 보고문서: 1887년(고종 24)~1893년(고종 30)간의 시기가 대상이며, 본 자료군의 전체 분량인 22권 중 4권(17~20권)을 차지하고 있음. 대상 시기 중 일부 빠진 시간이 있으며, 관리번호는 시간 순서로 부여되었음. 보다 상세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음.

연번	권차(전체 22권 중)	서명	수록연대
1	17권	YUENSAN	1887. 1. 1 - 1887. 12. 19
2	18권	YUENSAN	1888. 1. 6 - 1888. 12. 4
3	19권	YUENSAN	1889. 1. 2 - 1889. 12. 28
4	20권	YUENSAN	1893. 7. 6 - 1893. 12. 31

- 서명이 'Yuensan'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한 인천의 경우와 유사하게 당대의 중국어 발음 표기를 채택한 것으로 추정됨(현대 중국어로는 yuánshān). 다만 앞의 'Fusan'과 유사하게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각종 조계 지도나 협정 등에 'Yuensan'로 표기된 경우가 더러 있으나, 이 역시 당시 조선해관의 외국인 세무사·총세무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명명이므로 당대 실제 조선인의 발음과 같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전체적인 내용이나 체제는 대체로 상술한 인천해관·부산해관과 거의 유사하나, 다만 다른 항구들의 문서군에서도 발견되는 해관 건물의 건축 도면이나 부지 지도 등의 자료가 본 원산항 문서에서는 더 자주 발견되고 그 도면의 내용도 보다 상세함. 이는 당시 원산항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즉 상대적으로 부산과 인천에 비해 원산의 경우 무역량도 적고 조선 측의 입장에서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니, 실제로 1883년 3개 항구에 해관을 관리·감독하는 감리를 처음 임명할 당시 부산과 인천은 별도의 관리를 임명했으나, 원산은 ‘사무가 간단하다’는 이유로 당시 덕원부사(德源府使)에게 겸직을 시킨 바 있음. 따라서 해관 청사의 건립을 비롯한 초기 투자 또한 여타 두 항구에 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설이 열악했을 것이므로 이러한 건물 건립과 관련된 도면 등이 첨부된 공문서의 왕복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 관련 문서가 더 많이 수록된 것으로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래 금속 재질의 묶음 방식을 현 소장 도서관 측에서 제1·2·3권의 경우 현재 직물 소재의 실로 바꾸어서 재장정함.
- 원래의 종이 재질은 상당히 좋은 편이나,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바스러지기 시작한 곳들이 적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낙장의 우려 또한 존재함. 특히 12권의 경우 낙장은 아니지만 페이지의 일부가 탈색이 되거나 훼손이 됨.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하여 추가적인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국내 최고의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 중이므로 결코 보존관리 여건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재 해당 도서관의 보존 처리 인력이 극히 부족하여 본 자료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관련 인력의 충원을 통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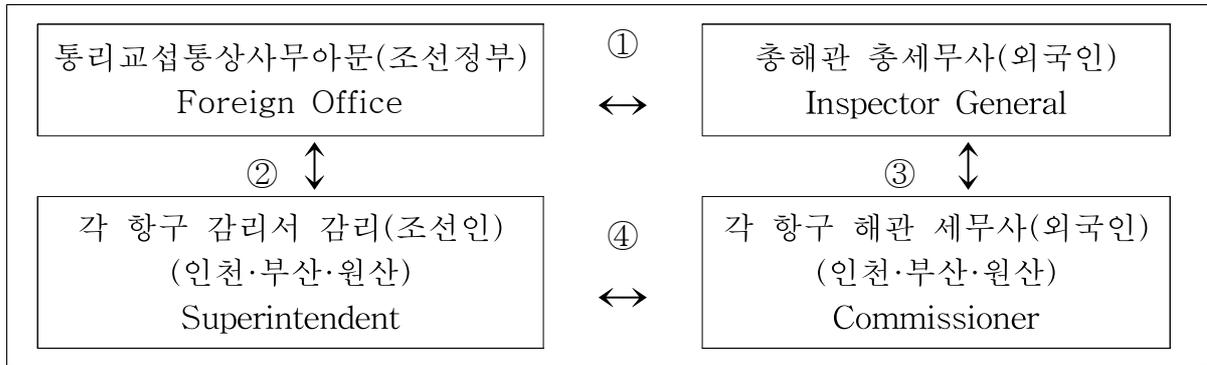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현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이미지화하여 서비스하고 있어서 연구자들의 이용이 편리하나, 중간중간 제대로 스캔이 되지 못하고 일부분의 이미지가 누락된 것이 발견됨. 특히 원래 제본시 금속 재질로 묶여 있던 부분들의 이미지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체크 및 수정이 요망됨.
- 장기적으로는 탈초 작업이 필요함. 영어 문서의 표기 중 필기체로 흘려써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함.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을 탈초하여 정서한 뒤 일차적으로는 책으로, 가능하다면 디지털 데이터로 서비스할 수 있다면 연구 활용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동종 건과 비교 - ‘인천해관문서(서울세관 관세박물관/서울시 유형문화재)’: 본 자료와 같은 성격(지방 해관 세무사 → 총세무사 보고 문서 합철본)의 것으로 보이며, 다만 본 자료 중 인천해관 부분에서 누락된 시간대(1883·1884·1885년 일부)의 것으로 추정됨

- 유사 건과 비교 - ‘해관안 문서군(서울대 규장각)’: 상호 보완적인 자료임.
- 3개 항구의 외국인 세무사는 중앙의 총해관과 그 대표자인 외국인 총세무사의 지휘를 받았으며, 감리의 경우 조선 중앙정부의 외교기구인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대한제국기 이후로는 외부(外部)의 통제를 받았음. 따라서 이 시기 해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세행정의 전모를 알기 위해서는 ① 중앙의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 총해관(총세무사) 간 왕복 문서군 / ② 중앙의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과 각 개항장 감리서 감리 간의 왕복 문서군 / ③ 중앙 총해관의 총세무사와 각 개항장 세무사 간의 왕복 문서군 / ④ 각 개항장 감리서의 감리 ↔ 세무사 간 왕복 문서군의 4가지가 갖추어져야 온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음.



- 상기의 4가지 자료 중 ①의 경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해안(海案)』(奎17730·17731)·『총관내신(總關來申)』(奎17829)·『총관거함(總關去函)』(奎17832)·『총관공문(總關公文)』(奎17830)·『총해관왕복안(總海關往復案)』(奎17831) 등 상당량이 전해지고 있으며, ②의 경우는 『팔도사도삼항구일기(八道四都三港口日記)』(奎18083)·『삼항구관초(三港口關草)』(奎18082)·『부산항관초(釜山港關草)』(奎17256·18077)·『인천항관초(仁川港關草)』(奎18075)·『원산항관초(元山港關草)』(奎18076)를 비롯하여 대한제국기에는 ‘~항안(港案)’ 형태의 서명으로 오히려 ①보다 훨씬 많은 방대한 분량이 전래되고 있음(해관안 문서군).
- 나머지 ③과 ④가 약한 고리로서, ③의 경우 본 자료를 제외한다면 세관본부에서 펴낸 『1885 Despatches from Chemulpo』(2007) 외에는 전해지는 것이 없으며, ④ 또한 서울대 규장각에 부산항에 대한 기록인 『해관왕복조회존안(海關往復照會存案)』(奎18114)·『해감(海槓)』(奎18113) 및 인천항의 『세사문고(稅司文攷)』(奎古883)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그 대상 시기가 극히 제한적임(부산항은 1888~1890년, 인천항은 1886~1889년 해당 기록만 수록). 따라서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해관안 문서군과 본 자료는 19세기 조선의 관세행정 전모를 파악함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 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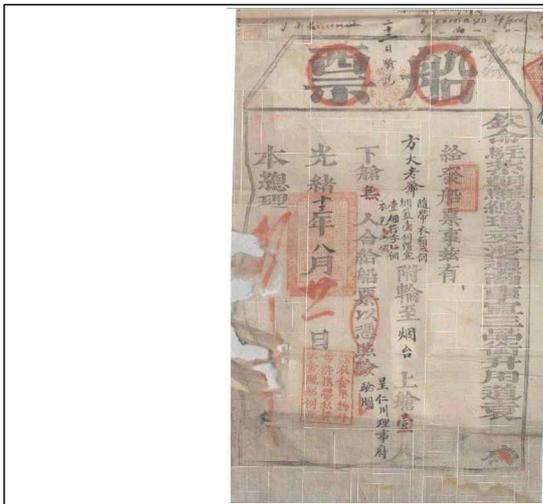
- 본 자료군은 19세기 말 조선의 관세행정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개항장의 외국인 세무사와 중앙 총해관 간의 왕복문서군으로 현재 전래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라는 의미를 지니며, 첨부문서의 형태로 세무사와 감리 간의 왕복문서까지 수록되어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높음. 거기에 내용도 관세행정 관련 사항이 대중을 이루는 가운데 콜레라 등 검역 문제나 건축 등과 같은 다방면의 정보 또한 풍성하게 담고 있어서 이 시기 해관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역사상을 생생히 보여주는 자료임.

- 또한 ‘자료의 원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본 자료군은 주목할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 중간중간 첨부된 한문 문서들은 세무사가 총세무사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서 해당 개항장의 조선인 감리로부터 받은 공문 원본을 첨부한 것임. 그런데 해관 관련 서울대학교 소장 자료의 경우 대부분 공문 원본이 아니라 그것을 등사한 것에 불과한데, 본 자료군의 문서는 실제 당시에 왕복한 문서 원본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상 분명한 차이가 있음.

	<p>* 좌: 『부산항관초』(奎17256)에 수록된 1887년 5~6월분 부산감리의 통서 제출 보고서 중 일부. 날짜별로 연이어 기록되어 있는 데서 원본 문서를 등사했음을 알 수 있음.</p>
	<p>인천해관 세무사 하스(J.Haas; 夏士)에게 인천감리 홍순학(洪淳學)이 보낸 공문(본 문서군 21권 수록). 문서에 사용된 종이의 색이나 서식상 실체로 보낸 공문 원본임을 알 수 있음</p>

- 아울러 선표(船票)나 결산보고서[청첩(淸摺)] 등 당시 사용된 각종 증명서나 공문 등의 원본 서식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본 자료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 이들의 원본 문서는 현재 한국에서는 본 자료를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움.

	<p>수출입 세금 결산보고서(淸摺): 해관의 세무사가 일정 기간을 주기로 감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로, 해당 항구의 수·출입세 및 톤세(噸稅), 그리고 선초(船鈔) 등 각종 세금 항목에 대한 해당 기간의 결산 내용이 기재됨. 역시 이 문서를 보내거나 받았다는 내용은 해관이나 감리서 관련 자료에 무수히 등장하나, 그 기재 양식을 포함한 실물은 오직 본 자료군에서만 확인 가능함.</p>
<p><출전: 제17권></p>	



<출전: 제1권>

선표(船票): 선박의 통항 허가증으로, 선박이 해관에 진입하여 통항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시하는 증명서. 좌측 이미지의 경우 청국에서 조선에 파견된 위안스카이(袁世凱) 명의로 발행되었음. 선표의 발급 사실에 대한 기록은 당시 자료에 무수히 등장하나, 그 기재 양식을 포함한 실물이 확인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음.

- 상기 사유들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본 자료는 문화재 등록의 가치인 자료의 희소성, 대표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자료의 보존 상황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시급하게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8)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해관지(海關誌)』라는 명칭이 마치 해관에서 작성한 일지 내지는 일기라는 인상을 주나, 실제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자료는 해관의 세무사들이 중앙에 보고한 보고서 공문 모음집임.
- 따라서 자료의 성격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서명을 바꿀 필요가 있음. 아울러 부산과 인천, 원산의 3개 항구 문서들이 뒤섞여 있는 것 또한 3개 항구의 상황이 분명히 달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됨
- 이에 따라 ①**인천해관 보고문서** / ②**부산해관 보고문서** / ③**원산해관 보고문서**의 3개로 분리하여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해관은 각 항구에 설치된 정부기관으로 관세를 담당하였음. 해관지는 인천, 부산, 원산의 각 해관에서 생산한 보고서로 해관의 주요 업무, 예를 들면, 관세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해관은 조선정부의 무역항 검역도 담당했음. 해관이 검역을 주도하는 방식은 중국에서 기원한 것임.
- 1885년 10월에 청국 총세무사 하트(Sir R. Hart)가 파견한 그의 직속 부하 미국인 메릴이 강해관(江海關, Shanghai Customs) 이등방관후반(Second Assistant: B)이라는 청국 현직 해관원의 신분으로 조선에 와서 조선해관 제2대 총세무사를 겸직하게 되면서 검역 체제 구축이 이루어짐.
- 메릴시기의 조선해관은 청국의 해관 중 최초로 검역이 이루어진 하문관과 청국에서 해관검역의 모델이 된 강해관에서 운영진으로 일한 총세무사 개인의 경력과 조선해관의 직제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강해관과의 관계 강화로 강해관의 검역방식을 참고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고, 체제개혁을 통해 해관조직과 통서·감리서의 연대 강화로 외교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음.

- 1886년 여름, 일본에서 유입된 콜레라에 의한 첫 감염자가 6월 1일 무렵에 부산에서 확인된 이후 콜레라는 인천과 원산으로 확산되었음.
- 인천해관의 서리세무사 쇠니케는 1886년 7월에 ‘조선 인천의 콜레라 유입 방지를 위한 임시 장정(Jenchuan Corea Provisional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the Importation of Cholera)’ 초안을 해관 공식 언어인 영문으로 작성함. 내용은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해관의사가 직접 선박에 탑승하여 검사하는 승선검역의 내용과 선내 콜레라 환자에 대한 처치, 선원·승객에 대한 소독, 선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었음.
- 1886년 7월 영국, 독일, 청국, 일본 등 4개 국가의 대표와 협상한 결과를 토대로 ‘조선 인천의 콜레라 유입 방지를 위한 임시 장정’이 마련됨.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근대 국제법 관례에 적합한 방식으로 만들어짐.
- 1887년 6월 총세무사 메릴은 조선의 전체 무역항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선 무역항의 감염병 유입에 관한 임시 장정(Temporary Regul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Infectious Diseases at the Korean Treaty Ports)’ 초안을 마련하였음. 7월 ‘조선 무역항의 감염병 유입에 관한 임시 장정’이 조선해관에서 시행되었음. 이로써 조선해관은 모든 무역항에서 감염병의 해외로부터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게 되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광서(光緒)라는 중국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인천을 JENCHUAN으로 발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음.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문서이므로 독립적인 연호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한문으로 인쇄가 된 세금문서가 광서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 세관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일 수 있음.
- 1880년대 초반에는 수기로 내용이 정리되었지만, 관세의 기록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I have the honour to report that, for the”로 시작하는 문구 등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구를 인쇄된 문서를 사용하고 있음.
- 관세의 입출금 양식이 인쇄된 문서도 사용하고 있음. List of Employes as per pay list라고 인쇄된 종이에 세관에 고용된 인사의 이름, 급여 등이 적혀 있음.

가) 인천해관

- 영문 공문서가 주종을 이루며, 필기체로 써져 있어 해독에 곤란함이 있음. 하지만 난잡한 필기체는 아닌 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타이핑은 가능한 수준임. 중간중간 한문 문서, 일본어 문서도 섞여 있음.
- 공문서이므로 각 문서마다 번호가 붙어 있고 생산 연월일이 적혀 있어 순서를 알 수 있음.
-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무역 관련 문서가 주종임. 수입의 경우 선박세 등을 받았음. 선박의 국적, 입출국일, 도착지 정보가 적혀 있음. 선박에 선적한 물품에 대한 목록을 적은 문서도 있음.
- 2권의 경우 문서 위 왼쪽에 색연필로 날짜, 번호 등이 적혀 있음.
- 3권의 경우 중간에 월미도 그림이 있음. 인천을 통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본인 범죄에 대한 재판기록을 수록하고 있음.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쓰인 인천항 정박에 대한 규칙이 있음.
- 4권의 경우 조계 구역 지정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된 문서가 있음.

- 5권의 경우 1890년 나가사키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지 그 전과를 막기 위한 논의가 온역장정으로 정리되어 기록됨. 소독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있음. 콜레라의 확산 상황이 기록됨.
- 21권의 경우 문서 첫 장 원편에 색연필로 날짜 등을 기입하고 있음. 항구 근처 기지에 있는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한문문서 있음.
- 22권의 경우 문서 첫 장 오른편에 문서 번호가 색연필로 적혀 있음. 콜레라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의 내용이 한문문서에 적혀 있음. 연안에서 진주를 채취하고 싶어하는 미국인의 요구가 적힌 한문문서 있음. 인천항정박선박규칙에 대한 한문문서 있음.
- 22권의 현의불허온역진항잠설장정은 8개조로 되어 있는데, 전염지로부터 오는 선박의 의무적인 검역 실시, 검역대상 선박의 승무원과 승객에 대한 의사의 검사, 검사 후 전염자가 없는 경우 선박의 항구 진입 허용, 전염 선박의 격리, 전염 환자의 피병원 격리와 사망자 처리, 환자와 사망자에 대한 소독, 검역 불응 선박 또는 선주, 승객 등의 처리를 규정함.
- 22권의 현의불허온역진항잠설장정 각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선 및 각국의 선척(船隻) 중 온역(瘟疫)의 기운이 있는 지방에서 들어오는 자는 월미도 2리 밖에 잠시 정박토론 하고 선두(船頭)에 황기(黃旗)를 매달게 함. 온역의 기운이 있는 지방에서 진항(進航)해오는 선박의 수수(水手)와 승객은 임의로 등안(登岸)할 수 없으며 먼저 해관의 의사가 등선(登船)하여 이를 사험(查驗)함. 의사의 사험을 거쳐 역기(疫氣)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등안을 허락함. 선척 내에 역증(疫症)이 있을 경우 해관의사가 지정하는 원처(遠處)에 이동하여 부상(埠上)의 전염을 피하도록 하고 해당 선박에 승선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당분간 등안 및 각선(各船)과 왕래를 불허함. 선상에 염역지인(染疫之人)이 있을 경우 병원에 이송하여 요양케 할 수 있으며 혹은 별처(別處)에 이송할 수 있음. 병사자의 경우 의사가 지정하는 곳을 택하여 장례를 치르게 함. 이상의 병자 및 사자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후 선상의 각인이 상안(上岸)하고자 할 경우 의사가 발급하는 자기(字記)를 휴대하여 해관에서 그동안의 가부를 판단하게 할 수 있음. 해관의 정류 명령을 받고도 선주 또는 승객이 해관의사의 판법(辦法)에 불복하는 경우 인천 혹은 한성에 주차(駐節)하는 해국관원에게 고명(告明)토록 함. 사판(查辦)할 때 선주 및 승객은 그 판리(辦理)에 위배됨이 없이 따라야 함. 이상 7조에 대하여 만약 각 선박 및 선상인이 의견을 달리하면 세무사는 조회(照會)를 실시하여 스스로 처리해야 함.

나) 부산해관

- 영문 공문서가 주종을 이루며, 필기체로 써져 있어 해독에 곤란함이 있음. 하지만 난잡한 필기체는 아닌 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타이핑은 가능한 수준임. 중간중간 한문 문서, 일본어 문서도 섞여 있음.
- 공문서이므로 각 문서마다 번호가 붙어 있고 생산 연월일이 적혀 있어 순서를 알 수 있음.
-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무역 관련 문서가 주종임. 수입의 경우 선박세 등을 받았음. 선박의 국적, 입출국일, 도착지 정보가 적혀 있음. 선박에 선적한 물품에 대한 목록을 적은 문서도 있음.
- 15권의 경우 부산을 출입하는 상선에서 받은 세금과 선박명, 출입항 날짜를 적은 긴 명단이 있음.

다) 원산해관

- 영문 공문서가 주종을 이루며, 필기체로 써져 있어 해독에 곤란함이 있음. 하지만 난잡한 필기체는 아닌 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타이핑은 가능한 수준임. 중간중간 한문 문서, 일본어 문서도 섞여 있음.
- 공문서이므로 각 문서마다 번호가 붙어 있고 생산 연월일이 적혀 있어 순서를 알 수 있음.
-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무역 관련 문서가 주종임. 수입의 경우 선박세 등을 받았음. 선박의 국적, 입출국일, 도착지 정보가 적혀 있음. 선박에 선적한 물품에 대한 목록을 적은 문서도 있음.
- 17권의 경우 원산해관세무사공관 지도도(地址圖)가 있음. 원산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 구체적으로 관리 여부를 구분한 후 성별, 자녀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원산항선박정박가규칙이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수록되어 있음.
- 18권의 경우 부과된 관세에 대한 이견을 표시하는 일본어 문서가 있음. Commissioner의 가옥을 꾸밀 가구와 사용할 주방도구에 대한 내용. 한국 소의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생기므로 수출을 금하는 내용의 한문 문서가 있음.
- 19권의 경우 원산세무사공관 건립과 관련된 한문 문서 있음. 항구에서 이루어지는 자국 선박 활동을 정리한 일본어 문서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2권의 경우 낙장은 아니지만 페이지의 일부가 탈색이 되거나 훼손이 됨. 보존 처리가 필요함.

4)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웹뷰어를 통하여 원문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연구자들이 해당 도서를 이용하여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다만, 처음 스캔을 받을 당시 도서의 제본 부분이 스캔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만약 제본의 가치가 높아 제본을 해체해도 무방하다면, 그때 새롭게 이미지를 촬영하여 영구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등록가치의견

- 해관지는 1894년 갑오개혁 이전 한국에서 근대적 제도가 수용되고 정착되는 과정의 여러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 사료임. 한국에 근대 문명이 개항장을 통해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해관지는 그 수용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 사료임. 해외에서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있을 때 해관이 검역을 담당함에 따라 해관지를 통해 한국에서 검역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콜레라 방역을 위한 온역장정의 내용이 포함되는 등 의료사의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사료임.
- 등록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함.

6)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현재 이 자료에 붙여진 해관지라는 명칭은 학술적 검증을 거쳐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음. 하지만 이미 해관지라는 명칭으로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변경을 할 경우 혼란도 예상됨. 명칭을 새로 정할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제명이 <해관지(海關誌)>인 22점 공문서(公文書)가 존재함.
- <해관지>는 인천해관, 부산해관, 원산해관에서, 관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책임 세무사(稅務司)가 해관을 총괄하던 서울(한양)의 총해관(總海關)에 있는 총세무사(總稅務司)에게 해관의 주요 업무와 상황 등을 정기적(定期的)으로 보고했던 공문서임.
- ‘인천해관’에서 작성된 <해관지>는 고종(高宗) 21년(1884)부터 광무(光武) 2년(1898)까지 인천해관에서 작성하여, 서울의 해관 총세무사(總稅務士)에게 보고한 문서를 낱짜별로 모아 합철해 놓은 것으로, 전체 14권이 존재.
- ‘부산해관’에서 작성된 <해관지>는 고종(高宗) 30년(1893)부터 광무(光武) 1년(1897)까지 부산해관에서 작성하여, 서울의 해관 총세무사(總稅務士)에게 보고한 문서를 낱짜별로 모아 합철해 놓은 것으로, 전체 4권이 존재.
- ‘원산해관’에서 작성된 <해관지>는 고종(高宗) 30년(1893)부터 광무(光武) 1년(1897)까지 원산해관에서 작성하여, 서울의 해관 총세무사(總稅務士)에게 보고한 문서를 낱짜별로 모아 합철해 놓은 것으로, 전체 4권이 존재.

2) 주요 내용 및 특징

2-1) 인천해관의 <해관지>

- (1) 구 성: 전체 14권. 앞표지, 일지(日誌), 뒤표지로 구성(권에 따라 삽화, 도면, 지도가 존재함.)
- (2) 서지사항: 본문은 영문과 한문(漢文)으로 작성됨. 각 권은 대부분 21×33.5cm 내외의 규격화된 형태로 합철되어 있음. 인천해관에서 작성된 <해관지> 14권의 간략한 서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번	청구기호	권차	구분	자료명	생산년대	언어
1	古貴659-14	2권	인천 해관	JENCHUAN	1884.04.01-1884.07.30	영문, 한문
2	古貴659-14	21권	인천 해관	CHEMULPO	1884.08.02-1884.12.31	영문, 한문
3	古貴659-14	22권	인천 해관	CHEMULPO	1886.07.01-1886.12.31	영문, 한문
4	古貴659-14	3권	인천 해관	JENCHUAN	1887.01.07-1887.06.26	영문, 한문
5	古貴659-14	1권	인천 해관	JENCHUAN	1887.07.05-1888.01.12	영문, 한문
6	古貴659-14	4권	인천 해관	JENCHUAN	1889.01.03-1889.06.28	영문, 한문
7	古貴659-14	5권	인천 해관	JENCHUAN	1890.07.01-1890.12.31	영문, 한문
8	古貴659-14	6권	인천 해관	JENCHUAN	1892.01.02-1892.03.30	영문, 한문
9	古貴659-14	7권	인천 해관	JENCHUAN	1892.04.01-1892.06.24	영문, 한문
10	古貴659-14	8권	인천 해관	JENCHUAN	1893.07.06-1893.09.25	영문, 한문
11	古貴659-14	9권	인천 해관	JENCHUAN	1895.01.02-1895.03.30	영문, 한문
12	古貴659-14	10권	인천 해관	JENCHUAN	1896.04.01-1896.05.29	영문, 한문
13	古貴659-14	11권	인천 해관	JENCHUAN	1897.04.01-1897.06.30	영문, 한문
14	古貴659-14	12권	인천 해관	JENCHUAN	1898.01.04-1898.03.31	영문, 한문

(3) 서지적인 특징

- ① 표지가 “JENCHUAN, CHEMULPO”로 쓰여진 것으로 구분됨. (참고로 ‘JENCHUAN’은 중국 청(淸)나라에서 사용했던 명칭을 따라서 쓴 것임.)
- ② 보고서 양식은 ‘His corean majesty’s customs service’라고 찍힌 전용(專用) 용지를 사용했음. (참고로 이 용지는 1890-1900년대 조선 내의 외국 영사관(領事館)에서 사용되었던 용지와 동일함. 이 용지는 현재 영국 캠프리지 대학 애스톤(Aston) 컬렉션에서 볼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전용 용지 대신에,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종이에 해당 내용을 영문으로 적은 문서 형태로 작성되기도 함.
- ③ 본문은 공문서(公文書)라는 특성상 비교적 규격화된 형식을 보이고 있음. 매 면, 왼쪽 상단 부분에 해당 공문서의 번호 NO를 기입, 오른쪽 상단에는 작성된 연월일을 기입함. 각각의 공문서 번호, 작성된 일지(日誌)를 통해서 ‘인천 해관 보고문서’의 정확한 제작 시기 및 산출시기를 확정할 수 있음. 인천 해관 보관 문서는 1884년 4월 1일부터 1898년 3월 31일에 작성된 것임. (단, 해당 시기의 작성된 것 중에서 일부만 남아 있는 것임.)
- ④ 본문은 대부분 영어로 표기하여 작성. 다만, 분기별 수입과 지출의 상황, 분기별 징수/유보 보고/무역 보고서 등은 영문과 한문, 두 가지 형태로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음.
- ⑤ 본문은 ㉠ 인천해관의 분기별 수입과 지출의 상황, ㉡ 인천해관의 분기별 징수/유보 보고 상황, ㉢ 무역 보고서 및 송장(送狀), ㉣ 입출입 선박의 상황/세금의 징수 내용 보고, ㉤ 직원의 업무 활동/근태 상황 보고, ㉥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요청 건, ㉦ 지역의 조사 보고, ㉧ 시설의 건립 계획서 및 도안, ㉨ 인천에 설치된 조계지(租界地)와 관련된 지도 및 자세한 내용 등이 기술되어 있음.
- ⑥ 일제강점기에는 인천 해관 보고문서가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어 관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것은 표지에 조선총독부 도서 청구번호가 적혀있고, 조선총독부 도서관 장서인을 통해서 확인됨.
- ⑦ 기타, 인천 해관 보고문서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인천 세관의 주요 도면, 조계지와 관련된 지도 등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료(史料)로 평가할 수 있음.

2-2) 부산해관의 <해관지>

- (1) 구 성: 전체 4권. 앞표지, 일지(日誌), 뒤표지로 구성(권에 따라 삽화, 도면, 지도가 존재함.)
- (2) 서지사항: 본문은 영문과 한문(漢文)으로 작성됨. 각 권은 대부분 21×33.5cm 내외의 규격화된 형태로 합철되어 있음. 부산해관에서 작성된 <해관지> 4권의 간략한 서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번	청구기호	권차	구분	자료명	생산년대	언어
1	古貴659-14	13권	부산 해관	FUSAN	1893.10.12-1893.12.27	영문, 한문
2	古貴659-14	14권	부산 해관	FUSAN	1895.01.02-1895.06.27	영문, 한문
3	古貴659-14	15권	부산 해관	FUSAN	1896.07.01-1896.12.10	영문, 한문
4	古貴659-14	16권	부산 해관	FUSAN	1897.07.01-1897.12.31	영문, 한문

(3) 서지적인 특징

- ① 표지에 “FUSAN”으로 쓰여져 있음.
- ② 보고서 양식은 ‘Custom House Fusan’이라고 찍혀진 전용 용지를 사용했음. (참고로 이 용지는 1890-1900년대 조선 내의 외국 영사관(領事館)에서 사용되었던 용지와 동일함. 이 용지는 현재 영국 캠프리지 대학 애스턴(Aston) 컬렉션에서 볼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전용 용지 대신에,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종이에 해당 내용을 영문으로 적은 문서 형태로 작성되기도 함.
- ③ 본문은 공문서라는 특성상 비교적 규격화된 형식을 보이고 있음. 매 면, 왼쪽 부분에 공문서의 번호 NO를 기입, 오른쪽 상단에는 작성된 연월일을 기입해 놓았음. 공문서 번호, 작성된 일지를 통해서 ‘부산 해관 보고문서’의 정확한 산출시기를 판별할 수 있음. 부산 해관 보고문서는 1893년 10월 12일부터 1897년 12월 31일에 작성된 것임. (단, 해당 시기의 작성된 것 중에서 일부만 남아 있는 것임.)
- ④ 본문은 대부분 영어로 표기하여 작성. 단, 분기별 수입과 지출의 상황, 분기별 징수/유보 보고/무역 보고서 등은 영문과 한문, 두 가지 형태로 작성되어 있음.
- ⑤ 본문은 ㉠ 부산 해관의 분기별 수입과 지출의 상황, ㉡ 부산 해관의 분기별 징수/유보 보고 상황, ㉢ 무역 보고서(송장), ㉣ 출입 선박의 상황/세금의 징수 보고 상황, ㉤ 직원의 업무 활동/근태 상황 보고, ㉥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요청 건, ㉦ 지역의 조사 보고, ㉧ 등대 시설의 건립 계획서 및 도안 내용 등이 기술되어 있음.
- ⑥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어 관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지에 조선총독부 도서 청구번호가 적혀있고, 조선총독부 도서관 장서인을 통해서 확인됨.
- ⑦ 기타, 부산 해관 보고문서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부산 세관의 등대 시설 건립과 관련된 내용, 소고기 수입에 관한 내용, 홍삼의 수출과 관련된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료(史料)로 평가할 수 있음.

2-3) 원산해관의 <해관지>

- (1) 구 성: 전체 4권. 앞표지, 일지(日誌), 뒤표지로 구성(권에 따라 삽화, 도면, 지도가 존재함.)
- (2) 서지사항: 본문은 영문과 한문(漢文)으로 내용을 기입. 각 권은 대부분 21×33.5cm 내외의 규격화된 형태로 합철되어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현재 원산해관에서 작성된 보고문서 4권을 소장하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간략한 서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번	청구기호	권차	구분	자료명	생산년대	언어
1	古貴659-14	17권	원산 해관	YUENSAN	1887.01.01-1887.12.19	영문, 한문
2	古貴659-14	18권	원산 해관	YUENSAN	1888.01.06-1888.12.04	영문, 한문
3	古貴659-14	19권	원산 해관	YUENSAN	1889.01.02-1889.12.28	영문, 한문
4	古貴659-14	20권	원산 해관	YUENSAN	1893.07.06-1893.12.31	영문, 한문

(3) 서지적(書誌的) 특징

- ① 표지에 “YUENSAN”으로 쓰여져 있음.
- ② 보고서 양식은 손으로 작성한 ‘Custom House’, 전용 용지로 ‘His corean majesty’s customs service’, ‘Custom House’라고 되어 있는 용지에 필요 내용을 작성했던 것을 볼 수 있음. (참고로 이 용지는 1890-1900년대 조선 내의 외국 영사관(領事館)에서 사용되었던 용지와 동일함.) 아울러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종이에 해당 내용을 영문으로 적은 문서 형태로 작성되기도 함.
- ③ 본문은 공문서라는 특성상 비교적 규격화된 형식을 보이고 있음. 매 면, 왼쪽 부분에 공문서의 번호 NO를 기입, 오른쪽 상단에는 작성된 연월일을 기입해 놓았음. 공문서 번호, 작성된 일지를 통해서 ‘원산 해관 보고문서’의 정확한 산출시기를 판별할 수 있음. 원산 해관 보고문서는 1887년 1월 1일부터 1893년 12월 31일에 작성된 것임. (단, 해당 시기의 작성된 것 중에서 일부만 남아 있는 것임.)
- ④ 본문은 대부분 영어로 표기하여 작성. 단, 분기별 수입과 지출의 상황, 분기별 징수/유보 보고/무역 보고서 등은 영문과 한문, 두 가지 형태로 작성되어 있음.
- ⑤ 본문은 ㉠ 원산 해관의 분기별 수입과 지출의 상황, ㉡ 원산 해관의 분기별 징수/유보 보고 상황, ㉢ 무역 보고서(송장), ㉣ 출입 선박의 상황/세금의 징수 보고 상황, ㉤ 직원의 업무 활동/근태 상황 보고, ㉥ 직원들의 급여 지급 및 요청 건, ㉦ 원산 해안 지역의 조사 보고, ㉧ 원산 해관 세무사 공간도 및 항만 시설도, ㉨ 선박 방매(放賣) 증명서 등이 기술되어 있음.
- ⑥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어 관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지에 조선총독부 도서 청구번호가 적혀있고, 조선총독부 도서관 장서인을 통해서 확인됨.
- ⑦ 기타, 원산 해관 보고문서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원산 세관의 세무사 공간 시설 건립과 관련된 내용, 원산 해역의 지도 및 해역의 주요 내용, 원산항만의 시설도 등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료(史料)로 평가할 수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근대 시기에 산출된 자료의 특성상 보존 처리가 시급한 상황. 국립중앙도서관 측에서는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산화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예산 상의 문제로 현재 현재 1권에서 3권까지만 보존처리가 완료된 상황.
- 따라서 나머지 책들의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황. 특히 원산해관에서 작성된 <해관지>의 경우, 책의 표지 및 내지의 훼손이 심하여 이에 대한 보존처리가 필요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근대 시기에 산출된 근대문헌 자료의 최대 소장처 중의 하나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근대문헌의 보존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해관지> 전체에 대한 보존 관리 및 정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조선에 ‘해관’이 설립된 뒤로 조선 정부에서는 각 지역 해관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과 감리서(監理署)를 설립. 이렇게 생긴 중앙 기관과 이의 부속 기관, 총해관과 지역의 각 해관에서는 기관의 업무와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공문서가 생성됨.

- 그동안 해관이나 관련 기관에 대한 연구는 각 기관에서 만들어진 여러 공문서에 의거하여, 한국사, 도시사(都市史), 경제사, 관세사(關稅史)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조선해관의 설립과 운영의 문제, 조선해관에서의 관세 징수 상황, 고빙(雇聘) 서양인 해관원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해관과 연계된 감리서(監理署)의 연구, 각 지역별 해관의 운영 상황 등이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 · 검토

- <해관지>와 동일한 것으로 서울세관 관세박물관에 <인천해관문서>가 있음.
- 서울세관 관세박물관 소장본은 원래 인천해관에서 작성된 <해관지> 중에서 1883, 1884, 1885년 일부 자료의 취합본으로 추정됨. 현재 이 자료는 서울시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해관지>도 그 위상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7) 등록가치의견

- <해관지>는 개항 이후에 설립된 대표적인 근대 기관의 하나인 해관(海關)의 구체적인 업무, 외교·통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공문서임.
- <해관지>는 각 해관의 개설과 함께 동시에 작성되어 원래 방대한 수량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그 일부인 22권만 남아 있음. (기타 기관 및 개인 소장본 제외.)
- 그동안 ‘해관’에 대한 연구는 개항 이후에 설립된 근대 기구로서의 면모, 조선 해관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법령, 인사조직, 관세의 징수실태와 운용, 해관 업무), 조선 해관에 채용된 고빙 서양인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이 연구를 통해서 개항 및 근대 계몽기의 역사, 문화적 상황에 대한 재구(再構)가 가능해짐.
- 그러나 <해관지>가 지닌 근대 자료의 중요성에 비하여 자료의 보존 및 관리는 미흡한 상황. 해당 자료는 제작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문서 작성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 문서 작성과 수신(受信)의 상황이 명확하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문화재 등록의 가치인 자료의 희소성, 대표성, 소장 경위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시급하게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해관지>라는 명칭으로 일반인들과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시정이 요구됨. 이 명칭은 당시 해관에서 명명한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자료를 보존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붙인 것임. 이로 인해서 <해관지>를 해관에서 작성된 일지(日誌)로 착각하기가 쉬운 상황. 따라서 자료의 성격과 실상에 맞는 정확한 명칭 부여가 필요함.
-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 이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해관지> 및 유관 자료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16. 「동학농민군 편지」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검토

가. 제안사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장 「동학농민군 편지」의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변경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동학농민군 편지」, 「동학농민군 편지(2022)」에 대하여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대상문화재	작성자	변경(안)	변경요청 사유
동학농민군 편지 (‘21.7.1. 등록)	유광화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 30만명이 참여하였으나 현재 3,694명만 확인되어 관련 유물이 희소함
동학농민군 편지(2022) (‘22.2.10. 등록)	한달문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 참여한 자의 이름을 문화재명에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참여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건에 대한 검토 결과, 국가등록문화재의 경우 인물명을 문화재 명칭에 사용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본 유물의 경우에도 동학농민 혁명에 참여한 인물명을 사용할 경우 다양한 계층의 참여 상황을 반영하는 등 유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신청기관의 의견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서면검토)

○ 문화재위원 ○○○

- 해당 유물은 2021년 7월 1일 유광화 편지의 문화재 등록시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를 ‘동학농민군 편지’라는 명칭으로 하고 이후에 한달문 편지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2022년 2월 10일 한달문 편지의 문화재 등록시 이를 준용한 바 있음
- 그러나 문화재 등록번호 제도 폐지(‘21.11.19)로 유광화 편지와 한달문 편지는 각각 동학농민군 편지와 동학농민군 편지(2022)로 명칭을 부여하게 되어 해당 문화재 명칭이 각 유물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향후 문화재 검색 등에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문화재 등록 명칭인 ‘동학농민군 편지’를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유사한 의견은 등록 조사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 있음
- 문화재 명칭에 인물명을 사용한 예는 현재 다수 확인되는 상황이며, 문화재 등록번호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문화재 명칭은 국민의 문화재 접근과 이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적·잠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동일 명칭 식별을 위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등록 연도 표기를 병기하고 있는 방안은 문화재의 제작시기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향후 명칭부여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됨

○ 문화재전문위원 ○○○

- 동학농민혁명 참가자 유광화의 한문 편지는 동학농민군의 전투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당시 역사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편지라고 할 수 있음. 동학농민혁명 참가자 한달문의 한글 편지는 나주감옥에 수감중 어머니에게 구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유일한 옥중서신으로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음
- 각 편지의 등록명칭인 ‘동학농민군편지’, ‘동학농민군편지(2021)’라는 명칭은 문화재의 성격과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없음. 편지의 특징은 작성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작성자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함. 편지 형식의 국가등록문화재의 경우 그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명칭에 작성자의 이름을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음. 현재의 ‘동학농민군 편지’라는 명칭에는 작성자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작성자의 이름을 넣은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작성자의 이름을 넣은 다음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 현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편지 중 다음의 사례가 있음
 - 김지섭 의사 편지 :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김지섭 의사의 편지도, 작성자의 이름을 넣어서 문화재의 성격과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음
 -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 봉투 및 의거자금 송금증서 :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이봉창 의사의 편지와 봉투에도, 작성자의 이름을 넣어서 문화재의 성격과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17.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사적 「전주 전동성당」 내 시굴조사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사적 전주 전동성당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전주시장)	<전주 전동성당 시굴조사(학술조사)> (1) 허가 받는 자 : 전주시장 (2) 허가 내용 ○ 대상위치 : 전주 완산구 전동 200-1 ○ 내 용 : 옛 한옥성당 추정 부지 유구 확인(기초자료 확보)을 위한 시굴조사 (910㎡) (3) 허가(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주일 (4) 조건사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굴조사 허가를 득하여 시행	조건부 허가	'22.4.7.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